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24호
2023. 11. 2.(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3-3033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
-------------	-------------------------------	---

[행정예고]

제2023-3043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7
-------------	---	---

◆ 고 시

제2023-47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13
제2023-4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6
제2023-474호	도시관리계획(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9
제2023-475호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	54
제2023-476호	영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7
제2023-477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76
제2023-478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9

◆ 공 고

제2023-3022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99
제2023-3023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02
제2023-3027호	수도요금 채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108
제2023-3032호	수도요금 채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09
제2023-304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10
제2023-3047호	마포구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112
제2023-3049호	수도요금 채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21
제2023-3051호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23
제2023-3057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24

제2023-3058호	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126
제2023-3059호	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127
제2023-3063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12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06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29
제10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132

[입법예고]

제2023-333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3
------------	--	-----

◆ 구 고 시

제2023-128호	도시관리계획(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로구)	139
제2023-63호	도시계획시설(케도)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중구)	143
제2023-189호	비관리청 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강남구)	145
제2023-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송파구)	147

◆ 구 공 고

제2023-15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중랑구)	149
제2023-15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중랑구)	150
제2023-136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강북구)	151
제2023-1803호	도시계획시설(서오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은평구)	153
제2023-13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서대문구)	180
제2023-2007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열람공고(구로구)	188
제2023-172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금천구)	193
제2023-17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열람 공시송달 공고 (동작구)	198
제2023-1858호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관악구)	207

◆ 사업소고시

제2023-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8
제2023-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9
제2023-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9
제2023-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10
제2023-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10

◆ 사업소공고

제2023-7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211
제2023-74호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래한강본부)	224
제2023-75호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래한강본부)	225

◆ 기 타

제2023-3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6
제2023-334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7
제2023-336호	하천점용허가(실시계획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8
제2023-33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9

자치법규 등**[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33호****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 기준(안 제2조)**

-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선정

나.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자치구사업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 지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균형발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균형발전정책과(전화: 02-2133-8628, 이메일: namile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균형발전정책과
- 2) 이메일: namilee@seoul.go.kr
-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관리·운용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
3. 사업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4.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5. 자치구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수준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여부

제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준용)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43호****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감사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과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1조)

나. 감사결과와의 공개시기 및 방법 정비(안 제12조)

다.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 확대에 따른 사무 위임 규정 변경(안 제10조) 및 감시 주체 변경(안 제16조, 제17조)

라. 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26조)

마.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준용 신설(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2) 이메일: bigbell77@seoul.go.kr

3) 팩 스: 02)768-8846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0조”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정”을 “지정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시·평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재심의”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로, “통보한 즉시 공개한다”를 “반영한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장(제15조)을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7조)의 제목 “(중점감시)”를 “(중점감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을 “사업(이하 “중점감시사업”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시사업 중에서 제1항의 중점감시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위원은”을 “공공사업 감시·평가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을 “제16조에 따라 감시사업을 선정하여 매년”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50명 이내로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률자문에 참여한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적극행정 면책 처리) 적극행정 면책 처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2조----- ----- ----- -----.
제10조(사무의 위임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0조(사무의 위임 등)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사업 감시·평가와 관련된 참관자의 <u>지정</u> 에 관한 사항	4. ----- ----- <u>지정 및 제16조제2항에 의</u> <u>한 감시·평가</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 ----- -- 「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조(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즉시 공개한다. ③ (생략) 제4장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15조(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① 위원장은 응답소 등을 통하여 위원회로 배분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고충민원 대상여부와 처리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검토회의를 구성·운영 한다. ② 고충민원을 조사한 자는 필요한 경우 조사계획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사업 감시·평가 방법) ① 위원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검토, 현장 확인, 참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사업의 감시·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 반영한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17조(공공사업 감시·평가 방법) ① 공공사업 감시·평가자는 ----- ----- ----- ----- ----- -----.

현행	개정안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감시·평가 지원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u>참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위원회는 <u>매년</u> 2월말까지 연간 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u>제17조(중점감시)</u> ①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시·평가 대상 공공사업(이하 “감시사업”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할 <u>사업</u>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시사업을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한다. 제19조(감시·평가 결과보고) 위원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은 <u>제16조</u>에 따른 감시·평가를 종료했을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삭제> ③ ----- 제16조에 따라 감시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 <u>제16조(중점감시 등)</u> ① ----- ----- ----- ----- ----- ----- 사업(이하 “중점감시사업”이라 한다)을 -----. 1.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시사업 중에서 제1항의 중점감시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감시·평가 결과보고) ----- ----- 제17조----- ----- ----- -----.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 제27조제3항----- ----- ----- -----.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신설>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50명 이내로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률자문에 참여한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적극행정 면책 처리) 적극행정 면책 처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본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가. 명 칭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	65,326		
			15,823	‘22. 1. 20.	
			49,503	‘23. 11. 2.	구역 확대 ※ 23년 제13차 전문가 사전자문 (‘23. 10. 19. 의견: 적정)

2. 권리산정기준일 : 2023. 11. 2. (구역 확대 49,503㎡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리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
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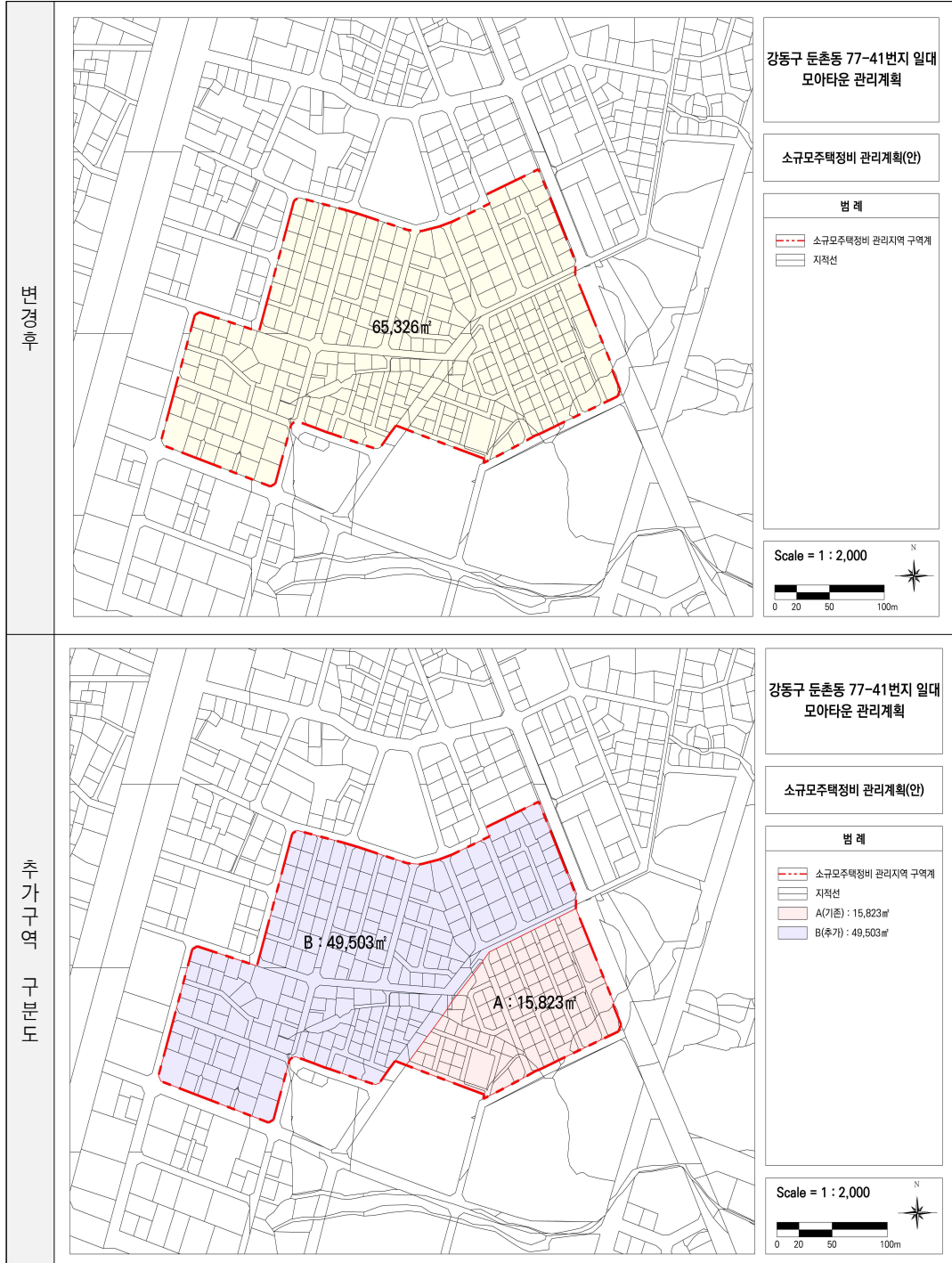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
름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
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
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
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
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둔촌동 77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79-299호(1979.7.4.)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10호(2019.12.12.)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0일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하여 2023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3.9.2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중증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시설 개선 및 진료 공간 확충을 위하여 현재 병원주차장으로 활용중인 부지를 편입하여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고, 누리관(암병원)을 신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종합의료시설	구로구 구로동 80일대	35,854.3	증) 2,827.5	38,681.8	서울특별시고시 제299호(1979.7.4)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49이하	50이하	215이하	220이하	10층이하	10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학교	○ 면적변경 (증 2,827.5㎡) 35,854.3㎡ → 38,681.8㎡ ○ 건축범위(변경) 건폐율 49%이하 → 50%이하 용적률 215%이하 → 220%이하 높이 10층이하(변경없음)	○ 중증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증환자 진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확장하여 의료시설 개선 및 진료 공간을 확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누리관 건축인가가 시 '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23.9.20. 조건부 가결)' 에 따른 다음 조건 사항 반영을 검토
 - 장례식장 이용객 편의시설(휴게소 및 흡연실 등)은 대상지 동남측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신축 건축물(누리관) 1층 내부(장례식장 출입구 좌측)에 설치하고, 연접 주거지에서 장례식장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조경 식재 등으로 차폐할 것.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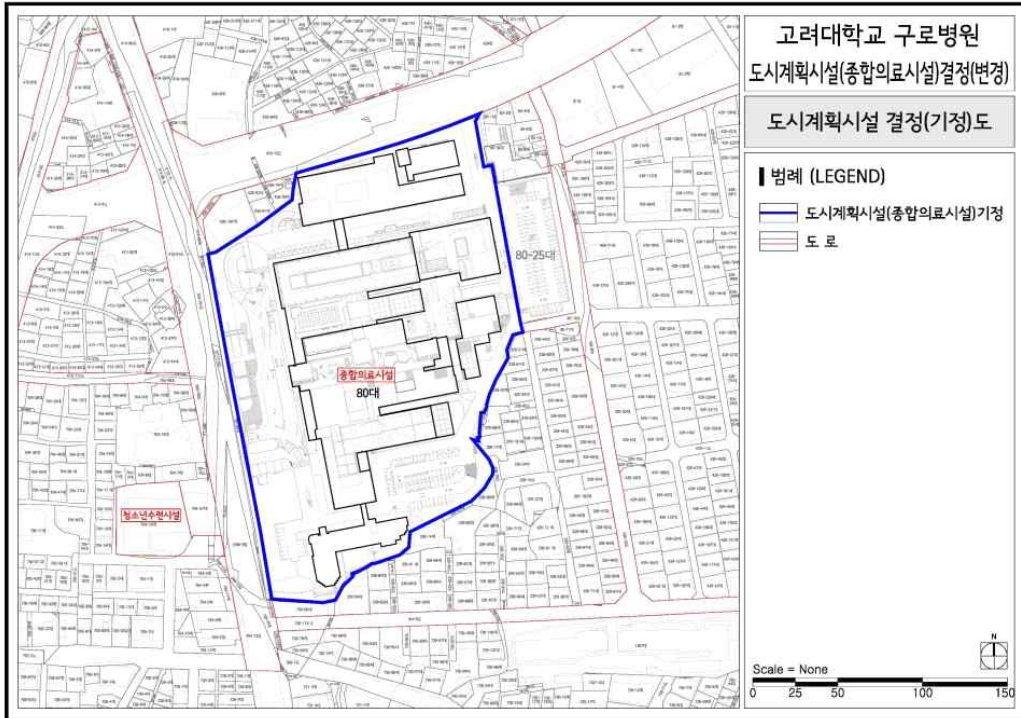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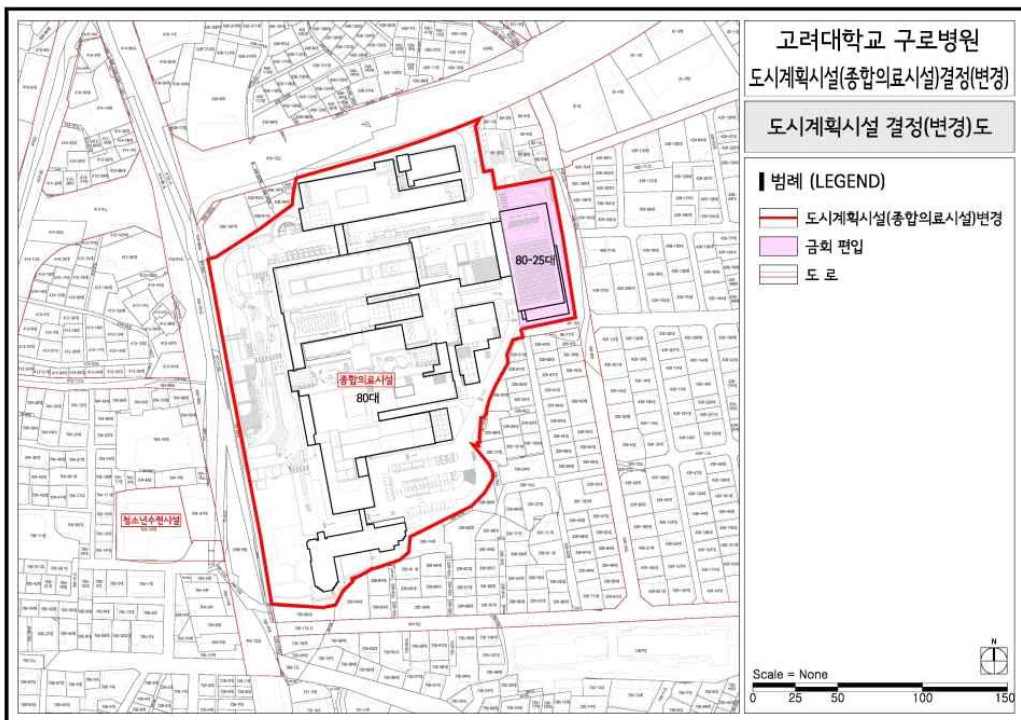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1),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28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4호

도시관리계획(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3년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3.7.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I. 결정 취지

- 한강철교 일대 저이용부지 기본구상에 따라 인접한 여의도, 한강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등 저이용부지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13-8 일대	-	증)171,829.8	171,829.8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13-8 일대	171,829.8	한강철교 일대 저이용부지 기본구상에 따라 인접한 여의도, 한강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등 저이용부지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설)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71,829.8	-	171,829.8	100.0	-
주거지역	소계	152,407.5	-	152,407.5	88.7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868.9	-	49,868.9	29.0	-
	제2종일반주거지역	4,649.1	-	4,649.1	2.7	-
	제3종일반주거지역	83,911.3	증) 13,978.2	97,889.5	57.0	-
	준주거지역	13,978.2	감) 13,978.2	-	0.0	-
상업지역	소계	7,270.4	-	7,270.4	4.2	-
	일반상업지역	7,121.8	-	7,121.8	4.1	-
	유통상업지역	148.6	-	148.6	0.1	-
녹지지역	소계	12,151.9	-	12,151.9	7.1	-
	자연녹지지역	12,151.9	-	12,151.9	7.1	-

주) 수협부지, 수도자재관리센터, 노랑진역사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종상향 검토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동작구 노랑진동 13-8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3,978.2	400% 이하	현재 준주거지역은 비축기지(창고) 조성을 전제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었으나, 비축기지 조성 계획이 실효됨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자치구	위치	면적(㎡)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경관 지구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동작구	노들로	35,834 (4,543)	양측 12m	-	올림픽대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중로	1	1	8~23	국지 도로	427	노량진동 153-22 (노량진로)	노량진동 2-3 (노들길)	일반도로 및 고가도로	구고시 제2006-87호 (06.11.16)	-
폐지	소로	2	30	8~11	국지 도로	152	노량진동 14-37 (노량진역사)	노량진동 11-5 (수산시장)	일반도로 및 고가도로	구고시 제2006-87호 (06.11.16)	-
폐지	소로	2	31	8~11	국지 도로	210	노량진동 14-37 (노량진역사)	노량진동 2-3 (자재사업소)	일반도로 및 고가도로	구고시 제2006-87호 (06.11.16)	-
폐지	소로	3	1	5	국지 도로	76	노량진동 14-37 (노량진역사)	노량진동 14-36	고가도로	구고시 제2006-87호 (06.11.16)	-
폐지	소로	3	2	5	국지 도로	242	노량진동 150-1	노량진동 153-1	일반도로 및 고가도로	구고시 제2006-87호 (06.11.16)	-
기정	중로	1	69	20~31	국지 도로	3,045 (30)	본동 206-3 (노들길)	서울교남단 (광장41호)	일반도로	건고시 제1967-251호 (1967.4.12)	노들로, 중복결정 (중로1-1, 소로 1-1)
기정	소로	1	A	10	국지 도로	94 (2)	노량진동 152-3	노량진동 152-3	일반도로	국고시 제2023-295호 (23.06.12)	중복결정 (사육신역사공원)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5	노량진동 151-24 (노량진로)	노량진동 14-43	일반도로	구고시 제2006-87호 (06.11.16)	-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3	노량진동 151-24 (노량진로)	노량진동 152-3	일반도로	-	중복결정 (중로1-2, 사육신역사공원)
신설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798	노량진동 13-8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일반도로	-	중복결정 (중로1-3, 노들로, 하천, 노량진교수부지광장)
신설	중로	1	2	20~23	집산 도로	414	노량진동 153-22	노량진동 2-3	일반도로	-	중복결정 (중로1-3, 소로2-1)
신설	중로	1	3	16~23	국지 도로	726	노량진동 2-3	노량진동 13-8	일반도로	-	중복결정 (중로1-1, 중로1-2)
신설	소로	1	1	10	특수 도로	525	노량진동 13-4	영등포구 여의도동 7-5	일반도로	-	중복결정 (노들로, 하천, 노량진교수부지광장)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중로1-1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로 폐지
폐지	소로2-30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로 폐지
폐지	소로2-31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로 폐지
폐지	소로3-1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로 폐지
폐지	소로3-2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로 폐지
기정	중로1-69	중로1-69	중복 결정	• 중로1-1, 소로1-1호선 신설에 따른 노선 일부 중복 결정
변경	소로3-3	소로2-1	도로 변경	• 수방사 부지 진입도로와 연결 위해 도로 연장 및 폭원 확장 • 도로 연장에 따라 사육신역사공원과 노선 일부 중복 결정
			중복 결정	• 중로1-2호선 신설에 따른 노선 일부 중복 결정
신설	-	중로1-1	도로 신설	• 노량진~여의도 간 연결 도로망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중복 결정	• 신설 노선인 중로1-3호선, 기존 노들로, 노량진교수부지광장, 하천과 노선 일부 중복 결정
신설	-	중로1-2	도로 신설	• 대상지 내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신설
			중복 결정	• 신설 노선인 중로1-3호선, 변경된 소로2-1호선과 노선 일부 중복 결정
신설	-	중로1-3	도로 신설	• 대상지 내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신설
			중복 결정	• 신설 노선인 중로1-1호선, 중로1-2호선과 노선 일부 중복 결정
신설	-	소로1-1	도로 신설	• 노량진~여의도 간 보행교 연결을 통해 지역 보행네트워크 조성 및 보행 연속성 확보
			중복 결정	• 기존 노들로, 노량진교수부지광장, 하천과 노선 일부 중복 결정

2) 철도

■ 철도(역사)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동작구 노량진동 67-2번지 일원	47,621.0 (39,887.4)	감) 2,490.8	45,130.1 (37,396.5)	건고447호 89.8.11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철도(역사)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도(역사)	- 면적 감소 - 면적 : 45,130.1㎡ (감 2,490.8㎡)	중로1~3 노선 신설에 따라 철도시설 선형 일부 폐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역사))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	면적 (㎡)	113	동작구고시 제2019~92호 (2019.12.5.)	수협중앙회 소유지
				높이 (m)	지하 EL.103.2~ 지상 EL.119.5		

※ 기존 입체적 결정으로 결정된 출입구는 수협특별계획구역 내로 연결출입구 확보

■ 철도(선로)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9호선)	도시철도 (9호선 본선)	강서구 과해동 83-1호	강남구 역삼동 800-1호	당산역(2호선), 여의도역(5호선) 노량진역(국철), 동작역(4호선),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 연장 : 26,185m (동작구 구간: 2,100m) - 폭 10 ~ 56m - 면적 : 18,900㎡ (동작구 구간)	최초결정일 (서울시고시 제2002-5호, 2002.1.10)

■ 철도(정거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917정거장)	동작구 노량진동 60번지 일원	-	10,260	서울시고시 제2002-5호 (2002.1.10)	노량진동 57-1번지 일원 지하철출입구 입체적 결정 (증가면적: 297㎡)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9호선)	도시철도 (917정거장)	동작구 노량진동 57-1번지 일원	길이(m)	21.73 ~ 25.00	-	높이는 평균해수면 기준임
				폭(m)	8.39 ~ 12.49		
				높이(m)	1.76 ~ 19.80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역사	동작구 노량진동 152-3일대	47,964.0 (311.4)	감) 93.1	47,807.9 (218.3)	'56.5.3	사육신공원, 중복결정 (중로1-2, 소로2-1)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2023.05.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5호) 사육신 역사공원 결정(변경) : 기정 47,832㎡ → 변경 47,964㎡ 반영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	역사	• 공원 면적 감소 - 면적 : 47,807.9㎡ (감 93.1㎡) • 중복결정 - 소로2-1 노선과 중복결정	• 중로1-2 노선 신설에 따라 공간시설 면적 일부 제척 • 변경되는 소로2-1 노선과 중복결정

2)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교통광장	동작구 노량진동 60번지 일원	625.0	-	625.0	건고 제114호 (1981.12.12)	-
기정	-	노량진 고수부지광장	동작구 노량진동 70번지 일대	144,466.0	-	144,466.0 (4,171.4)	서고시 제169호 (1991.6.14)	중복결정 (중로1-1, 소로1-1)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수도공급설비	노량진동 2-3번지 일대	27,904	-	27,904	'84.7.23	-

2)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전기공급설비	동작구 노량진동 151-1번지 일원	4,012.0	감) 821.7	3,190.3	동작구 고시 제1995-25호 (1995.5.25.)	-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기공급설비	면적 감소 - 면적 : 3,190.3㎡ (감 821.7㎡)	중로1-2 신설, 변경된 소로2-1 노선에 따라 전기공급설비시설 면적 일부 제척

라.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하천	국가 하천	경기도 김포군 시계	경기도 하남시 시계	-	40,747,864	-	40,747,864 (7,851.4)	-	중복결정 (중로1-1, 소로1-1)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유수지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	2,602.0	감) 232.4	2,369.6	-	수협 특별계획구역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수지	면적 감소 - 면적 : 2,369.6㎡ (감 232.4㎡)	중로1-2 노선 신설에 따라 유수지 면적 일부 제척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가. 친환경계획

■ 환경친화적 건축물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 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자연지반 보존을 권장	-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 (2013.02.)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권장	-
벽면녹화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신·재생 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 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04.)' 에 따라 생태면적률 적용 권장	-

나. 방재안전계획 : 해당사항 없음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구모 결정

1) 가구 및 획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신설	1	40,343.7	노량진동 13-8 일대	대	40,343.7	수협 특별계획구역
	2	33,737.3	노량진동 2-3 일대	수	33,737.3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3	31,289.2	노량진동 68-1 일대	철	31,289.2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4	2,971.0	노량진동 16-28 외 15개 필지	대	2,971.0	이면부 16개 필지
	5	1,206.0	노량진동 40-11 외 6개 필지	대	1,206.0	노량진로변 7개 필지
	6	449.0	노량진동 67-17 외 6개 필지	대	449.0	노량진로변 7개 필지
	7	5,087.3	노량진동 67-23 외 22개 필지	대	5,087.3	노량진로변 23개 필지

※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은 CAD 상 구역면적임

2) 공동개발 계획

■ 공동개발 결정조서

구분	결정내용		비고
	적용대상	계획내용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	과소필지, 맹지 등 개별 건축이 어려운 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필지	8개 (21필지)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이 권장된 필지	과소필지, 맹지 등 개별 건축이 어려운 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	4개 (13필지)
자율적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및 공동개발로 결정된 필지 외 당해 대지와 연접한 대지의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

■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1	40,343.7	노량진동 13-8	대	36,100.1	특별계획구역	수협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13-17	대	2,076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노량진동 2-3	수	328.6		
			노량진동 4-4	잡	722.6		
			노량진동 4-5	잡	1,002		
			노량진동 11-6	철	28		
			노량진동 13-10	철	64.1		
			노량진동 11-5	철	22.3		
	2	33,737.3	노량진동 2-2	수	1,211.2	특별계획구역	수도자재센터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2-3	수	15,450.1		
			노량진동 1-10	수	1,464.0		
			노량진동 1-2	수	1,164.0		
			노량진동 1-5	잡	2,027.7		
			노량진동 1-6	도로	9.0		
			노량진동 1-8	도로	21.0		
			노량진동 13-2	철	14.6		
			노량진동 10	수	291.0		
			노량진동 6-2	철	3,891.0		
			노량진동 5-2	철	403.0		
			노량진동 11-1	철	2,559.2		
			노량진동 9-1	수	2,205.0		
			노량진동 7-2	철	208.0		
			노량진동 8-1	철	550.6		
			노량진동 4-1	철	1,919.4		
			노량진동 1-11	잡	348.5		
	3	31,289.2	노량진동 69-4	철	188.0	특별계획구역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69-3	철	106.0		
			노량진동 69-2	철	235.0		
			노량진동 68-1	철	248.0		
			노량진동 67-2	철	3,739.9		
			노량진동 67-1	철	228.0		
			노량진동 65-1	철	402.8		
			노량진동 60-25	철	126.0		
			노량진동 60-2	철	395.1		
			노량진동 60-1	철	1,595.6		
			노량진동 15-15	철	1,076.5		
			노량진동 150-1	철	333.1		
			노량진동 14-37	철	18,415.9		
			노량진동 13-8	대	928.6		
			노량진동 13-16	철	109.7		
			노량진동 112-14	철	55.0		
			노량진동 112-13	철	282.8		
			노량진동 112-1	철	2,823.0		
신설	4	2,971.0	노량진동 16-28	대	331.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15-6	대	640.0	공동개발 권장	-
			노량진동 15-7	수	20.0		-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노량진동 15-22	대	331.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15-23	대	331.0	공동개발 권장	-
			노량진동 15-24	대	165.0		-
			노량진동 15-25	대	165.0		-
			노량진동 15-26	대	397.0		-
			노량진동 15-27	대	244.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15-28	대	83.0	공동개발 권장	-
			노량진동 15-29	대	99.0		-
			노량진동 15-30	대	91.0	공동개발 지정	-
			노량진동 15-5	수	36.0		-
			노량진동 15-3	수	5.0		-
			노량진동 15-1	대	13.0		-
			노량진동 15-2	대	20.0		-
신설	5	1,206.0	노량진동 40-11	대	264.0	공동개발 지정	-
			노량진동 40-103	대	14.0		-
			노량진동 40-10	대	89.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60-29	대	117.0	공동개발 지정	-
			노량진동 60-15	대	28.0		-
			노량진동 60-14	대	354.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60-19	대	340.0		-
신설	6	449.0	노량진동 67-17	대	10.0	공동개발 지정	-
			노량진동 67-5	대	36.0		-
			노량진동 67-18	대	3.0		-
			노량진동 67-16	대	120.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67-12	대	33.0	공동개발 지정	-
			노량진동 67-15	대	69.0		-
			노량진동 67-11	대	178.0	자율적 공동개발	-
신설	7	5,087.3	노량진동 67-23	철	40.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67-9	대	136.0		-
			노량진동 67-22	철	10.0		-
			노량진동 67-8	철	76.0		-
			노량진동 112-5	대	277.0	공동개발 권장	-
			노량진동 112-10	대	92.0		-
			노량진동 112-3	대	496.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150-5	대	3.0	공동개발 권장	-
			노량진동 150-6	대	261.0		-
			노량진동 150-7	대	23.0		-
			노량진동 151-14	대	760.0		-
			노량진동 150-2	도	248.0		-
			노량진동 151-11	대	455.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151-10	대	805.0		-
			노량진동 14-7	대	246.0	공동개발 권장	-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노량진동 14-41	철	1.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14-40	철	20.0		-
			노량진동 151-19	도로	40.0		-
			노량진동 151-18	대	219.0		-
			노량진동 151-30	도로	33.0	자율적 공동개발	-
			노량진동 151-28	대	517.0	공동개발 권장	-
			노량진동 14-34	대	83.0		-
			노량진동 14-38	대	184.0	자율적 공동개발	-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용도계획

1) 불허용도

■ 불허용도 결정조서 : 신설

구분	위치	불허용도		비고
불허 1	수협 특별계획구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이 외 불허용도는 특별계획구역별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따름		일반상업 지역
	수도자재 관리센터,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이 외 불허용도는 특별계획구역별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따름		준주거 지역
불허 2	노량진로변 일반필지	1층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일반 상업 지역
		전층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공동주택(주거용도 이외의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생활시설 중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불허 3	이면부 일반필지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생활시설 중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구분	위치	불허용도	비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특별계획구역의 불허용도 계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계획

2) 권장용도

■ 권장용도 결정조서 : 신설

구분	위치	권장용도		비고
권장 1	수협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일반상업 지역
권장 2	수도자재 관리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준주거 지역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권장 3	노량진로변 일반필지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F&B 매장, 카페, 베이커리, 잡화점, 편집숍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F&B 매장, 카페, 베이커리, 잡화점, 편집숍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일반상업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 특별계획구역의 권장용도 계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계획

※ 권장용도 면적 : 1층 권장용도는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해당 용도로 설치 시, 전층 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설치 시 권장용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

■ 건폐율 결정조서

구분	위치		건폐율	비고
특별계획구역	수협 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저층부 80%)	-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60% 이하	-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60% 이하	-
일반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①항」)

2) 용적률

■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위치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특별계획구역	수협 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250% 이하	470% 이하	800%1)이하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에서 상향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150% 이하	310% 이하	400% 이하 (500%2))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준주거지역	250% 이하	350% 이하	400% 이하 (500%2))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
일반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계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계획

1) 사전협상 시 적용 (당초 준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준을 적용)

2) 공공임대주택 도입시 500% 이하 적용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①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중점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100분의 70 이하로 하며,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 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 (계획유도 인센티브량은 중점 인센티브량으로 대체 가능)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상 인센티브 계획을 따름

구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권장 용도	전층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연면적) × 0.5	-
		1층	• 기준용적률 × (1층 권장용도 면적÷바닥면적) × 0.2	-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 {(전면공지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	-
계획 유도	획지 계획	자율적 공동개발	• 기준용적률 × α	• 필지수(n)에 따라 차등적용 - n=2 일때 $\alpha=0.2$ - n=3 이상일때 $\alpha=0.3$
		공동개발 권장	• 기준용적률 × 0.2	-
	물환경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 0.06	-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 0.06	-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
	대기 환경	저공해 자동차	• 기준용적률 × 0.06	-
		미세먼지저감장치	• 기준용적률 × 0.06	-

※ 특별계획구역의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유사항목으로 상한용적률 적용시 허용용적률에서는 제외

※ 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인허가권자와 협의 하에 결정함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상한용적률	
• 기준 or 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α토지) + (1.0~1.2)×α건축물 + (1.0×α현금)]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1.0~1.2 범위 내에서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 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 현금·건축물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frac{\text{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times \frac{\text{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원)}}{\text{용적률을 완화 받는 부지의 부지가액(원/㎡)}}}{\text{환산부지 면적(㎡)}} = \frac{\text{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text{현금 기부채납 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용도지역 상향 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 기준

구분		산정기준	비고
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50% 이하로 계획	-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구분	산정기준	비고
일반상업지역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부대시설 포함)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계획	혼재된 경우 가중 평균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	
준주거지역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	

3) 높이

■ 높이 결정조서

구분	위치	높이	비고
특별계획구역	수협 특별계획구역	200m	-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150m	-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150m	-
일반지역	노량진로변	60m	-
	이면부	30m	-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경관성검토를 통하여 창의적인 건축계획 시 높이 완화를 검토

4.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및 경관에 관한 결정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계획 결정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특별계획구역	수협 특별계획구역	건축한계선	• 노들로변 및 신설도로변 : 6m (신설도로변은 인공데크 상부 기준)	-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건축한계선	• 노들로변 및 신설도로변 : 6m	-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건축한계선	• 6m (인공데크 상부 기준)	-
일반지역	노량진로변	건축한계선	• 2m ~ 3m	-
	이면부	건축한계선	• 2m	-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특별 계획구역	수협 특별계획구역	건축물 형태	- 경관차폐 방지를 위해 한강변으로 고층부 건축물 폭원 50m 이내로 계획 - 공동주택 계획 시 거주성 및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주동 배치		규제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건축물 형태	경관차폐 방지를 위해 한강변으로 건축물 폭원 50m 이내로 계획		규제
일반 지역	이면부, 노량진로변	건축물 형태	저층부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규제
			1층부	- 투시형 셔터 / 투시벽 설치로 1층 전면용도와 가로 활동의 연속성 유지 및 활성화 도모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규제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권장
			야간조명	- 폭 20m이상 도로변에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설치 미술 자의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권장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수협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13-8 일대	-	증)	40,343.7	40,343.7	
신설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2-3 일대	-	증)	33,737.3	33,737.3	
신설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68-1 일대	-	증)	31,289.2	31,289.2	

■ 특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수협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13-8 일대	40,343.7	대규모 부지의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향후 사전협상을 통해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설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2-3 일대	33,737.3	공공 소유의 대규모 유휴부지의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설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68-1 일대	31,289.2	

나. 수협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13-8 일대	
구역면적(㎡)	• 40,343.7㎡	
용도지역	•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부지조성방안	• 인근 특별계획구역(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과 일체적 계획을 위해 신설 중로1-1 상부도로와 동일 높이의 인공 데크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 시설	공공 기여율	도시계획 변경(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 6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가치상승분 내외로 함	
	공공기여 계획	- 공공기여율 범위 내에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 후 기부채납 - 노량진로~여의도 연결도로, 노량진~여의도공원 보행로 - 수변과 연계한 문화시설 등 ※ 공공기여 종류, 공공기여량, 설치 우선순위 및 부지포함 여부 등 공공기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 공공개발사업담당관과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 용도	불허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저층부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47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시	
	높이	• 200m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건축물 배치 형태	건축한계선	• 6m (신설도로변은 인공데크상부 기준)	
	건축물 형태	• 경관차폐 방지를 위해 한강변으로 고층부건축물 폭원 50m 이내로 계획 • 공동주택 계획 시 거주성 및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주동 배치	
대지내공 지	공공보행 통로	•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하여 노량진로에서 노들로변으로 이어지는 남북 공공보행통로 조성(폭 20m)하며 공공보행통로 상부에는 건축물을 배치하지 않아 통경축의 역할을 하도록 함(연결 브릿지 제외) • 공공보행통로는 신설 도시계획도로(20m)와 동일한 높이의 인공데크 상부에 설치하며 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교와 연계하도록 함	
	공개공지	• 한강변 및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전면공지 조성 • 전면공지는 보도형으로 계획하여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로활성화 배치구간	- 수산시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 및 건축혁신 실현을 위해 건축물 저층부(인공데크상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건물 공용공간으로 출입하는 주출입구 등을 제외하고 그 구간에 면한 벽면길이만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설치하며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란 상업시설(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및 전시시설 등(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 정보안내소 등)을 말함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향후 버스노선 신설 시 노량진~여의도 신설 도로(중로1~1)에는 버스정류장 및 버스베이를 설치	
기타	-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공동주택 도입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50% 이내로 계획 - 상업용도(판매시설 등) 도입 시 전체 용적률의 20% 이내로 계획 - 특별계획구역 내 유수지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설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전하여 설치 - 기존 입체적 결정으로 결정된 9호선 철도 출입구는 폐지하되, 대상지 내로 연결 출입구 확보 - 사업지 내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부지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건축물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조성	

※ 주1) 저층부는 건축물 높이 20m 미만을 말함

■ 수협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구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연면적) × 0.5	• 지상층연면적의 20%이상 설치 시(주차장 제외)
	공개공지		기준용적률x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α}	• 필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 α=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x 1.5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 α=1.0
계획 유도	물환경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6	-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6	-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대지면적) x 0.1	-
	대기 환경	저공해 자동차	기준용적률 × 0.06	-
		미세먼지저감장치	기준용적률× 0.06	-
	자원 순환	재활용보관시설	기준용적률 × 0.06	-
		녹색건축자재	기준용적률 × 0.06	-
	열환경	생태면적률	기준용적률×(생태면적률 초과면적/대지면적)×0.06	-
		냉방부하저감	기준용적률 × 0.06	-
	생활 환경	유니버설디자인 (BF인증)	기준용적률 × 0.06	-
	특정층(꼭대기)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연면적) × 5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설치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하는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유사항목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시 허용용적률에서는 제외

※ 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인허가권자와 협의 하에 결정함

다.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2-1	2-2
위치		• 동작구 노량진로 2-3 일대	
구역면적		• 33,737.3㎡	
		• 16,014.5㎡	• 12,540.4㎡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	
공공시설 등		• 도로 : 5,182.4㎡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수도공급시설 폐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 용도	불허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제외)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150% • 허용용적률: 310% • 상한용적률: 400% 이하 (공공임대주택 도입시 500% 이하)	• 기준용적률: 150% • 허용용적률: 310% • 상한용적률: 400% 이하 (공공임대주택 도입시 500% 이하)
	높이	• 150m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2-1	2-2
건축물 배치 형태	건축한계선	6m	
	건축물 형태	획지2-1 개발 시 통경 확보 및 경관차폐방지를 위해 한강변으로 고층부 건축물 폭원50m 이내로 계획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한강변으로 배치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전면공지 조성 - 전면공지는 보도형으로 계획하여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향후 버스노선 신설 시 노량진~여의도 신설 도로(중로1~1)에는 버스정류장 및 버스베이를 설치	
기타		사업지 내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부지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건축물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조성	

※ 주1) 저층부는 건축물 높이 20m 미만을 말함

■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구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div \text{연면적}) \times 0.5$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공개공지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필로티구조 : $\alpha=0.5$ • 개방형구조 : $\alpha=1.0$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1.5$	-
계획 유도	물환경	중수도시설 설치	$\text{기준용적률} \times 0.06$	-
		빗물이용시설 설치	$\text{기준용적률} \times 0.06$	-
		옥상녹화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녹화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1$	-
	대기환경	저공해 자동차	$\text{기준용적률} \times 0.06$	
		미세먼지저감장치	$\text{기준용적률} \times 0.06$	

구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자원순환	재활용보관시설	기준용적률 × 0.06	
		녹색건축자재	기준용적률 × 0.06	
	열환경	생태면적률	기준용적률 × (생태면적률 초과면적/대지면적) × 0.06	
		냉방부하저감	기준용적률 × 0.06	
	생활환경	유니버설디자인 (BF인증)	기준용적률 × 0.06	
	특정층(꼭대기)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연면적) × 5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설치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하는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유사항목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시 허용용적률에서는 제외

※ 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인허가권자와 협의 하에 결정함

라.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68-1 일대	
구역면적(㎡)		• 31,289.2㎡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노선상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철도역사 복합개발 사전협상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검토	
부지조성방안		• 철도 상부공간 활용을 위해 인공 데크로 부지계획	
공공시설	공공기여율	• 15% 이상 ※ 철도역사 복합개발 사전협상 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름	
	공공기여 계획	• 1세대부개발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 용도	불허	• 단독주택¹⁾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¹⁾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²⁾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종교시설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관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노선상업지역)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2배 이하 준주거지역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500%	
	높이	150m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배치 형태	건축한계선	06m (철도상부 인공부지 레벨에서 적용)	
대지내 공지	공공 보행통로	- 노량진로에서노들로변으로이어지는 남북 공공보행통로조성 (폭 20m)하며 공공보행통로상부에는 건축물을 배치하지 않아 통행축의 역할을 하도록 함 (연결 브릿지등 제외) - 공공보행통로는철도상부 인공데크상부에 설치하며 노량진로 지상부와의 수협 특별계획구역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조성	
	공개공지	• 노량진로변 철도역사 출입구 등과 연계한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전면공지 조성 - 전면공지는 보도형으로 계획하여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	
가로활성화 배치구간		- 건축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철도 데크 상부) 건물 공공공간으로 출입하는 주출입구 등을 제외하고 그 구간에 면한 벽면길이 만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설치하며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설치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란 상업시설(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및 전시 시설 등(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 정보안내소 등)을 말함	
교통처리계획		• 차량전출입 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방향 버스노선 신설 시 노량진~여의도 신설 도로(중로1-1)에는 버스정류장 및 버스베이를 설치	
기타		• 사업지 내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부지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건축물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조성	

※ 주1) 저층부는 건축물 높이 20m 미만을 말함

■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구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 0.5	• 지상층연면적의 20% 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 필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5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 필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0
계획 유도	물환경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6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6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대기 환경	저공해 자동차	기준용적률 × 0.06
		미세먼지저감장치	기준용적률 × 0.06
	자원 순환	재활용보관시설	기준용적률 × 0.06
		녹색건축자재	기준용적률 × 0.06
	열환경	생태면적률	기준용적률 × (생태면적률 초과면적/대지면적) × 0.06
		냉방부하저감	기준용적률 × 0.06
	생활 환경	유니버설디자인 (BF인증)	기준용적률 × 0.06
특정층(꼭대기)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연면적) × 5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설치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하는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유사항목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시 허용용적률에서는 제외

※ 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인허가권자와 협의 하에 결정함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특별 계획구역	수협 특별계획구역	공공보행통로	- 노량진로에서 노들로변으로 이어지는 남북 공공보행통로 조성(폭 20m) - 공공보행통로는 신설 도시계획도로(20m)와 동일한 높이의 인공데크 상부에 설치하며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조성	-
		공개공지	한강변 및 공공보행통로변 배치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전면공지 조성 - 전면공지는 보도형으로 계획하여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	-
	수도자재관리 센터 특별계획구역	공개공지	한강변 배치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전면공지 조성 - 전면공지는 보도형으로 계획하여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	-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공공보행통로	- 노량진로에서 노들로변으로 이어지는 남북 공공보행통로 조성(폭 20m) - 공공보행통로는 철도상부 인공데크 상부에 설치하며 노량진로 지상부와의 수협 특별계획구역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조성	-
		공개공지	노량진로변 철도역사 출입구 등과 연계한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전면공지 조성 - 전면공지는 보도형으로 계획하여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	-
일반 지역	이면부	보도확보형	- 인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조성 - 보행자통행 가능한 구조, 보도기능 담당토록 조성	-
	노량진로변	전면공지	-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전면공지 -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조성지침	- 인접보도 및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차량 및 보행통행 지상물(담장, 화단 등) 설치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 우선 준용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

2. 가로활성화 배치구간

가. 가로활성화 배치구간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특별 계획구역	수협 특별계획구역	- 수산시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 및 건축혁신 실현을 위해 건축물 저층부(인공데크 상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건물 공용공간으로 출입하는 주출입구 등을 제외하고 그 구간에 면한 벽면 길이 만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설치하며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설치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란 상업시설(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및 전시시설 등(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 정보안내소 등)을 말함	-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 건축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건물 공용공간으로 출입하는 주출입구 등을 제외하고 그 구간에 면한 벽면길이 만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설치하며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설치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란 상업시설(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및 전시시설 등(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 정보안내소 등)을 말함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 건축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데크상부 공공보행통로변) - 건물 공용공간으로 출입하는 주출입구 등을 제외하고 그 구간에 면한 벽면길이 만큼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설치하며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설치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란 상업시설(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및 전시시설 등(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 정보안내소 등)을 말함	

3. 차량 진 · 출입 불허구간

가. 차량 진 · 출입 불허구간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특별 계획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향후 버스노선 신설 시 노량진~여의도 신설 도로(중로1-1)에는 버스정류장 및 버스베이를 설치	-
일반지역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 노량진로변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 원칙적으로 대지안으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나, 건축시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 설정된 것으로 봄	-

4.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가.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적용구역	적용조건	완화내용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 권장용도 준수 시	•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설정된 필지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5.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특별 계획구역	수협 특별계획구역	•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50% 이내로 계획 • 상업용도(판매시설 등) 도입 시 전체 용적률의 20% 이내로 계획 • 특별계획구역 내 유수지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설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구역 내에서 이전하여 설치 • 기존 입체적 결정으로 결정된 9호선 철도 출입구는 폐지하되, 대상지 내로 연결 출입구 확보 • 사업지 내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부지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건축물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조성	-
	수도자재관리센터 특별계획구역	• 사업지 내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부지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건축물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조성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	• 사업지 내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부지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건축물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조성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 2) 구역 내 공동개발(권장)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 5) 대지내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6) 대지내·외 통로(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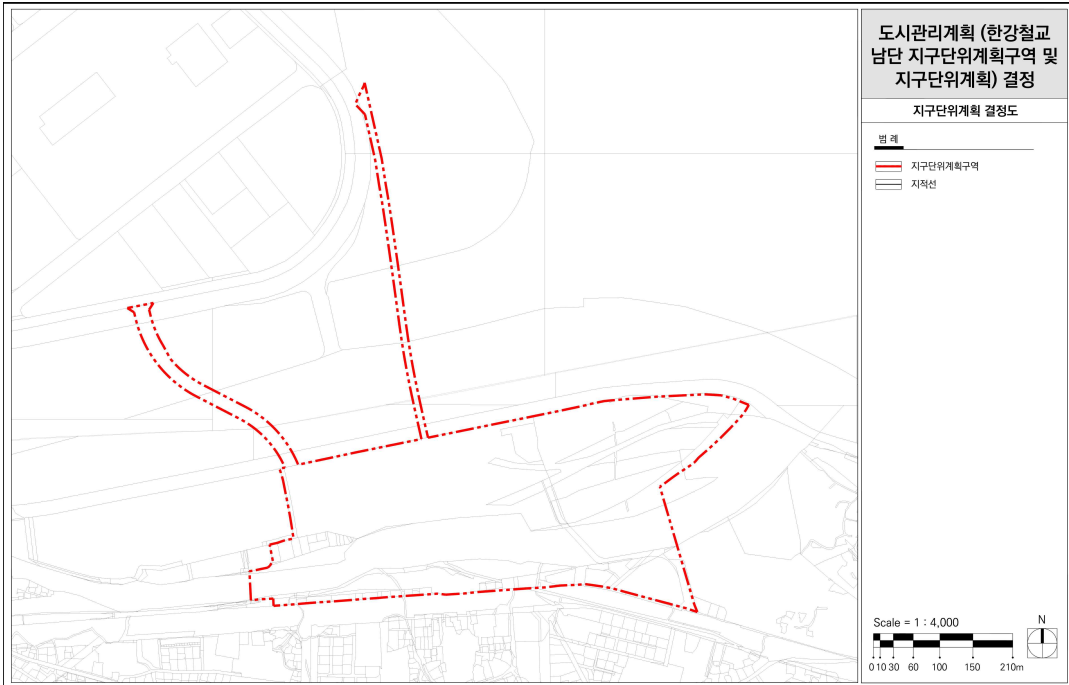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사업담당관(☎02-2133-9457), 동작구 도시계획과
(☎02-820-9596)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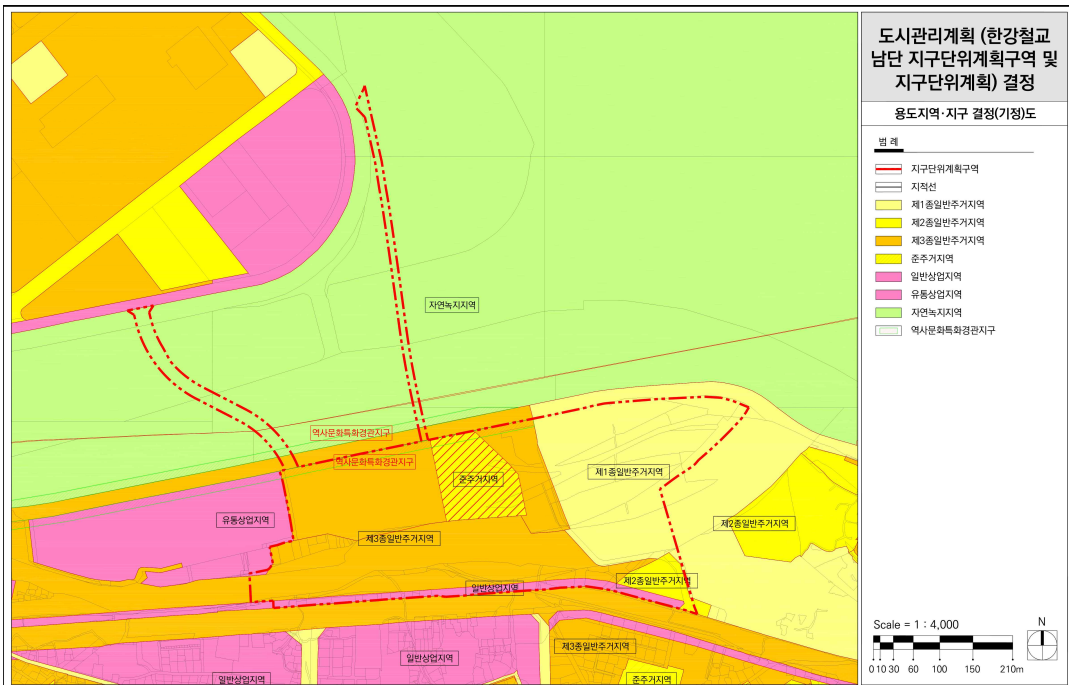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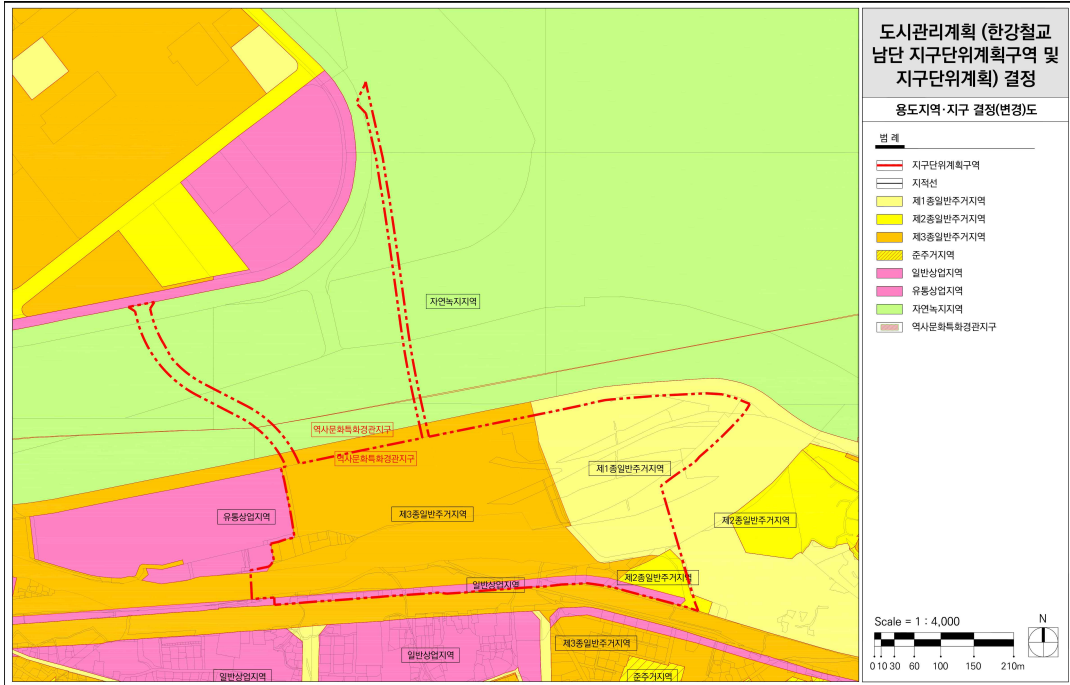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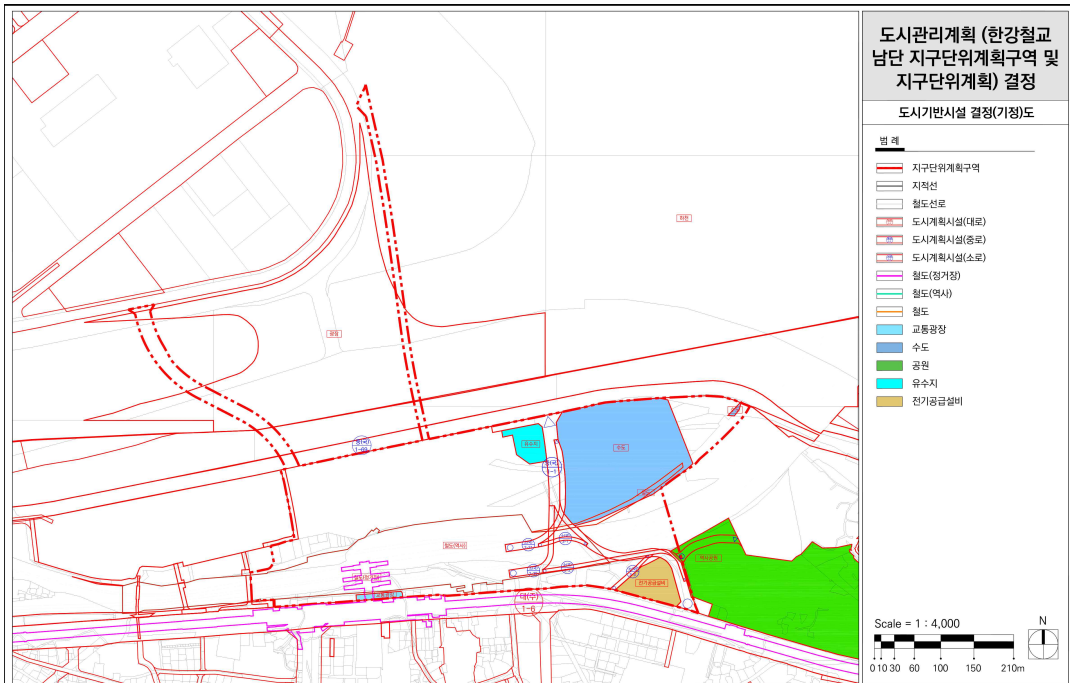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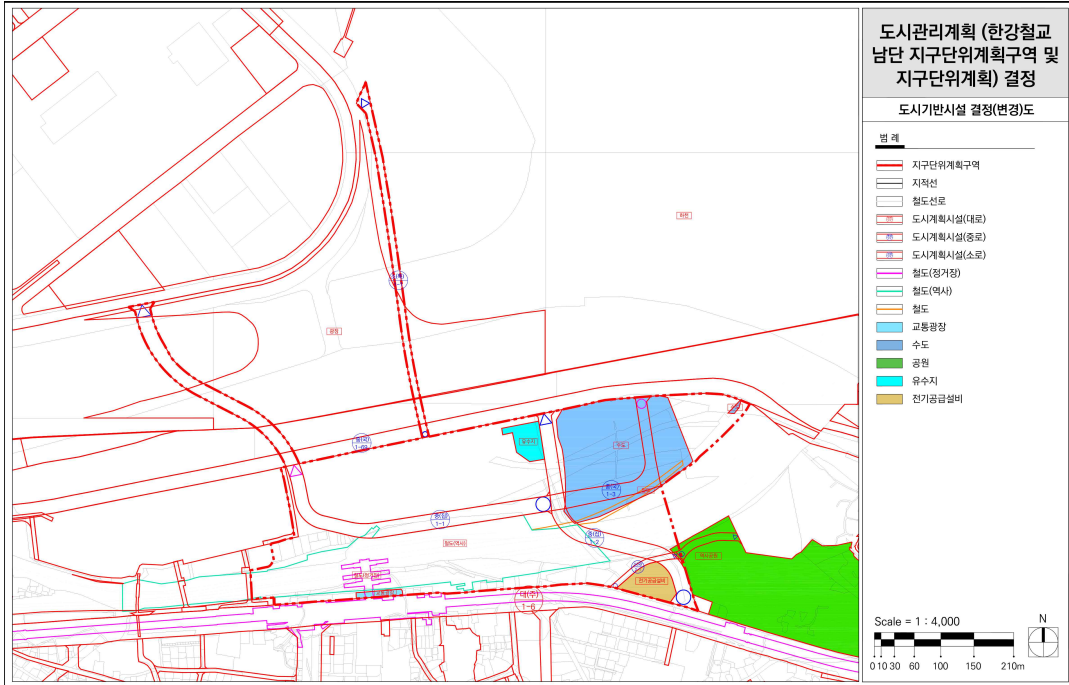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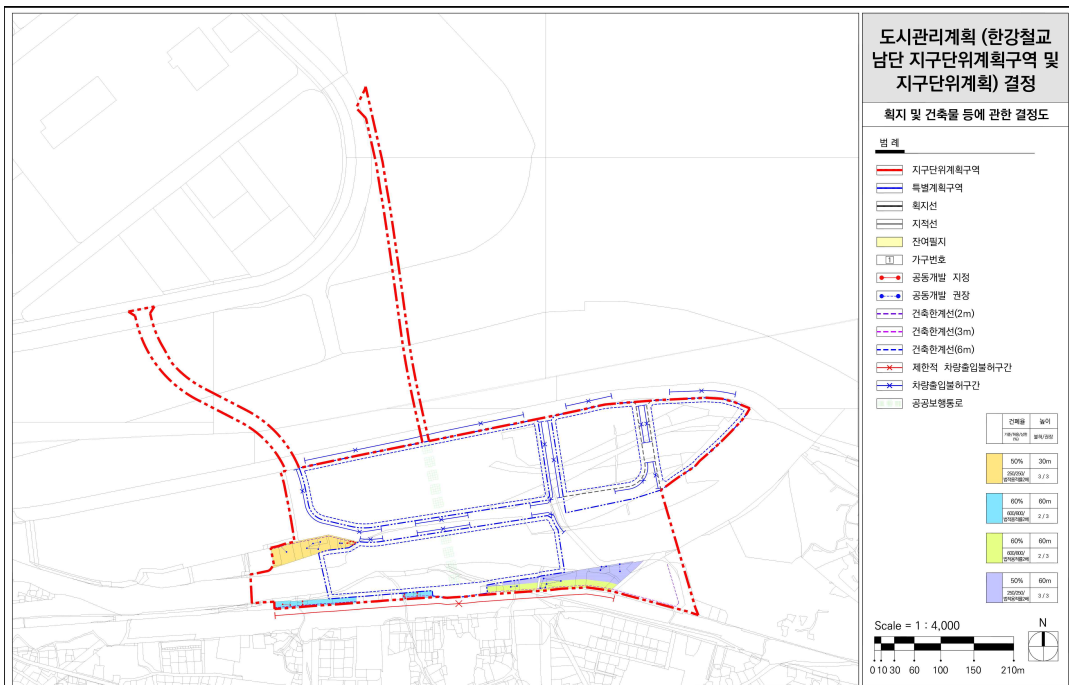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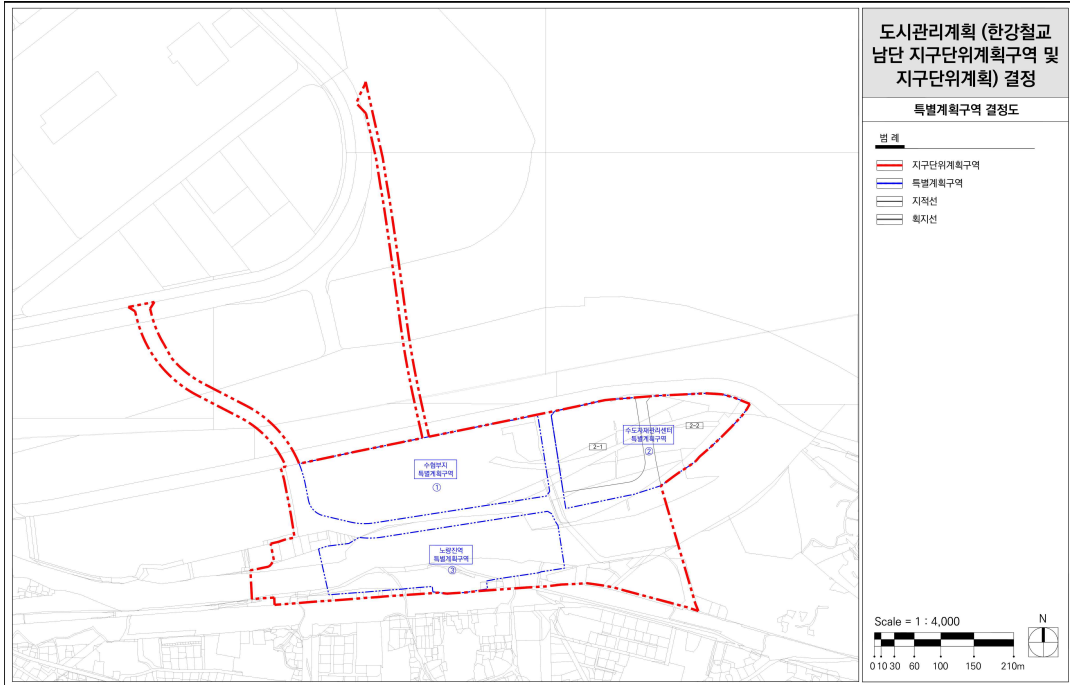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Ⅰ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5호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

연번	자치구	위치	구역면적(㎡)	기 지정면적(㎡)	금회 지정면적(㎡)	비고
1	종로구	청신동 23-2번지 일대	62,926.7	41,261	21,665.7	
2	종로구	송인동 56-4번지 일대	41,926.5	43,093	△1,166.5	축소

※ 기 지정면적(㎡) : 20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으로 건축허가제한 지정된 면적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1호(2022.1.14.)]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1) 제한대상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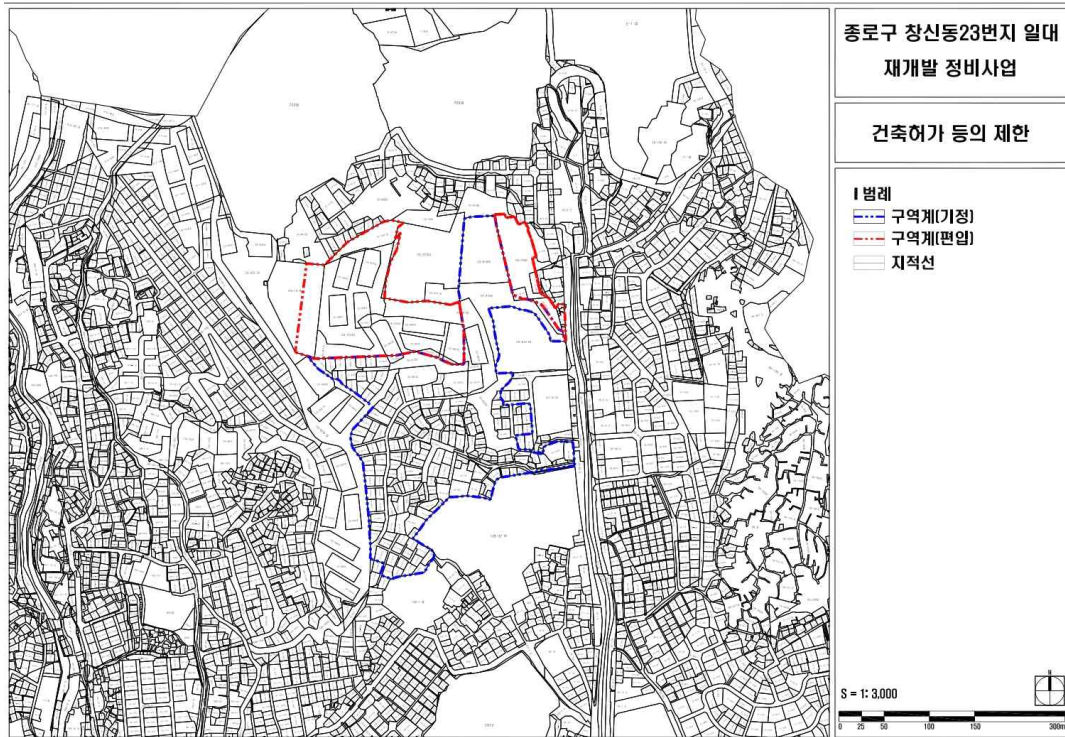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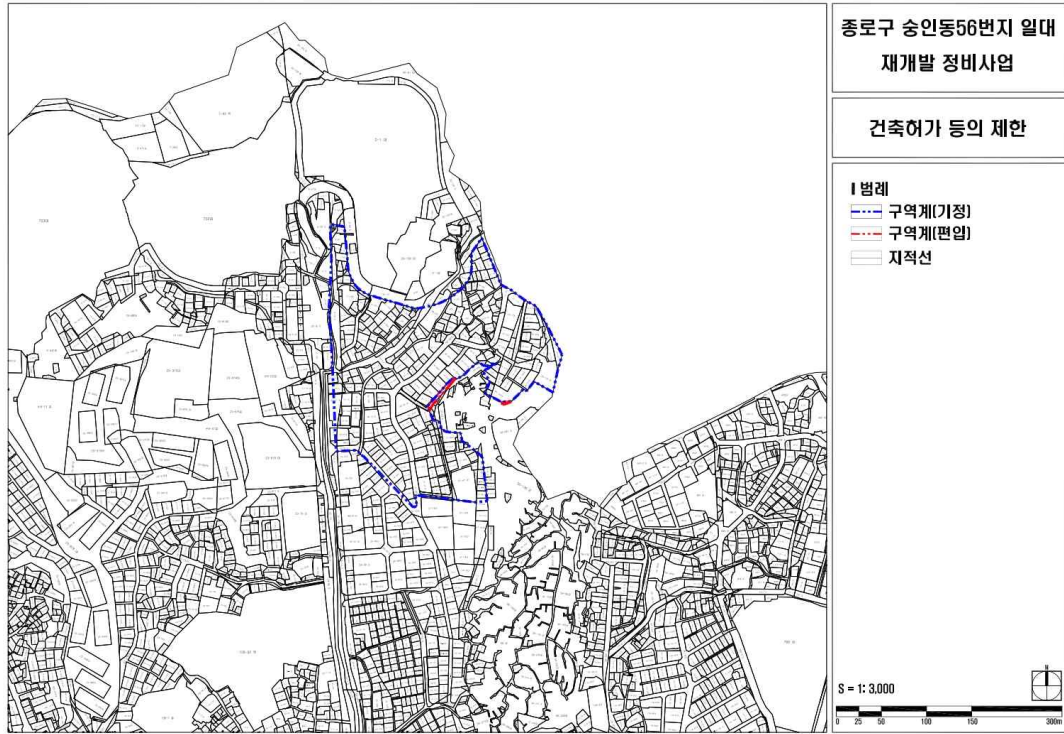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2. 관계도면

○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



○ 종로구 송인동 56-4번지 일대



3.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또는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6호
영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3호(1997.02.04.)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46호(2021.8.19.)로 변경 결정된 노원구 월계동 산108번지 일대 영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시설공원 중 일부(영축산근린공원)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면적 등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어린이놀이기구, 화계, 체력단련장 조성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108번지 일대
 3. 면 적 : 82,045.4㎡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68)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02-2116-3936)

영축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가. 총괄표(위치 : 노원구 월계동 산10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증수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82,045.4	19,422.73	1	2,381.02	7,986.27	72	82,045.4	21,430.05	1	2,381.02	7,986.27	79	증) 2,007.32㎡
기 반 시 설	소계	8,455.14					9,659.91	9,659.91					증) 1,204.77㎡
	도로	6,004.15					6,290.65	6,290.65					증) 286.50㎡
	광장	2,450.99					3,369.26	3,369.26					증) 918.27㎡
조경시설	795.32	795.32				6	945.37	945.37				13	증) 150.05㎡
휴양시설	2,352.84	2,352.84				14	2,352.84	2,352.84				14	
유희시설	326	326				6	847.66	847.66				6	증) 521.66㎡
운동시설	3,202.46	3,202.46	1	2,381.02	7,986.27	12	3,333.30	3,333.30	1	2,381.02	7,986.27	12	증) 130.84㎡
교양시설	13,000	3,940				13	13,000	3,940				13	
편익시설	193	193					193	193					
관리시설	157.97	157.97				21	157.97	157.97				21	
누 지	53,562.67						51,555.35						감) 2,007.32㎡
시 설 을 (변정 40%)	(19,422.73 / 82,045.4) × 100 = 23.67%							(21,430.05 / 82,045.4) × 100 = 26.11%					
건 패 을 (변정 10%)	(2,381.02 / 82,045.4) × 100 = 2.90%							(2,381.02 / 82,045.4) × 100 = 2.90%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82,045.4	19,422.73		1	2,381.02	7,986.27	72				1	2,381.02	7,986.27	79	증) 2,007.32㎡	
		소 계			8,455.14	8,455.14													증) 1,204.77㎡	
	도로		전지역	6,004.15	6,004.15								전지역	6,290.65					증) 286.50㎡	
	(도시계획도 로)		870-3	(540)	(540)								870-3	(540)						
			588-2대 일대	(125.0)	(125.0)								588-2대 일대	(125.0)						
	관 장	가	3개소	2,450.99	2,450.99								가	8개소	3,369.26					증) 918.27㎡
		가-1	월계동 산130-3	859	859							(6)	가-1	월계동 산130-3	859				(6)	정의자(5) 6기
		가-2	월계동 586-5	764.64	764.64								가-2	월계동 586-5	764.64					
		가-3	월계동 547-61공	827.35	827.35								가-3	월계동 547-61공	827.35					
													가-4	월계동 산120-59	311.97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조경시설	소계			795.32	795.32				6			945.37	945.37						13	증) 150.05㎡
	연못	나	월계동 산130-3	552	552					나	월계동 산130-3	552	552							
		①	4개소	(153)	(153)				6	①	4개소	(233)	(233)						13	
		①-1	월계동 산114-2임 (휴게소(다-1)내)	(32)	(32)				2	①-1	월계동 산114-2임 (휴게소(다-1)내)	(32)	(32)						2	
		①-2	월계동 산125-8 (체력단련장(바-3)내)	(16)	(16)				1	①-2	월계동 산125-8 (체력단련장(바-3)내)	(16)	(16)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①-4	월계동 산125-9 (채력단량장(바-1)내)	(48)	(48)			1	①-4	월계동 산125-9 (채력단량장(바-1)내)	(57)	(57)			2	
		①-5	월계동 산130-3 (후계소(다-4)내)	(57)	(57)			2	①-5	월계동 산130-3 (후계소(다-4)내)	(16)	(16)			1	
									①-6	월계동 산120-5원 (광장(가-4)내)	(16)	(16)			1	신설
									①-7	월계동 산120-5원 (광장(가-5)내)	(32)	(32)			2	신설
									①-8	월계동 산120-5원 (유곡시설(라-5)내)	(32)	(32)			2	신설
									①-9	월계동 산117-6 (광장(가-6)내)	(16)	(16)			1	신설
									①-10	월계동 산114-2원 (광장(가-7)내)	(16)	(16)			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회계	사	4개소		168.75	168.75						사	7개소	318.8	318.8						
	사-1	월계동 547-61	59.23	59.23						사-1	월계동 547-61	59.23	59.23							
	사-2	월계동 547-61	74.06	74.06						사-2	월계동 547-61	74.06	74.06							
	사-3	월계동 547-61	24.84	24.84						사-3	월계동 547-61	24.84	24.84							
	사-4	월계동 547-61	10.62	10.62						사-4	월계동 547-61	10.62	10.62							
										사-5	월계동 산120-5임	85.76	85.76						신설	
										사-6	월계동 산120-5임	58.4	58.4						신설	
									사-7	월계동 산127-7임	5.89	5.89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수생비오름	차	월계동 547-61	74.57	74.57						차	월계동 547-61	74.57	74.57					
	휴게소			2,352.84	2,352.84				14				2,352.84	2,352.84				14	
		다	6개소	2,352.84	2,352.84						다	6개소	2,352.84	2,352.84					
		다-1	월계동 산114-2	1,250	1,250				(6)	다-1	월계동 산114-2	1,250	1,250	1,250	1,250			(6)	그늘시령(0-1) 2기 장의재(5) 4기
		다-3	월계동 산130	73	73					다-3	월계동 산130	73	73	73	73				
		다-4	월계동 산130-3	539	539				(2)	다-4	월계동 산130-3	539	539	539	539			(2)	그늘시령(0-5) 2기
		다-5	월계동 산130	61	61					다-5	월계동 산130	61	61						
		다-6	월계동 547-61	59.84	59.84					다-6	월계동 547-61	59.84	59.8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서면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규모	구조	면적	
		다-7	월계동 산125-11	370	370										
	장의자	⑤	전지역					14						14	
	소계			326	326			6						6	증) 521.66㎡
	어린이놀이 터	라	2개소	326	326										증) 521.66㎡
	놀이터3	라-3	월계동 산131-4	232	232			(3)						(3)	조합놀이대(⑥) 1기
	조합놀이대	⑥	월계동 산131-4			목조		1					목조	1	사이소(⑦) 2기
	사이소	⑦	월계동 산131-4			목조		2					목조	2	
	놀이터4	라-4	월계동 산125-8	94	94			(3)						(3)	조합놀이대(⑥) 1기 혼합놀이대(⑧) 2기
	조합놀이대	⑧	월계동 산125-8					1						1	

안희시센터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흔들놀이대	㉘	월계동 산125-8							2	㉘	월계동 산125-8								2	
	놀이터5										라-5	산 120-5임	521.66	521.66							신설
	소계			3,202.46	3,202.46		1	2,381.02	7,986.27	12			3,333.30	3,333.30		1	2,381.02	7,986.27	12	(증) 130.84㎡	
	체력단련장	바	2개소	593.13	593.13					12	바	2개소	593.13	593.13					12	12	
	체력단련장 -1	바-1	월계동 산125-9임	307.13	307.13					7	바-1	월계동 산125-9임	307.13	307.13					7	7	
안동시청	철봉	㉙	월계동 산125-9임			철재				3	㉙	월계동 산125-9임			철재					3	3
	평행봉	㉚	월계동 산125-9임			철재				2	㉚	월계동 산125-9임			철재					2	2
	윗몸일으키기	㉛	월계동 산125-9임			철재				2	㉛	월계동 산125-9임			철재					2	2
	체력단련장 -3	바-3	신내동 산136-11공	286	286					5	바-3	신내동 산136-11공	286	286						5	5

안녕하세요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철봉	㉑	월계동 산125-9임			철재				3	㉑	월계동 산125-9임			철재					3	3
	웃몸일으키기	㉒	월계동 산125-9임			철재				2	㉒	월계동 산125-9임			철재					2	2
	체력단련장										바-4	월계동 산120-5임	130.84	130.84							
	구민체육센터	1	월계동 산125-8임	2609.33	2609.33	철골/지하2층	지하2층	2381.02	7986.27	1	월계동 산125-8임	2609.33	2609.33	철골/지하2층	지하2층	2381.02	7986.27		그늘시령(㉑-2) 1기 장의재(㉑) 2기 철봉(㉑) 3기 웃몸일으키기(㉒) 2기		
교양시설	소계			13,000	3,940					13			13,000	3,940						13	
	유아체육활동원	카	월계동 산130-3	13,000	3,940					13	카	월계동 산130-3	13,000	3,940						13	
편의시설	소계			193	193								193	193							
	데크쉼터	마	5개소	193	193						마	5개소	193	193							
		마-1	월계동 산116-1	17	17						마-1	월계동 산116-1	17	1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마-2	월계동 산114-2	30	30					마-2	월계동 산114-2	30	30					
		마-3	월계동 산130	54	54					마-3	월계동 산130	54	54					
		마-4	월계동 산130	40	40					마-4	월계동 산130	40	40					
		마-5	월계동 산130	52	52					마-5	월계동 산130	52	52					
관급 시설				157.97	157.97				21			157.97	157.97				21	
	②	전지역							3	②	전지역						3	
	③	전지역							6	③	전지역						6	
	④	전지역							12	④	전지역						1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담면적	연면적							비담면적	연면적		
		아	2개소	35.42	35.42					아	2개소	35.42	35.42					
		아-1	월계동 547-61	5.99	5.99					아-1	월계동 547-61	5.99	5.99					
		아-2	월계동 547-61	29.43	29.43					아-2	월계동 547-61	29.43	29.43					
		자	월계동 547-61	122.55	122.55					자	월계동 547-61	122.55	122.55					
		소계		53,562.67								51,555.35						합) 2,007.32㎡

다.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089	6,004.15				
변경					3,307	6,290.65				
당초	소 계				94	319.65				
변경										
당초	소로	3류	1	6	(90)	(540.0)	연결로	월계동 870-3	산116임	도시계획도로
변경										
당초			2	3.7	(55)	(125.0)	도로	월계동 568-2대	산106-4임	도시계획도로
변경										
당초			3	3.4	94	319.65	보행로	산 106-5임	576-1 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소 계				2,995	5,684.5				
변경					3,213	5,971.0				
당초	산책로		3	2.0	45	90	산책로	월계동 산108-1	월계동 산108-2	
변경										
당초			5	1.5	212	318.0	산책로	월계동 산125-8	체력단련장(바-1)	
변경										
당초			6	1.5	94	141.0	산책로	산책로5 분기점	월계동 산125-11	
변경										
당초			14	2.0	77	155	산책로	월계동 산106-2	월계동 산106-5	
변경										
당초	산책로		17	1.5	51	76	산책로	휴게소(다-1)	월계동 산114-4	
변경										
당초			19	2	19	59	산책로	월계동 산116-2	산책로22 종점	
변경	산책로									
당초			21	1.5	56	84.0	산책로	산책로22 종점	월계동 산117-1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당초			1.5	65	97.0	산책로	산책로48 종점	월계동 산117-1	
당초			22	4.0	32	128	산책로	월계동 산117-5	산책로19 종점	
변경				3.0	13	40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48 분기점	
당초			23	2.0	122	244	산책로	월계동 산117-1	월계동 산 120-5	
변경				1.5	114	172	산책로	월계동 산117-1	광장(가-5)	
당초			25	1.5	324	486.0	산책로	월계동 산130	산책로43 분기점	
당초			26	2.0	298	596	산책로	월계동 산130	광장(가-1)	
당초			27	2.0	52	103	산책로	월계동 산127-7	월계동 산127-7	
변경				1.5	64	81	산책로	월계동 산127-7	월계동 산127-3	
당초			30	2.0	17	33	산책로	월계동 산130	산책로26 분기점	
당초			31	2.0	116	232	산책로	월계동 산130	연못(나)	
당초			37	2.0	73	147	산책로	월계동 산114-2	산책로 47 종점	
당초	산책로		38	1.5	42	63.0	산책로	산책로37 분기점	산책로39 분기점	
당초			39	1.5	62	93.0	산책로	산책로17 분기점	산책로37 분기점	
당초			43	1.5	66	99.0	산책로	휴게소(다-5)	광장(가-1)	
당초			44	1.5	6	10	산책로	산책로45 분기점	월계동 산125-11	
당초			45	1.5	47	71	산책로	산책로5 분기점	월계동 산1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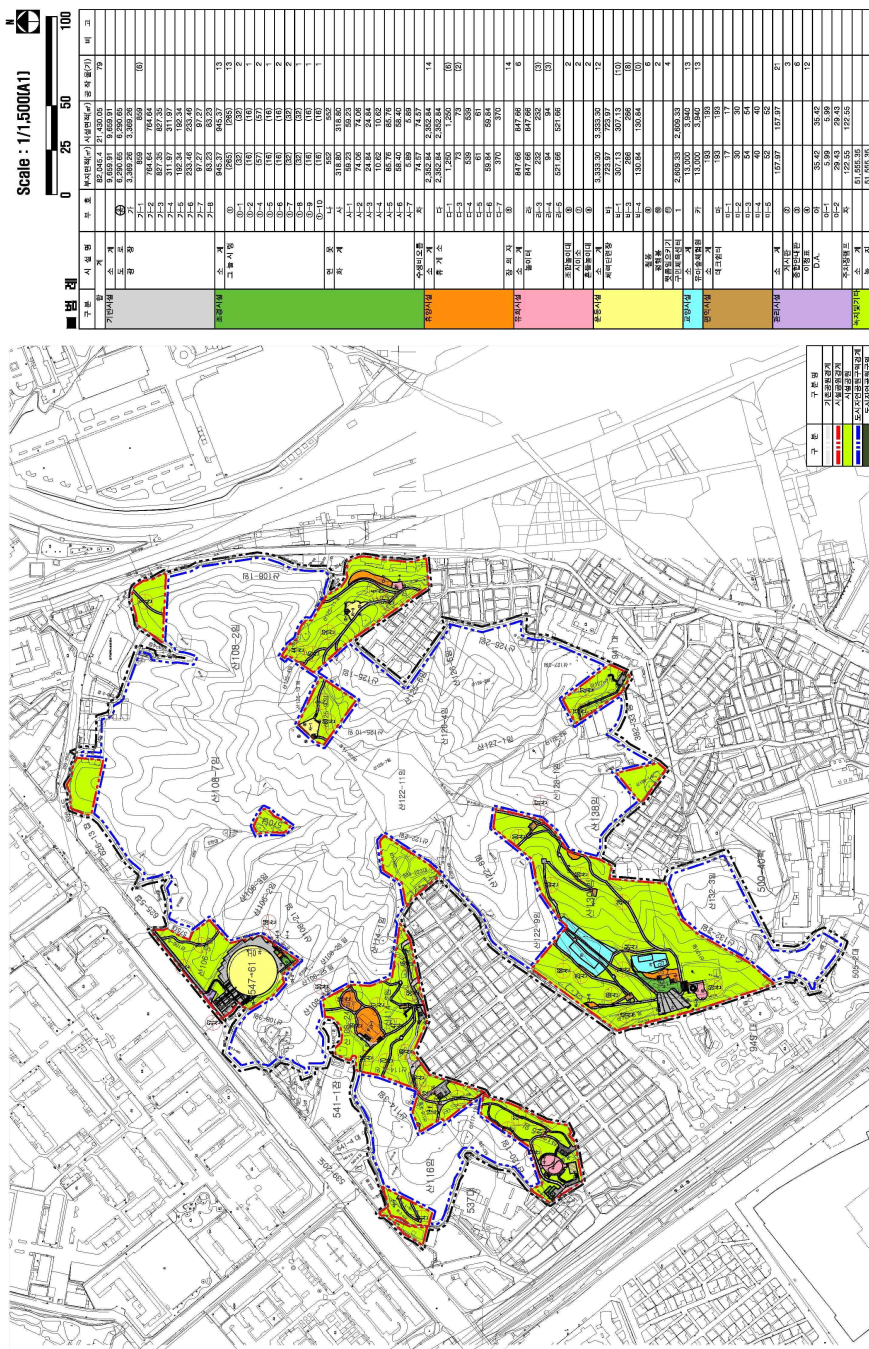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6	1.5	56	84.0	산책로	월계동 산114-2	산책로50 분기점	
당초			47	1.5	58	87.0	산책로	산책로50 분기점	휴게소(다-1)	
변경				1.5	66	99.0	산책로	광장(가-7)	산책로17 시점	
당초			48	1.5	68	102.0	산책로	월계동 산 114-4	산책로22 종점	
당초			49	1.5	94	112.5	산책로	산책로50 종점	산책로48 분기점	
변경				1.5	94	140.0	산책로	광장(가-7)	산책로48 분기점	
당초			50	1.5	38	57.0	산책로	월계동 산 114-2	산책로49 기점	
변경				2.0	41	162.0	산책로	월계동 산 114-2	광장(가-7)	
당초			52	1.8	15	27	산책로	월계동 산125-11	산책로5 분기점	
당초			55	2.0	20	40	산책로	산책로 38	월계동 산108-24	
당초			57	5.3	39	353.0	산책로	광장(가-2)	주차장램프(자)	
당초			58	2.4	4	9	산책로	광장(가-3)	월계동 547-61	
당초			59	2.0	17	35	산책로	광장1(가-1)	월계동 산131-4	
당초			60	2.0	12	30	산책로	휴게소9(다-9)	월계동 산125-9	
당초			61	2.0	13	81	산책로	월계동 산120-5	월계동 산 120-5	
폐지										
당초			62	2.0	26	52	산책로	산책로61 분기점	월계동 산 120-5	
폐지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63	2.0	17	33	산책로	산책로61 분기점	월계동 산 120-5	
폐지										
당초	산책로		64	2.0	61	121	산책로	산책로26 분기점	산책로31 분기점	
당초			65	1.8	135	270	산책로	유아체험원(카)	데크쉼터(마-4)	
당초			66	1.8	126	226	산책로	데크쉼터(마-4)	데크쉼터(마-3)	
당초			67	1.8	9	17	산책로	데크쉼터(마-3)	월계동 산130	
당초			68	1.8	102	196	산책로	월계동 산130	데크쉼터(마-5)	
당초			69	1.8	32	59	산책로	데크쉼터(마-5)	휴게소(다-5)	
당초			70	1.8	200	351	산책로	월계동 산114-1	월계동 산114-4	
당초			71	1.8	61	114	산책로	데크쉼터(마-1)	월계동 산116-1	
신설			72	2.5	107	260	산책로	광장(가-4)	광장(가-5)	
신설			73	1.5	70	105	산책로	산책로23 분기점	산책로72 분기점	
신설			74	1.5	6	11	산책로	산책로23 분기점	산책로72 분기점	
신설			75	1.5	67	101	산책로	광장(가-8)	산128-1임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조성계획도[변경후]

하
하
하
하
하
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7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조성대상: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은평구	갈현로33길	6~9.5	270

2. 조성계획: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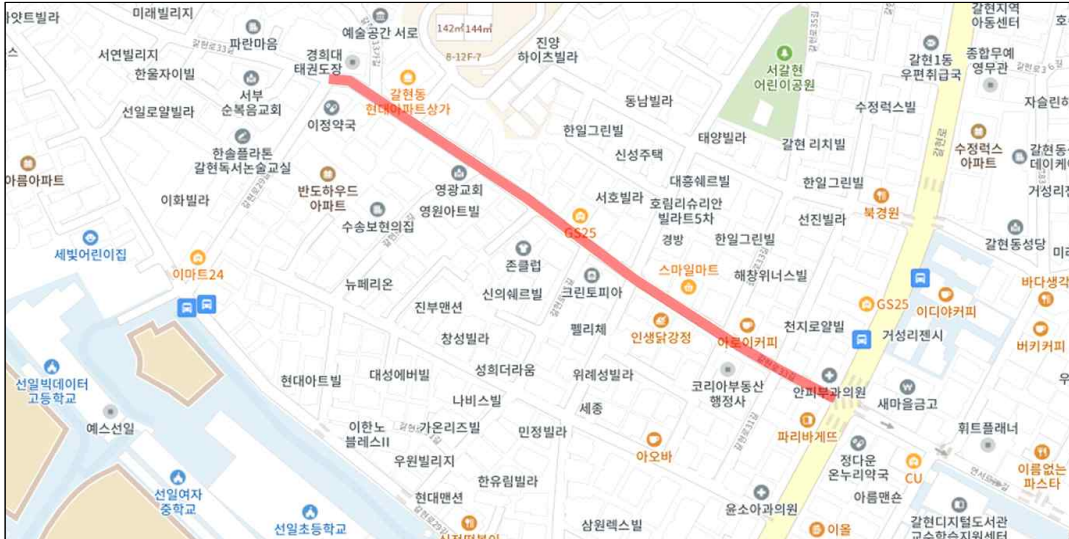
붙임: 은평구 갈현로33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1부

[붙임 1]

은평구 갈현로33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위치: 갈현로33길 일원(갈현초교입구 교차로~갈현 현대아파트)
- 사업규모: 폭원 6 ~ 9.5m, 연장 270m



- 사업기간: 2023. 8. ~ 11.(4개월)
- 사업내용
 -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보행친화형 디자인 포장,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사업비: 200백만원(특교세 100, 구비 100)
- 사업지 현황
 - 갈현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되며, 사업구간 양옆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민 보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보행자 보호가 필요함

□ 개선목표 및 범위

- (경제적 효과)보행량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 (만족도)안전성/편리성/쾌적성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 (안전성 측면)차량 감속,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으로 보행안전 확보
- (편리성 측면)차량통행량 감소, 주·정차 차량 감소, 보행편의 확보
- (쾌적성 측면)가로미관 향상, 차량소음 감소

□ 설계안

- 설계내용
 -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보행친화형 디자인 포장
 - 보행자우선도로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8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42호(2009.06.18.)로 정비구역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389호(2022.09.2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06.21.)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구역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충정로3가, 합동 28-5번지 일대	61,821.5	-	61,821.5	건설부고시 제345호 (' 79.9.21.)

나. 정비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시행면적(㎡)	구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대	5,596.2	5,062.5	533.7	-
변경				5,046.0	550.2	-

■ 변경사유 : 기반시설 부담계획 조정(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예정지)과 소로2-20호선의 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도로 확대)에 따른 시행면적 감소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596.2	-	5,596.2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533.7	증) 16.5	550.2	9.8	-
	도 로	533.7	증) 16.5	550.2	9.8	-
획 지	소 계	5,062.5	감) 16.5	5,046.0	90.2	-
	획 지 1	5,062.5	감) 16.5	5,046.0	90.2	-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총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예정지)과 소로2-20호선의 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도로 확대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596.2	-	5,596.2	100.0	-
준주거지역	5,596.2	-	5,596.2	100.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방화지구	서대문 ~ 마포간	85,752	-	-	건설부고시 727호 (' 63.12.13.)	-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신설 (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1)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 자산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17.41% ⇒ (224,702,208,000원 - 144,882,705,000원) / 85,019,493,000원 × 100% - 총 수입 추정 : 244,702,208,000원 - 총 지출 추정 : 144,882,705,000원 - 총 종전자산총액 : 85,019,493,000원
-----------	--

개별 종전 자산액	• 종전 자산 =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주변지역의 평가사례 · 거래사례를 반영하여 공시지가 대비 보정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평가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59㎡	7.7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17.41%)		권리자 분양가 - 추정권리가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에서 추정권리가액을 감액한 결과가 (+)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임)
	전용 84㎡	9.9억			

※ 상기 금액은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서대문구 검증위원회('23.4.19.)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

※ 다만,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종전자산, 사업비, 종후자산의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기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산출근거

■ 비례율 및 분양수입 추정 등

$$\begin{aligned}
 (1) \text{ 비례율} &= \{ \text{종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 수입)} - \text{총 사업비 (총 지출)} \} / \text{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조합원 총 재산)} \\
 &= (244,702,208,000\text{원} - 144,882,705,000\text{원}) / 85,019,493,000\text{원} = 117.41\%
 \end{aligned}$$

$$(2) \text{ 총수입} : 244,702,208,000\text{원}$$

$$\begin{aligned}
 &[\text{공동주택 분양수입}(191,494,758,000\text{원}) + \text{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53,207,450,000\text{원})]
 \end{aligned}$$

① 공동주택 분양수입 추정

구분	세대수(세대)				분양단가 (천원/3.3㎡)		세대별분양가(천원)		분양총액(천원)			
	계	조합	보류지	일반	조합, 보류지	일반	조합, 보류지	일반	계	조합	보류지	일반
전용 59㎡형	72	23	-	49	31,212	36,720	767,463	902,898	61,893,628	17,651,649	-	44,241,979
전용 84㎡형	120	56	1	63	28,900	34,000	988,434	1,162,863	129,601,122	55,352,304	988,434	73,260,384
계	192	79	1	112	-	-	-	-	191,494,758	73,003,953	988,434	117,502,363

② 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 추정

구분	전용면적(㎡)		계약면적(㎡)		전용단가(원/㎡)		계약단가(3.3㎡)		분양총액(천원)		
	조합	일반	조합	일반	조합	일반	조합	일반	계	조합	일반
지하 1층	-	2,351.74 6	-	3,094.80 3	-	5,805	-	14,582	13,651,0 29	-	13,651,0 29
지상 1층	396,000	1,151.58 8	549,672	1,598.47 4	16,446	19,349	39,169	46,081	28,794,6 35	6,512,80 1	22,281,8 34
지상 2층	-	1,362.62 8	-	1,891.41 1	-	9,674	-	23,040	13,182,6 01	-	13,182,6 01
계	396,000	4,865.96 2	549,672	6,584.68 8	-	-	-	-	53,207,4 50	6,512,80 1	49,115,4 64

※ 근린생활시설 분양총액의 합계는 매출부가세(2,420,815천원)를 제외한 금액임

(3) 총 사업비 : 144,882,705,000원

구분	내용	비고
연면적	43,156.80	-
공사비	99,771,541,000	건축시설 공사비,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보상비	12,772,203,000	국공유지 매입비, 현금청산자 청상금 등
관리비	3,002,505,000	조합운영비, 총회비, 신탁등기비 등
설계비 등	1,323,484,000	건축설계, 정비계획변경 등
감리비	2,189,173,000	건축, 전기공사비, 정보통신 및 소방 등
수수료 등 기타사업비	8,272,165,000	정비사업전문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 세무회계용역비 등
각종부(분)담금	1,705,386,000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4,649,598,000	재산세, 법인세 등
사업비 금융비용	4,195,192,000	사업비 대여금 이자,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
예비비	7,001,458,000	-
총사업비	144,882,705,000	-

※ 정비사업비는 향후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가격 및 추정분담금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가격 : 85,019,493,000원(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평가액 반영)

※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선정된 감정 평가업체를 통해 확정되며, 종전자산, 사업비, 중후자산이 변경될 수 있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6	충정로3가 360-24	충정로3가 360-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389호 (' 22.9.22.)	면적 341.4㎡
변경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6	충정로3가 360-24	충정로3가 360-1	일반 도로	-		면적 357.9㎡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32	충정로3가 250-61	충정로3가 463-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389호 (' 22.9.22.)	-

※ 도로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20	소로2-20	도로 면적변경 - 면적 : 341.4㎡ → 357.9㎡, 증) 16.5㎡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예정지)과의 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도로 확대

마.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 변경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 변경

구분	지구명	시행구역 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율 (%)	비 고
기정	2지구	5,596.2	5,062.5	533.7	-	228.0	284.2	-	13.23 이상	-

구분	지구명	시행구역 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율 (%)	비 고
변경	2지구	5,596.2	5,046.0	550.2	1,546.9	228.0	284.2	1,584.9	31.17	-

※ 순부담율 = 순부담면적(정비기반시설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시행구역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기정 :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89호, 2022.9.22.)

※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의 경우, 향후 건축계획 등으로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 등 조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기반시설 부담계획 조정(총경로1구역 공공재개발(예정지)과 소로2-20호선의 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도로 확대 및 건축물(사회복지시설) 설치·제공에 따른 변경]

▶ 정비기반시설 부담량 : 31.17%(1,584.9㎡) > 기결정 부담량 : 13.23%

※ 기결정 :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정비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89호, 2022.09.22.)

① 정비기반시설 부담 : 550.2㎡ (도로)

②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 512.2㎡

③ 건축물 기부채납 : 1,546.9㎡ (지상2층(일부) ~ 지상3층)

- 건축물 환산면적 : 845.5㎡ / 토지지분면적 701.4㎡ [연면적 4,150㎡]

- 도입시설(지분 및 건축물)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 및 서대문구청장이 운영·관리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사회복지시설(건축물 기부채납) 설치계획]

구 분	계산값	비 고
① 부지면적	5,046.0㎡	• 획지면적
② 전체 건축연면적	26,519.70㎡	• 전체 지상연면적
③ 공공기여 연면적	4,150.0㎡	• ① + ②
a 지상 연면적	3,686.589㎡	-
b 지하 연면적	463.411㎡	-
공공기여 규모	지상 2층(일부) ~ 지상 3층	-
④ 표준건축비	3,751,000원	•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종합 사회복지관 건축비용 적용)
⑤ 설치비용	15,566,650,000원	• ③ × ④
⑥ 부지가액	18,410,000원	• 2023년 평균공시지가 가중평균값 2배 적용

구 분		계산값	비 고
⑦	환산부지면적	1,546.9㎡	• ㉔ + ㉕
	㉔ 건축물 환산면적	845.5㎡	• ⑤ / ⑥
	㉕ 토지부지면적	701.4㎡	• (㉑ / ②) × ①
도입 용도	정신건강센터 (지상2층 일부 ~ 3층 일부)	2,898.22㎡ ※ 1층의 코어면적 포함	•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
	자활시설 (지상3층 일부)	1,251.78㎡ ※ 1층의 코어면적 포함	• 서대문구로 귀속되며, 서대문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 사회복지시설(건축물 기부채납)의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주관부서와 협의 거쳐 최종 결정.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이 개정된 경우 해당 표준건축비를 적용.

2)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확보) 계획 : 변경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2지구	소 계			533.7	2지구	소 계			550.2
	충정로3가	248-5	도로	47.3		충정로3가	248-5	도로	49.6
		250-5		39.2			250-5		39.2
		250-7		0.6			250-7		0.6
		250-61		30.2			250-61		30.2
		250-70		0.6			250-70		0.6
		250-84		10.4			250-84		10.4
		250-85		3.4			250-85		3.4
		250-85		3.4			265-2		4.7
		265-2		4.7			268		14.3
							269		55.0

기 정				변 경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268		14.3			270-1		7.4	
		269		55.0			270-3		86.0	
		270-1		7.4			270		71.4	
				270-3			83.4		274	47.3
		270					71.4		275	16.9
				274			47.0		346-1	1.6
		275					8.2		346-2	1.0
				360-24			1.0		360-24	1.0
		463-2					109.6		463-2	109.6
										건축물 기부채납

※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 변경사유 : 기반시설 부담계획 조정(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예정지)과 소로2-20호선의 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도로 확대 및 건축물(사회복지시설) 설치 · 제공에 따른 변경]

(2) 국 · 공유지 매입대상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지 목	면 적(㎡)		관리청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충정로3가	248-5	구	49.6	49.6	국토교통부	전부
		250-61	대	84.0	53.8	서대문구	전부
		250-74	대	57.3	57.3	서대문구	전부
		250-75	대	96.0	96.0	서대문구	전부
		250-77	대	11.1	11.1	서대문구	전부
		250-78	대	53.7	53.7	서대문구	전부
		250-79	대	73.8	73.8	서대문구	전부
		250-84	대	142.0	142.0	기획재정부	전부

구 분	위 치		지 목	면 적(㎡)		관리청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250-85	대	24.9	24.9	기획재정부	전부
		270-1	대	13.6	13.6	기획재정부	전부
		463-2	도	170.7	37.9	서대문구	전부
		463-3	도	1.3	1.3	서대문구	전부
		463-4	도	4.0	4.0	서대문구	전부
		463-5	도	90.3	90.3	서대문구	전부
		463-6	도	50.9	50.9	서대문구	전부
		465-6	도	41.8	41.8	서대문구	전부

※ 편입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3)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지 목	면 적(㎡)		관리청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충정로3가	소계		400.6	228.0	-	-
		250-61	대	84.0	30.2	서대문구	전부
		270-3	도	86.0	86.0	서대문구	전부
		346-1	도	3.6	1.4	서울특별시	전부
		346-2	도	56.6	0.8	서대문구	전부
		463-2	도	170.7	109.6	서대문구	전부

※ 편입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4) 사업시행구역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지 목	면 적(㎡)		관리청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총정로3가	소계		834.0	284.2	-	-
		246-2	도	3.6	3.6	서울특별시	전부
		257-3	도	199.7	199.7	서울특별시	전부
		346-1	도	141.5	2.2	서울특별시	전부
		346-2	도	318.5	55.8	서대문구	전부
		463-2	도	170.7	22.9	서대문구	전부

※ 편입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신설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민공동시설	충정로3가 250-70 일대	-	-	400.0	-
신설	경로당	충정로3가 250-70 일대	-	-	120.0	
신설	어린이집	충정로3가 250-70 일대	-	-	120.0	
신설	어린이놀이터	충정로3가 250-70 일대	-	-	60.50	-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마포로 5구역 2지구	5,596.2	획지1	5,062.5	충정로3가 250-70 일대	29	-	-	-	29	-
변경	마포로 5구역 2지구	5,596.2	획지1	5,046.0	충정로3가 250-70 일대	29	-	-	-	29	-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마포로 5구역 2지구	5,596.2	획지	5,062.5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50-70 일대	공동 주택	60% 이하	300% / 400% / α	70m + α 이하	-
변경			획지	5,046.0				300% / 400% / 557.24%	89.08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변경)			•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192세대 • 85㎡ 이하 규모의 주택면면적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공동 주택	분양	60㎡ 이하		72세대	37.5%	-	
					60㎡ ~ 85㎡ 이하		120세대	62.5%	-	
					85㎡ 초과		-	-	-	
				합 계		192세대	100.0%	-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심의완화 사항 (변경)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300% ② 허용용적률 : 400%(기준용적률 300% + 인센티브량 100%) <table><tr><th>목적</th><th>인센티브 대상</th><th>요건</th><th>인센티브</th><th>인센티브량</th></tr><tr><td rowspan="3">친환경 개발 (의무)</td><td>녹색건축물 인증</td><td>그린2등급(우수)</td><td rowspan="3">50%</td><td rowspan="4">110% (100% 적용)</td></tr><tr><td>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td><td>260(kwh/㎡·y)미만</td></tr><tr><td>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td><td>10%이상(비주거), 6.5%이상(주거)</td></tr><tr><td>보행가로 활성화</td><td>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td><td>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td><td>30%</td></tr><tr><td>안전·방재</td><td>방재와 관련시설</td><td>4가지 이상 방재 관련 설치시</td><td>30%</td></tr></table>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57.24% 적용 - 허용용적률 400% + 인센티브량 157.24% = 557.24% • 허용용적률 x (1 + 1.3 × α) 이내 = 400% x (1 + 1.3 × 0.314090369) = 563.327% ⇒ 557.24% 적용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비 ∴ α = $\frac{1,584.9\text{㎡}(\text{도로 } 550.2\text{㎡} + \text{건축물 기부채납면적 } 1,546.9\text{㎡} - \text{무상양도면적 } 512.2\text{㎡})}{5,046.0\text{㎡}(\text{획지면적})} = 0.314090369$ ■ 높이완화 : 최고높이 70m이하 → 89.08m이하(19.08m 완화 적용) ① 일반업무지역 : 70m이하 ②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완화 산정 준용 = 기준높이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70m × (1,584.9㎡ / 5,596.2㎡) = 19.82m ⇒ 19.08m 적용 ∴ 최고높이 70m + 최고높이 완화 19.08m = 89.08m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2등급(우수)	50%	110% (1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60(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0%이상(비주거), 6.5%이상(주거)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30%	안전·방재	방재와 관련시설	4가지 이상 방재 관련 설치시	30%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2등급(우수)	50%	110% (1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60(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0%이상(비주거), 6.5%이상(주거)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30%																													
안전·방재	방재와 관련시설	4가지 이상 방재 관련 설치시	3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 건축한계선 : 총정로변 3m, 이면도로변 2m • 공공보행통로 : 소로2-20호선 ~ 소로3-19호선 (B=4.0m) 총정로변 ~ 공공보행통로(소로2-20호선 ~ 소로3-19호선) (B=6.0m) ※ 단, 공공재개발 사업 완료(준공)시까지 일부 구간 맹지해소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운영 (총정로변 ~ 공공보행통로(소로2-20호선 ~ 소로3-19호선))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시행면적(㎡)	구분		비고
				확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지구	서대문구 총정로3가 250-7 일대	5,596.2	5,062.5	533.7	-
변경				5,046.0	550.2	-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기반시설 부담계획 조정(총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예정지)과 소로2-20호선의 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도로 확대)에 따른 시행면적 감소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596.2	-	5,596.2	100.0	-
준주거지역	5,596.2	-	5,596.2	100.0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방화지구	서대문 ~ 마포간	85,752	-	-	건설부고시 727호 (' 63.12.13.)	-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6	총정로3가 360-24	총정로3가 360-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389호 (' 22.9.22.)	면적 341.4㎡
변경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6	총정로3가 360-24	총정로3가 360-1	일반 도로	-		면적 357.9㎡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32	총정로3가 250-61	총정로3가 463-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389호 (' 22.9.22.)	-

※ 도로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20	소로2-20	도로 면적변경 - 면적 : 341.4㎡ → 357.9㎡, 증) 16.5㎡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예정지)과의 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도로 확대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지구명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제2지구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업무, 판매 근생, 주거, 숙박 기능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나.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60% 이하	-

다.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300% 이하	400% 이하	α	
변경	300% 이하	400% 이하	557.24%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 센 티 브			비 고
	친환경개발 (그린2등급)	보행가로활성화 (저층부 활성화용도)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기정	-	-	-	
변경	50.0%	30.0%	30.0%	총 110.0% (100.0% 적용)

2)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토지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기정	533.7㎡	-	순부담률13.23% 이상
	a		
변경	550.2㎡	환산부지 845.5㎡	순부담률 31.17%
	(용적률 557.24%)		

라. 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70.00m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90m 이하의 범위에서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완화 가능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19.08m 적용)
변경	준주거지역	89.08m	

마. 건축물 배치계획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기정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충정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후퇴
		이면도로변(소로2-20, 3-19호선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후퇴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기정	공개공지	소로3-19호선변 납축	• 충정로변 및 소로3-19호선변에 면하는 가각부에 공개공지 조성
기정	전면공지	충정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0m
		소로2-20호선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0m
		소로3-19호선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0m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기정	공공 보행통로	도면에 표기	- 보행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2개소) - 위치 및 폭원 : 소로2-20호선 ~ 소로3-19호선 (B=4.0m)충정로변 ~ 공공보행통로(소로2-20호선 ~ 소로3-19호선) (B=4.0m)
변경			- 보행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2개소) - 위치 및 폭원 : 소로2-20호선 ~ 소로3-19호선 (B=4.0m)충정로변 ~ 공공보행통로(소로2-20호선 ~ 소로3-19호선) (B=6.0m)
기정	보차 혼용통로	도면에 표기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예정지) 사업완료시까지 맹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지정(조건사항)

※ 충정아파트 철거 후 조성되는 공개공지는 충정아파트의 역사적 기록이 담긴 안내판, 미니어처 등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보차혼용통로의 경우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예정지) 사업완료(준공)시 보차혼용통로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전환

(2) 기타사항

○ 충정로1 공공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지침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이면도로 간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보행편의를 위해 마포로5-2지구 남측 이면도로와 연결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차혼용통로로 운영
- 단,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충정로~서소문로를 연계하는 도로 확보 시 공공 재개발구역 내부 보차혼용통로 필요성 재검토를 통해 운영방식 전환 검토

※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389호, 2022.9.22.)의 조건사항 반영

III. 2023년 제9차('23.06.2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분	심의결과	의견사항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반영] • 동서방향의 공공보행통로의 폭원 확대(4m → 6m) • 남측 도로(소로2-20) 계획 관련 ' 22년 9월 변경 결정된 마포로5구역 전체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서고 제 2022-389호)상의 '총정로1 공공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지침' 을 2지구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에도 명기할 것. [추후반영]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총정로변 차폐감 및 위압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물 저층부의 장변길이는 메스분절 등 검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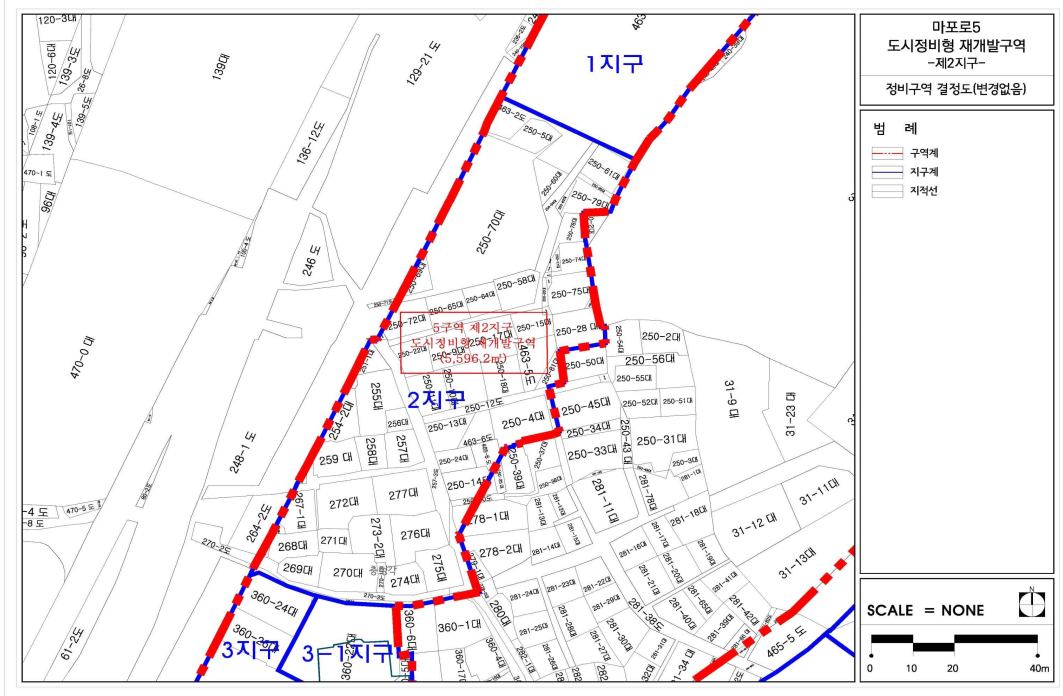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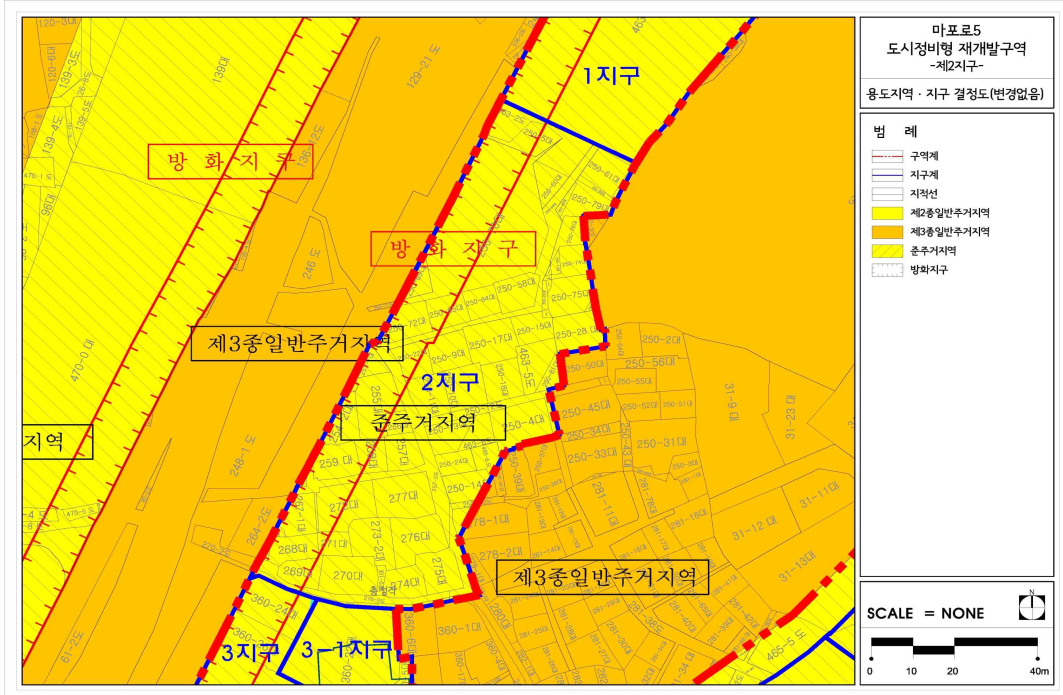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02-2133-8493) 및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330-8154)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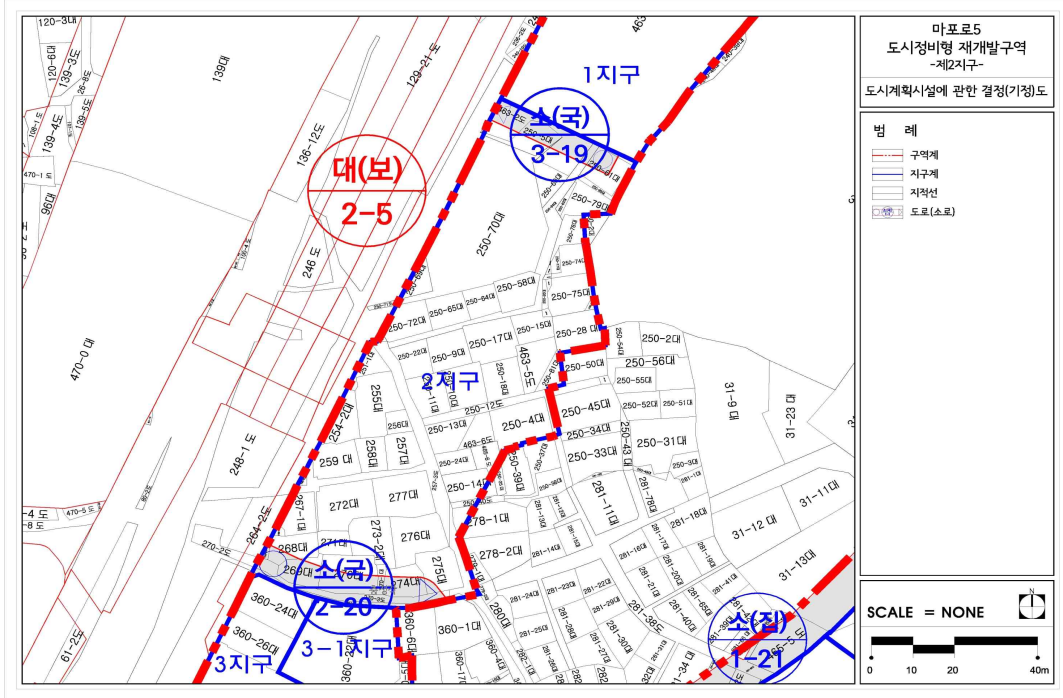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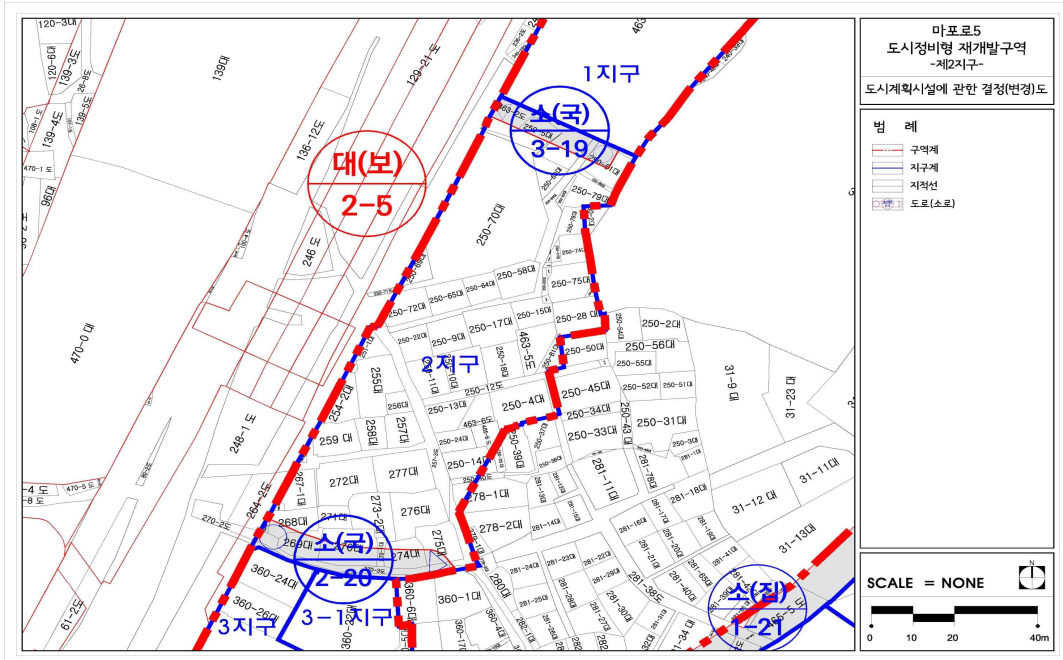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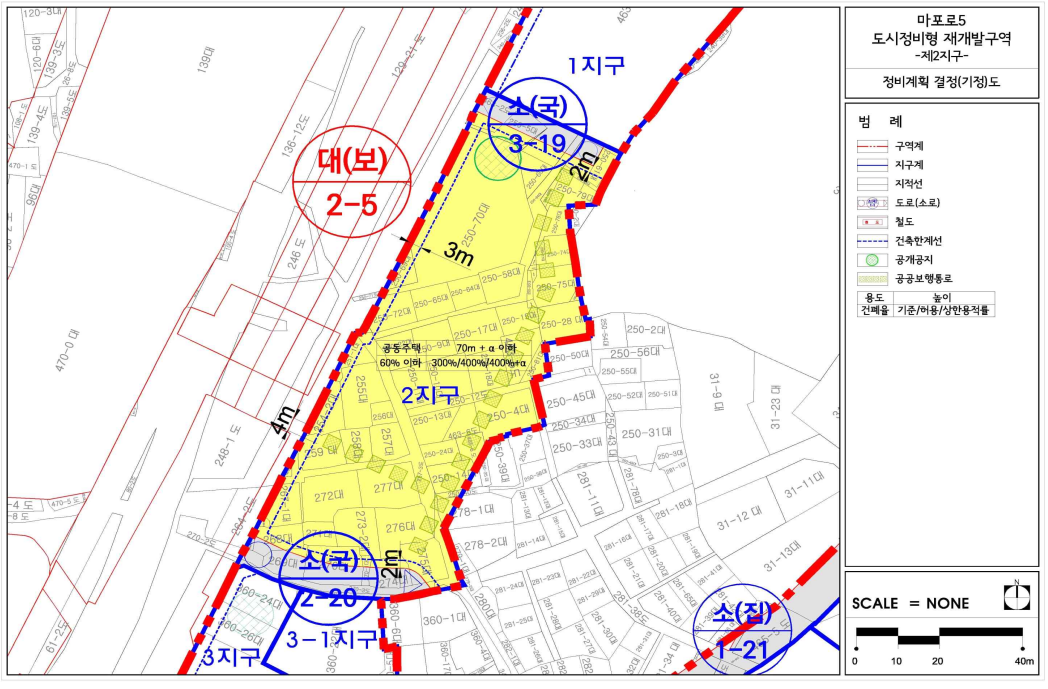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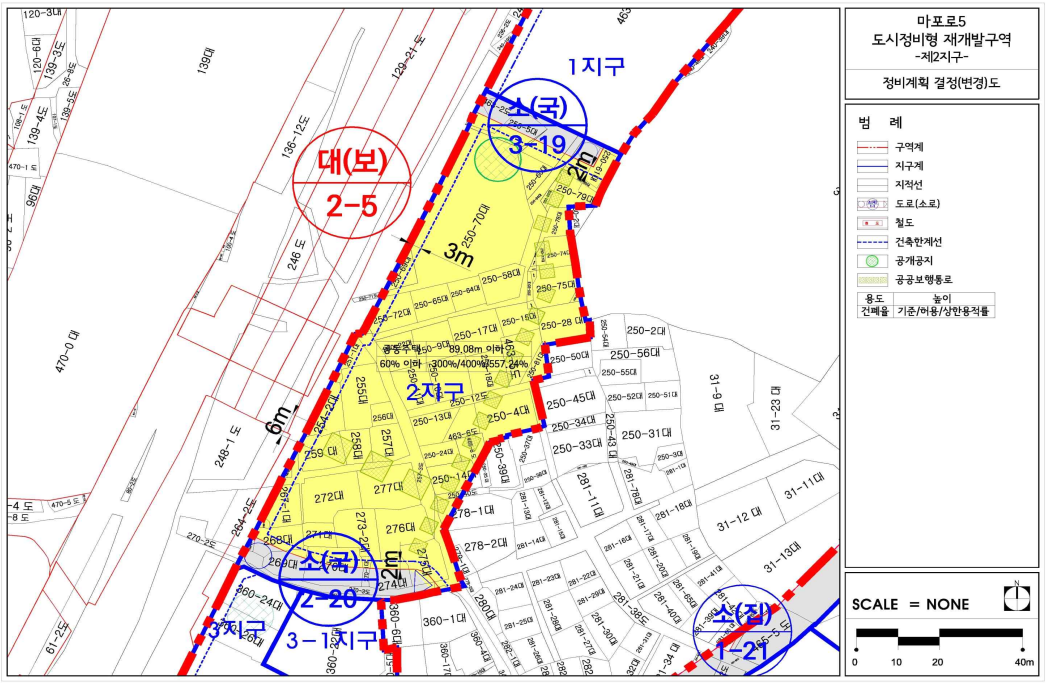


※ (소로2-20호선 면적 : 341.4㎡ → 357.9㎡ 증) 16.5㎡, 폭원·연장은 변경없음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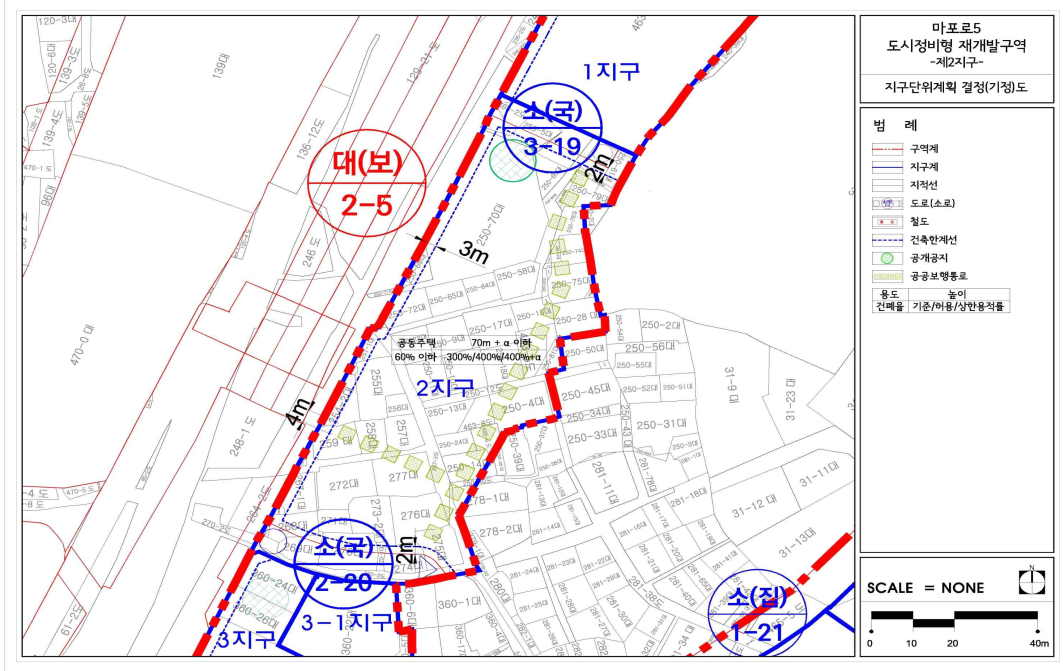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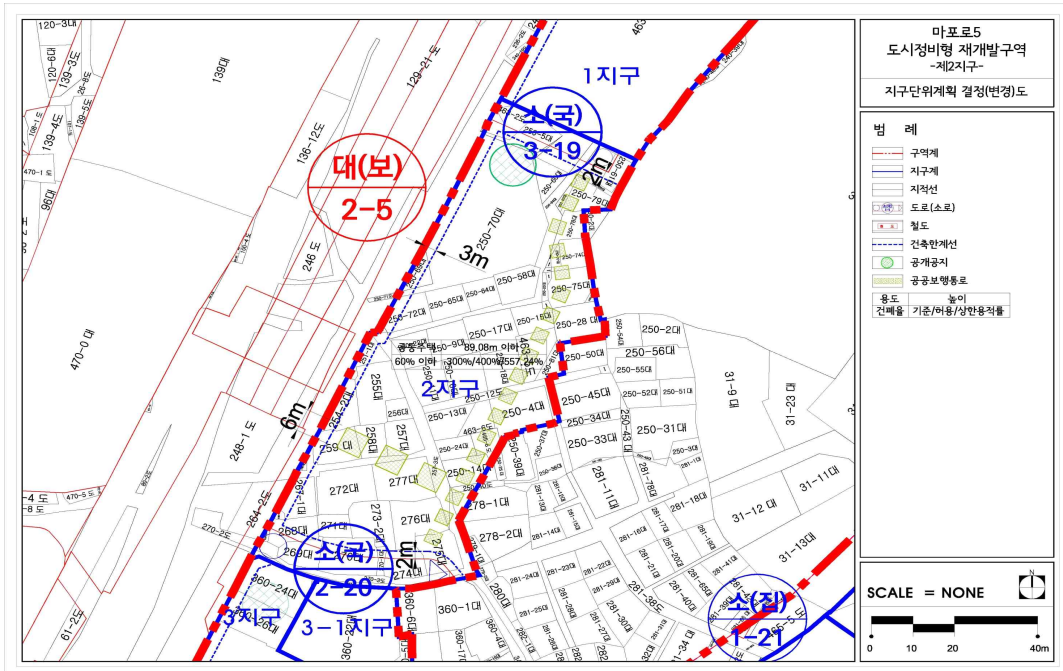


*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소로2-20호선~소로3-19호선) 일부는 층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완료(준공)시까지 맹지해소를 위해 보차혼용도로로 운영하며, 사업 완료(준공) 후 보차혼용도로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전환

■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소로2-20호선~소로3-19호선) 일부는 총정리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완료(준공)시까지 맹지해소를 위해 보차혼용도로로 운영하며, 사업 완료(준공) 후 보차혼용도로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전환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22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7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23년 11월 30일(목)이후에는 위반시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96부1834	김*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09-05 01:36	양천01_화곡로입구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11도4338	빈*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09-11 11:29	강동04_암사IC(양재대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3	41마4445	조*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09-13 14:19	경기도 과천시 우남정(과천방면) 2차선	공해차량제한지역 위반 운행제한
4	01보6885	쥬이*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3-09-25 09:37	은평02_통일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위반 운행제한
5	05머3355	정*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09-29 05:46	마포01_강변북로(서울)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위반 운행제한
6	28부5917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09-29 09:05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위반 운행제한
7	서울73라5614	쥬*모스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09-30 06:47	금천02_서부간선도로(인양)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위반 운행제한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3년 11월 30일(목)

나. 본 1회차 위반 경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문자 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 (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장재희(Tel 02-2133-3664)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접수 방법 가.핸드폰(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나.우편접수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대기정책과 다.이메일(smalleysj@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23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47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1	04노1147	유*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09-02 05:26	영등포01_여의2교(재물포 길) 4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160,000원
2	34소5609	유한회사 에*유엑스씨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09-03 18:43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1차로	"	"
3	서울880아1312	대*상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3-09-07 10:27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	"
4	18구2714	김*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09-08 16:34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파크(하남방향) 하남방면 1차로	"	"
5	53누7557	NGUY*N THI HUONG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09-08 06:20	강동07_서하남IC 2차로	"	"
6	80도6935	안*승강기(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09-09 13:49	구로05_천왕역(오리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7	80저4403	유*열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09-09 10:00	양천01_화곡로입구 2차로	"	"
8	33다7898	최*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09-10 19:24	관악01_난곡터널(문성로) 1차로	"	"
9	09모4838	박*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09-11 19:16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용이동 96-9 2차로	"	"
10	89로8402	정*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09-11 23:30	경기도 김포시 김포IC 1차로	"	"
11	04구4213	마*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09-12 17:24	송파01_송파대로 4차로	"	"
12	90수3593	이*복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3-09-12 10:24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741 파주방면 1차로	"	"
13	66소7418	박*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09-14 15:50	금천07_호암로 2차로	"	"
14	01조1175	췌*송지테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09-15 15:59	경기도 고양시 가시골입구사거리 2차로	"	"
15	04러3985	L*N YING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09-15 15:29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새IC) 2차로	"	"
16	02부8957	윤*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09-16 09:38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새IC) 2차로	"	"
17	49부1279	신*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09-16 14:17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 양로) 1차로	"	"
18	02오7854	황*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09-17 15:16	중랑03_망우리고개 1차로	"	"
19	36도2373	우*덕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09-17 12:51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1차로	"	"
20	47너8070	양*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09-17 17:21	서대문01_통일로(산골고 개) 1차로	"	"
21	90라7192	최*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09-17 13:4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녹양LPG충전소)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22	38서9258	정*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09-18 17:46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화도방면 1차로	"	"
23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3-09-20 13:39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3차로	"	"
24	04너7024	해*에이치아이에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09-20 15:02	서초03_사당IC주도로 1차로	"	"
25	03버6346	이*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09-21 16:06	노원02_덕릉로(당고개) 2차로	"	"
26	51부8857	김*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09-21 17:30	마포01_강변북로(서울) 1차로	"	"
27	서울82루8868	㈜*길전력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3-09-21 15:22	도봉01_도봉로시계 4차로	"	"
28	02소8914	이*형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09-22 10:03	은평07_증산로(DMC) 2차로	"	"
29	36너9417	P*RK HYUNMIN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3-09-22 09:33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	"
30	86주1151	윤*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09-23 06:32	동대문01_회기역 1차로	"	"
31	80라4856	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09-27 19:28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	"
32	02도1970	현*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3-09-28 16:02	인천광역시 운현사거리 1차로	"	"
33	06라4798	㈜*에스브이테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09-28 14:34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142-2 오산방면 3차로	"	"
34	38다5060	박*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09-28 14:15	서대문01_통일로(산골고 개) 2차로	"	"
35	서울39더6532	㈜*스트필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3-09-28 17:49	마포01_강변북로(서울) 5차로	"	"
36	01누7074	강*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09-29 14:22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37	02너8515	송*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09-29 22:12	강남03_동호대교남단(논 현로) 2차로	"	"
38	04고6363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09-29 12:52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 길) 3차로	"	"
39	31라1727	(사)*국고령천화산 업진흥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09-29 14:08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3차로	"	"
40	52고8580	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09-29 15:36	경기도 하남시 은고개약수터 광주방면 1차로	"	"
41	52오9544	임*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09-29 20:09	금천02_서부간선도로(성 산) 2차로	"	"
42	70도5219	주-*리에프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3-09-29 19:21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	"
43	70여1538	김*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09-29 10:12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1차로	"	"
44	90루6225	박*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09-29 11:21	구로06_개봉교후방 1차로	"	"
45	02로2473	윤*덕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09-30 14:26	금천07_호암로 1차로	"	"
46	34서8825	이*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09-30 18:45	금천01_가마산로 1차로	"	"
47	53서1608	정*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09-30 18:13	은평05_신사동고개(가좌 로) 2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3년 11월 30일(목)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
(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장재희(Tel 02-2133-3664)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 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접수 방법 가.핸드폰(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나.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대기정책과 다.이메일(smalleyesj@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2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
042451532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15가길 12 와이엔비 30□호 (화곡동 355-31)	상하수도 요금	' 22. 4월 외 8건	9회	1,537,42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45길 32, 제이와이펠리스 제3층 제30□호 (강서구 화곡동 867-20, 867-43)	강□범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화로264번길 50, B동 82□호 (배곧동, 배곧해리움어반크로스2차	1,537,420원	2023년 10월 6일

4. 공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16. (15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3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3. 11. 02. ~ 2023. 11. 16.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8432690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200, 101동 1909호 (창동 ,금용아파트)	상하수도요금	2022. 09. ~ 2023. 07.	6	401,76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200 101동 1909호 (창동 창동금용아파트) (고유번호 1160-1996-557877)	김상우	901028-1*****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200, 101동 1909호 (창동, 금용아파트)	401,760	2023. 9. 27.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도지형(☎02-3146-33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4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16.(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 금액	주차 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2건																
1	20221041	02구4183	그랜저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 0120230925002 313	신설동	0000:25	2023-08-18	17:55	2023-08-18	18:20	600	600	0	백0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주소불명	2023-11-10
2	20221004	110하8594	모닝	0000473392142 0120230925002 634	수서역	0000:42	2023-08-18	17:46	2023-08-18	18:28	1,400	1,400	0	00000 모빌리티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동평면 테크로137	이사불명	2023-11-1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47호

마포구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 관광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 제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에 따라 마포구 시티투어버스 노선 한정면허 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① 운영계획

- 운행방식 :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 운행코스를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버스를 자유롭게 탑승·하차하는 방식
- 운영(면허)기간 : 지정된 운행개시일로부터 3년
- 운행횟수 : 1일 20회(운행시간 10:00~21:00, 배차간격 30분 내외, 소요시간 90분 내외)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운행 횟수는 추후 조정 가능
- 운행대수 : 중형버스 3대 이상 ※15인승 이상, 예비차량 1대 별도
 - 차량 색상, 내·외장 등은 마포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원사항
 - 지원내용 : 마포구 차원의 홍보·마케팅 협력 ※ 시·구비 보조금 등 재정지원 없음
 - 운송수익 : 전액 사업자 귀속으로 함
 - ※광고권 : 마포구 귀속(시티투어버스 내·외부 및 지정정류소, 매표·안내 시설물 등)
- 운행노선 ※아래 노선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업체에서 조정안 제시 가능

①R2(홍대건교싶은거리) → ②경의선숲길공원(연트럴파크) → ③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 → ④망원&월드컵시장(망리단길) → ⑤서울월드컵경기장(마포농수산물시장) → ⑥난지천공원 → ⑦메타세쿼이아길(월드컵공원) → ⑧난지한강공원 → ⑨망원한강공원(서울함공원) → ⑩서울양화나루와 잠두봉유적 → ⑪마포새빛문화숲 → ⑫마포용강맛깨비길 → ⑬도화갈매기골목(공덕역) → ⑭경의선숲길공원(염리동) → ⑮R6(레드로드광장, 상수역) → ⑯R4(홍대축제거리)

○ 서비스수준

- 다국어(한·영·중·일) 안내 서비스(영상·음성) 및 표기
- 승차권 매표, 교통·신용카드 요금결제시스템 구비
- 차량 내부 편의시설(홍보물 거치대, 휴대용 IT기기 충전시설, 휠체어 리프트, 소화기 등) 설치
- 정류소, 매표·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② 신청 자격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고 있거나 지정된 운행개시일까지 구비가 가능한 자
- 공고일 현재 신청인이 법인이면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이면 주민등록법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 지정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접수 방법 및 신청 구비 서류

- 공고(접수) 기간 : 2023.11. 2.(목) ~ 11.13.(월)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5층(한국프레스센터) 관광산업과 시티투어버스 담당자 앞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발표 PT 자료 원본 usb 1개, PT 자료 제본 10부 별도
 -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사무실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운행 노선도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서류 1부(기존법인에 한함)
 - 서약서 **【서식 3】**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1부 **【서식 4】**

④ 선정방법

- 관계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허기준 적합 여부, 사업수행능력 보유 여부, 사업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적격 사업자로 결정하되, 단독 응찰의 경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면 하나의 점수만 제외
 -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신청자는 제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 (PT 발표)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 개최 : ' 23. 11. 20. 예정
- 사업자 선정 결과 : ' 23. 11. 22. 개별 통보

⑤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접수된 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짐
- 차량구매 지연, 운송시설 미비 등 지정한 날짜 안에 운행을 개시하지 못할 때는 사업자 선정 취소 후 재공모 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자가 짐
- 신청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고시 공고’ 또는 서울시 시보를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관광산업과(☎02-2133-2776)로 문의

[서식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영형태:)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 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사업계획서(예시)

□ 신청업체 현황

○ 기관(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주업종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임원정수	이사: 명 감사: 명	임원현원	이사: 명 감사: 명	상 근 임직원수	임원: 명	
	직원: 명					

○ 주요연혁

연 월 일	내 역	비 고
. . .	회사설립	
	:	

○ 조직도

--

○ 관광순환버스업(시티투어버스)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 경험

업 종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역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운영실적 등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에 한하며, 사업이행실적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함

○ 경영상태

(단위: 원)

구 분	최근 연도
1. 총 자 산	
2. 총 부 채	
3. 자기자본	
4. 유동자산	
5. 유동부채	
6. 총매출액	
7. 자기자본비율(%)	
8. 유동비율(%)	

※ 최근 연도 재무제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차량도입계획

- 차량 도입계획 및 방법(예비차량 확보계획 포함)
 - 차량 대수, 차종, 확보방안 등

□ 시설확보계획

- 주사무실, 차고지, 차고 부대시설, 운영인력 편의시설, 정류소, 매표안내소 확보계획
- 운영/예약결제시스템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계획
 - 구성, 운영방안(소요예산, 보안관리, 유지보수인력 등)

□ 시티투어버스 운영계획

- 버스 운행 시간, 구체적인 운행 방안 등(시범운행계획 포함)
- 관광 안내 및 외국어 안내 서비스, 승객 편의시설 관련 내용
- 인력 배치계획 및 운영 인력 확보계획
- 운행요금 수준

- ☐ 이용객 유치계획
 - 이용객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계획

- ☐ 투자계획
 - 총 사업비 및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특별제안

[서식 3]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마포구 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 운영사업자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하면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제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법적 불이익을 포함하여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이며 선정위원회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선정노선의 운송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기관(법인)명: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4]

위임장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관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관명 (직위)		연락처	

상기 대리인에게 「마포구 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신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3. . .

신청인(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첨부서류: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4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 후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16.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2344920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487-306 101호	수도요금	2023. 8월 외 5납기	6회	311,790원	
압류 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487-306 101호	씨앤피 주식회사	680511-1***** (등기번호) 1. 1105002433424 폐문부재 2. 1105002433834 폐문부재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487-306 101호	311,790원	2023.10.6.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41271499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25-12 402호	수도요금	2023. 9월 외 8납기	9회	143,580원	
압류 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25-12 402호	김영진	960720-1***** (등기번호) 1. 1105002433425 폐문부재 2. 1105002433832 수취인불명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25-12 402호	143,580원	2023.10.6.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0391208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40-5 (지하)B03호	수도요금	2023. 8월 외 11납기	12회	261,870원	
압류 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40-5 지하	손호현	900605-1***** (등기번호 1. 1105002433592 폐문부재 2. 1105002433833 폐문부재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40-5 지하	261,870원	2023.10.1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다영(☎02-3146-36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51호

중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및 소재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3.11.2. ~ 2023.11.16.(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공사명)	예정된 처분내용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처분 근거
(주)에이치피이엔씨 (김천홍)	건축공사업 02-19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14-1, 지층(대림동)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홍천 생숙박시설 공사)	과태료 800,000원	2023.11.17.(금)	법 제99조 제3호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57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16.(15일간)
5. 납부기한 : 2023. 12. 30.
6. 유의사항
 - 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부과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 이메일 : kys82@seoul.go.kr)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반 송 내 역		부속물 비밀 구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전*진	경기도 하남시 김일순환로 140, 701동 1010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이시불명	2023-08-21	부과고지서
3	김*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70길 16-4, 1층101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3-08-21	부과고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58호
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1. 측량업 등록취소 내용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
일반측량업 (04-004068)	주수성건설 엔지니어링 (대표 임경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성수동2가, 효청빌딩)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 사업자 폐업)	2023.10.26.

2. 유의사항

- 가. 등록취소를 받은 측량업자는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나.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측량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02-2133-4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59호

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1. 측량업 등록취소 내용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
일반측량업 (02-012084)	쥬유허기술단 (대표 김석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95, 206호 (수서동, 사이룩스동관)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 법인 청산)	2023.10.26.

2. 유의사항

- 가. 등록취소를 받은 측량업자는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나.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측량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02-2133-4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63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시장

1. 승인일자: 2023. 10. 30.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 대규모시설의 설치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중앙보훈병원 (한국의료복지공단 이사장)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65,793	65,765	감 28	152,187.44	152,163.04	감 24.40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02-2133-2015)

강동구 푸른도시과(02-3425-6475)

4. 열람기간: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68호****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15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 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적음.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외부강의 신고가 운영되도록 외부강의등 관련 별표 및 신고 서식(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 신고서 정밀화 (별지 제14호 서식)

- 규칙 [별지 제14호]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사유와 활동 유형 표시란을 신설하고, 하단 작성 유의사항에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추가함

나. 오타 수정 (별표3)

- 규칙 [별표 3]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기준을 인용한 법령명 오타를 정정함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2023. 7. 26.)에 따라 기존 규칙에서 정하였던 사항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행정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333호****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사유

- 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당직 운영 기준 정립
- 나. 당직 근무자의 휴식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세부 근거 마련
- 다.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각종 문구 정비 및 현행화

2. 주요 내용

- 가. 당직근무자 대체휴무 확대 및 구체화(안 제8조)
 - － 휴무 대상 확대를 통한 당직(일·숙직) 근무자 간 형평성 제고
 - － 휴무 시간 확대 및 명확화를 통한 당직 근무자의 휴식권 보장
 - － 불가피한 업무 상황에 대한 복무 유연성 강화(제8조제2항 단서)
- 나. 조항 제목 변경을 통한 논지 강화(안 제8조)
- 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13조)
- 라. 제27조제1항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문 신설(안 제2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총무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225, FAX 02-6973-9909
- 이메일 : jjx001@sen.go.kr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붙임 1. 입법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을 “정상근무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을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로,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을 “날을”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할 수 없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을 “제1항제3호와 제5호의”로 한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당직의 구분) ① (생 략)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u>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u> 단, 학교의 경우 근무 토요일 정상근무시간은 제외한다. ③ (생 략)	제3조(당직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상근무일----- -----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생 략)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 -- 날을 ----- ----- . 다만, 당직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할 수 없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 3. (생 략)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 10. (생 략)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③ (생략)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제3호와 제5호의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 (00)	제0조 (00)	○ —

2023년 월 일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3-128호

도시관리계획(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8(2015.12.31.)호로 결정된 「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홍지동 129-11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종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	3~6	특수 도로	100	홍지동 129-11	부암동 390-1	보행자 전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8호 (2015.12.31.)	홍지
변경	소로	3	(5)	3~6	특수 도로	100	홍지동 129-11	부암동 390-1	보행자 전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8호 (2015.12.31.)	홍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3-(5)	소로3-(5)	선형변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현황 성과도에 따른 선형 변경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연번	면적 (㎡)		위치		계획내용	지정사유
	기정	변경	동명	지번		
9	194(198)	195(198)	홍지동	129-3		
10	320(331)	325(331)	홍지동	129-4	공동개발지정 368㎡	맹지, 과소필지, 부정형필지
	43	43	홍지동	129-24		

※ ()는 공부상 면적임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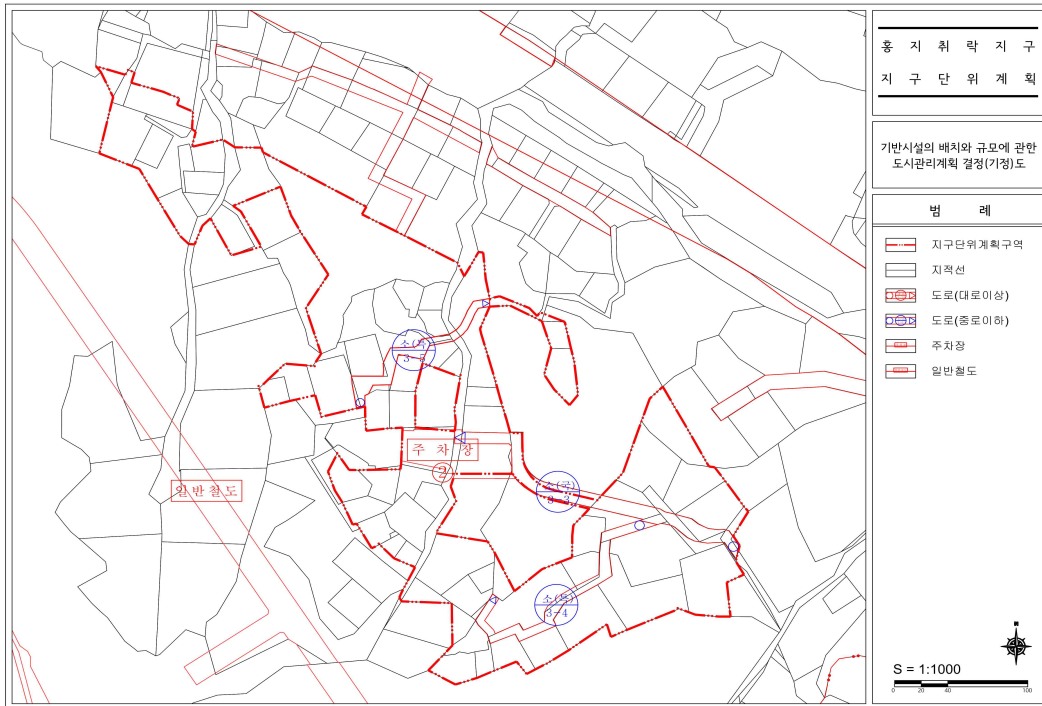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관계도면 : 불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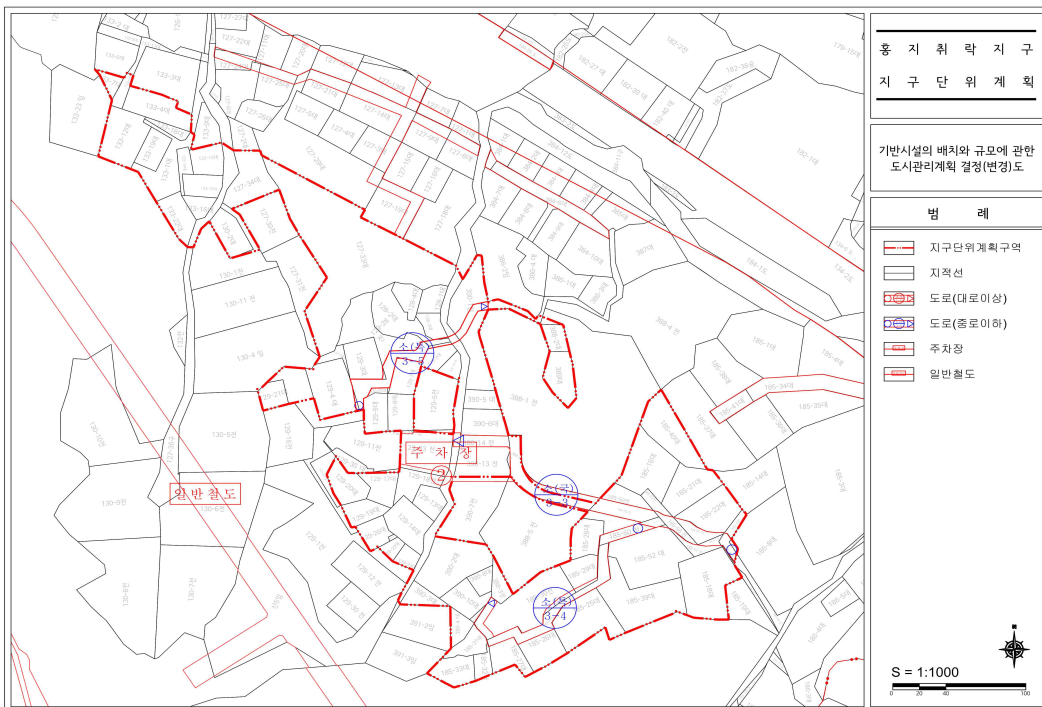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건축과(☎ 2148-2812), 도로과(☎ 2148-3165)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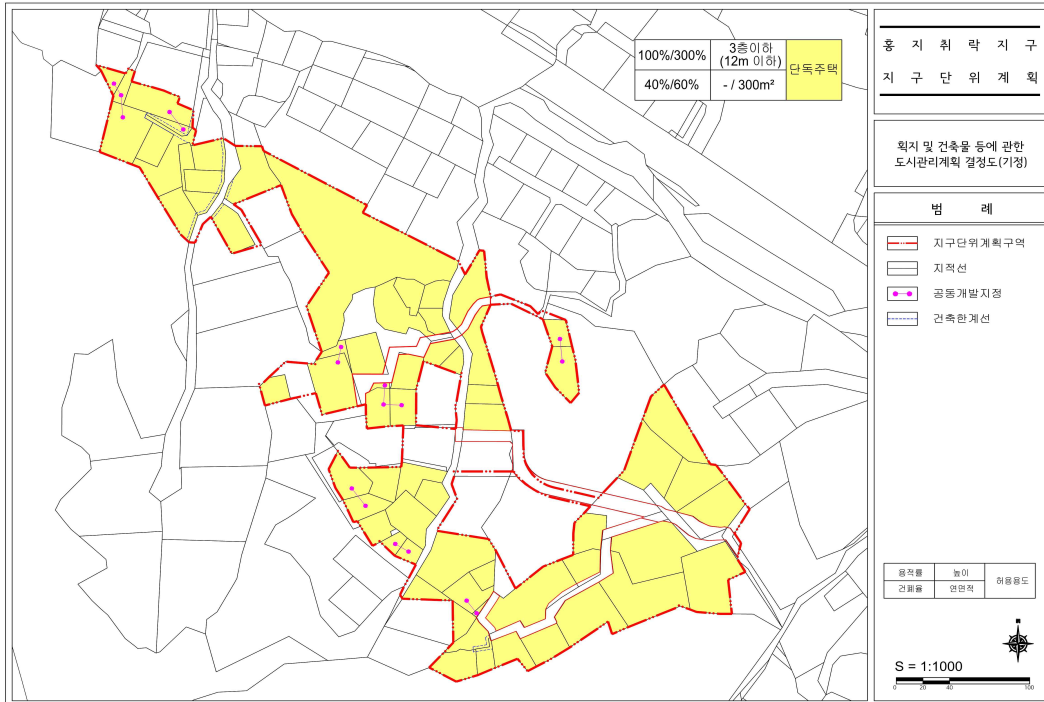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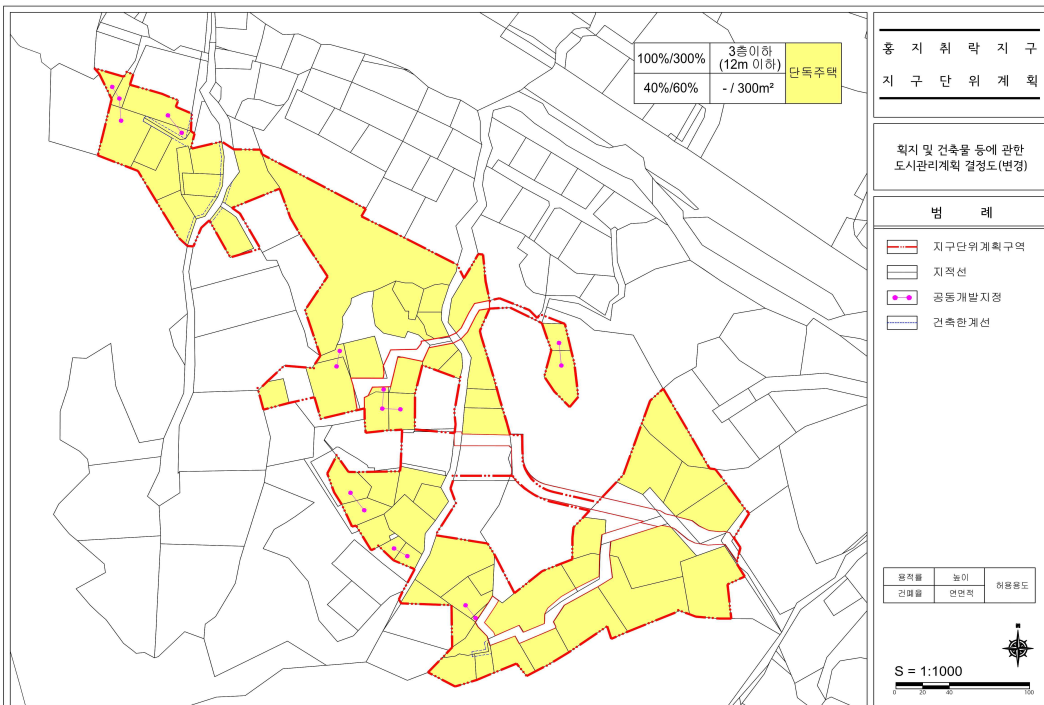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변경



◆ 중구고시 제2023-63호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서울시고시 제2022-103호(2022.03.10.)로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2022-34호(2022.4.28.)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된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변경 없음)

나. 사업개요(변경 없음)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사업	중구 신당동 850-2~신당동 36	B = 2~8m L = 110m A = 380.8㎡	서울시 고시 제2022-103호 (2022.03.10.)	궤도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2.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3.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변경 없음)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변경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로시설과(☎3396-6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1	중구 신당동	837-4	대	848.4	173.4	서울특별시
2	중구 신당동	840-5	공	488.0	168.4	중구
3	중구 신당동	36	수	22,651.0	39.0	서울특별시
계				23,987.4	380.8	

◆ 강남구고시 제2023-189호

비관리청 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항을 승인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등 의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강 남 구 청 장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2공구) 우선 시공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현대자동차(주) 외 2개사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3. 하천공사의 목적
 - 봉은교 좌회전차로 확장(교차로 구간 교통개선)
 - 봉은교 중앙분리대 철거 및 포장공사 시행
4. 하천공사의 위치: 봉은교
5. 하천공사의 기간
 - 당초 : 2023. 9. 21. ~ 2023. 10. 31.
 - 변경 : 2023. 9. 21. ~ 2023. 11. 30.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별도 붙임
7. 관련도면 및 서류는 강남구청 치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 하천관리팀(☎02-3423-6606)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하천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illegible]

◆ 송파구고시 제2023-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198호(1971.4.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9-10호(2019.1.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0-133호(2020.12.3.)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15호(2021.6.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송파구 공고 제2023-1701(2023.10.5.)호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한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3년 11월 2일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사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37-16번지 일원 [변경없음]
(송파구 방이동 437-16번지 외 12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노선명	구분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대로 3-69	결정	25~36	5,973	150,148	송파구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중2-134)	일반 도로	-	건고198 (1971.4.7)	-
	인가	2.5~8.4	170	820	송파구 방이동 437-16	송파구 방이동 436-56	-	-	-	-
중로 1-A	결정	23.5	36.4	1,024	서울시계 방이동 443-28	방이동 437-16	일반 도로	-	송파구고시 제2019-10호 (2019.1.17)	-
	인가	23.5	36.4	1,024	서울시계 방이동 443-28	방이동 437-16	-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 2020.12.3. ~ 2023.6.30.

○ 변경 : 2020.12.3. ~ 2024.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토지조서 변동 없음)

7) 공공시설(도로)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 구간에 대하여는 시설물 준공 후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송파구)에 무상귀속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로과(신관 7층)(☎02-2147-3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중랑구공고 제2023-15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67호(1978.09.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0-51호(2020.05.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중랑구 고시 제2022-123호(2022.11.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면목동 210~209간 도로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179 (신내동 662)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면목동 210 ~ 209간 도로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10 ~209간	도로개설 폭 6~8m, 연장 70m	2020.05.28. ~ 2023.11.02.

라. 위치도



◆ 중랑구공고 제2023-15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33호(1998.12.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67호(2019.08.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중랑구 고시 제2022-124호(2022.11.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 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중화동 286-39 ~ 103-2간 도로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중랑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179 (신내동 662)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화동 286-39 ~ 103-2간 도로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6-39 ~ 103-2간	도로확장 폭 3~6m, 연장 85m	2019.08.08. ~ 2023.11.02.

라. 위치도



◆ 강북구공고 제2023-136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인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3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강 북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에 사업추진이 편중됨에 따라,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투기방지대책을 도입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둠

2. 개발행위제한 개요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일: 행위허가 제한의 고시가 있는 날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간연장 가능)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면적 17,716㎡)

라.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 토지의 분할

-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마. 제한 예외사항

-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3.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우리구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2023. 11. 1. ~ 2023. 11. 15.(09:00 ~ 18:00)

나. 열람장소 : 강북구청 5층 주거정비과(☎02-901-2554)

다.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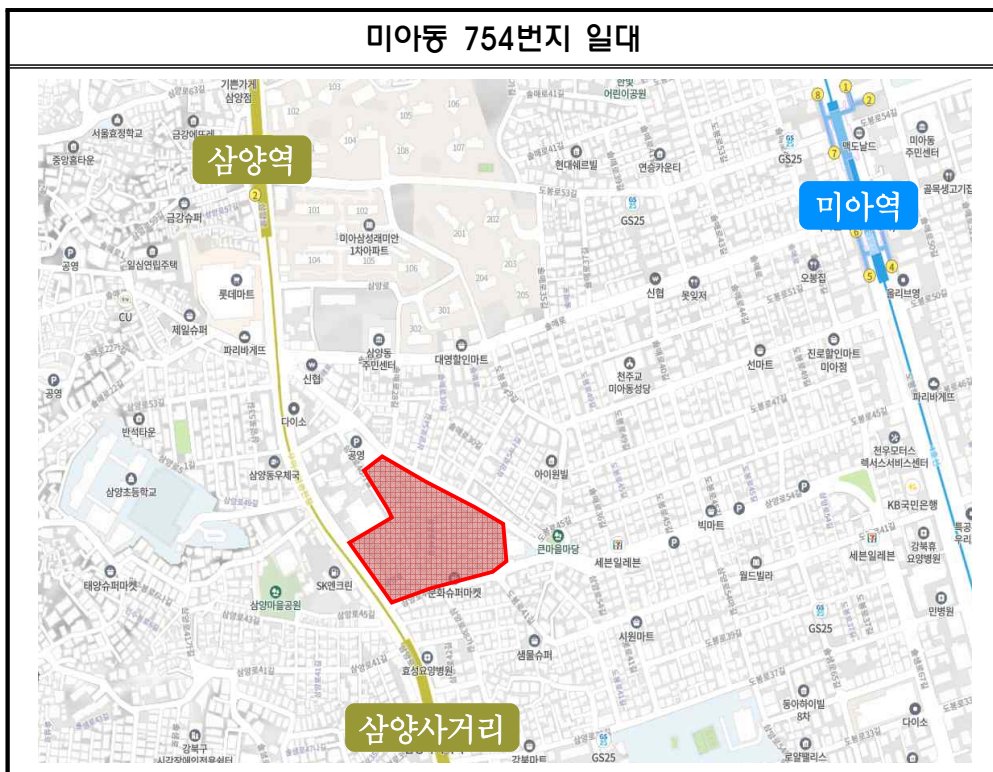
라.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강북구청 5층 주거정비과

－ 우편 제출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5층 강북구청 주거정비과(공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출 : lucymelody@gangbuk.go.kr

마. 위 치 도



※ 본 도면은 개략적인 위치 파악을 위한 참고용임

◆ 은평구공고 제2023-1803호

도시계획시설(서오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03호(2004.4.1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2-71호(2022.2.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오릉근린공원에 대하여 갈현1지구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서오릉근린공원

나.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382 일대

다. 면 적 : 58,509.5㎡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의 내용

- 서오릉 근린공원(변경) 총괄

- 1) 부지면적(총괄) : 58,059.5㎡
- 2) 면적변경() : 14,253.9㎡ → 13,452.73㎡

- 갈현 1지구(변경) 세부

- 1) 기반시설(도로) : 639.72㎡ → 1,046.71㎡
- 2) 기반시설(광장) : 1,017.56㎡ → 667.44㎡
- 3) 조경시설 : 889.98㎡ → 0㎡
- 4) 유희시설 : 0㎡ → 181.52㎡
- 5) 휴양시설 : 1,740.91㎡ → 206.62㎡
- 6) 운동시설 : 1,413.72㎡ → 2,006.53㎡
- 7) 편익시설 : 0㎡ → 130.98㎡
- 8) 관리시설 : 0㎡ → 660.92㎡
- 9) 녹지 및 기타 : 7,531.11㎡ → 8,332.28㎡

※ 세부조서 및 도면 별첨 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사.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오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서오릉 근린공원 총괄표

구분	기정(서오릉근린공원)						변경(서오릉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8,509.50	14,253.90	3	351.26	351.26	56	58,509.50	13,452.73	5	400.36	400.36	84	시설면적 감)801.17㎡
소계	58,509.50	14,253.90	3	351.26	351.26	56	58,509.50	13,452.73	5	400.36	400.36	84	시설면적 감)801.17㎡
탐골지구	21,426.70	6,893.13	2	328.46	328.46	36	21,426.70	6,893.13	2	328.46	328.46	36	
방아다리지구	12,521.20	1,179.28	1	22.80	22.80	4	12,521.20	1,179.28	1	22.80	22.80	4	
갈현3지구	278.00	-				-	278.00	-				-	
갈현2지구	11,050.60	479.60				6	11,050.60	479.60				6	
갈현1지구	13,233.00	5,701.89				10	13,233.00	4,900.72	2	49.10	49.10	38	시설면적 감)801.17㎡
시설지구 외													
시설물 (법정40%)		24.36%						22.99%					
건폐율 (법정15%)		0.60%						0.68%					
특정시설율 (법정20%)		10.56%						15.60%					

나. 시설별 총괄표(시설지구)

구분		기정(서오릉근린공원)						변경(서오릉근린공원)						비고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시설면적 (㎡)	등수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등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반 시설	계	14,253.90	3	351.26	351.26	56	13,452.73	5	400.36	400.36	84	감 801.17㎡		
	소계	6,978.57				13	7,035.44				4	증 56.87㎡		
	도로	5,572.55					5,979.54				-	증 406.99㎡		
	광장	1,406.02				13	1,055.90				4	감 350.12㎡		
조경시설		1,707.68				5	817.70				5	감 889.98㎡		
휴양시설		2,109.45				12	575.16				22	감 1,534.29㎡		
유흥시설		-				-	181.52				3	증 181.52㎡		
운동시설		1,505.80				7	2,098.61				23	증 592.81㎡		
교양시설		1,551.60	1	177.66	177.66	7	1,551.60	1	177.66	177.66	7			
편익시설		250.00	1	22.80	22.80	-	380.98	2	55.10	55.10	8	증 130.98㎡		
관리시설		150.80	1	150.80	150.80	-	811.72	2	167.60	167.60	-	증 660.92㎡		
녹지 및 기타		-				12					12			

다. <변경> 지구별 세부조서
1-1. 서오릉 근린공원 탐골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탐골지구)						변 경 (탐골지구)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1,426.70	6,893.13	2	328.46	328.46	36	21,426.70	6,893.13	2	328.46	328.46	36	
기 단 기 시 설	소 계	3,781.10	3,781.10				-	3,781.10	3,781.10				-	
	도 로	3,626.64	3,626.64				-	3,626.64	3,626.64				-	
	광 장	154.46	154.46				-	154.46	154.46				-	
조경시설		817.70	817.70				5	817.70	817.70				5	
휴양시설		314.90	314.90				9	314.90	314.90				9	
운동시설		49.83	49.83				5	49.83	49.83				5	
교양시설		1,551.60	1,551.60	1	177.66	177.66	7	1,551.60	1,551.60	1	177.66	177.66	7	
편익시설		227.20	227.20				-	227.20	227.20				-	
관리시설		150.80	150.80	1	150.80	150.80	-	150.80	150.80	1	150.80	150.80	-	
녹지 및 기타		14,533.57					10	14,533.57					10	

1-2. 서오릉 근린공원 탐פל지구 시설조서

구 분		기 정 (탐골지구)										변 경 (탐골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1,426.70	6,893.13	1	328.46	328.46	36			21,426.70	6,893.13	1	328.46	328.46	36					
기반시설	소 계			3,781.10	3,781.10				-			3,781.10	3,781.10				-					
	도 로			3626.64	3626.64				-			3626.64	3626.64				-					
	광 장	가	-	154.46	154.46				-	가	-	154.46	154.46				-					
		가-1	진관동 387	118.56	118.56				-	가-1	진관동 387	118.56	118.56				-					
		가-2	진관동 산62-1	35.90	35.90				-	가-2	진관동 산62-1	35.90	35.90				-					
소 계				817.70	817.70				5			817.70	817.70				5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 (자생초화원)	나	진관동 387-3	719.00	719.00				5	나	진관동 387-3	719.00	719.00				5					
	못	다	진관동 산63-4	98.70	98.70					다	진관동 산63-4	98.70	98.70									
소 계				314.90	314.90				9			314.90	314.90				9					
휴양시설	휴게소	라	-	314.90	314.90				9	라	-	314.90	314.90				9					
		라-1	진관동 387	22.20	22.20				1	라-1	진관동 387	22.20	22.20				1					
		라-2	진관동 387	22.20	22.20				1	라-2	진관동 387	22.20	22.20				1					
		라-3	진관동 387	22.20	22.20				1	라-3	진관동 387	22.20	22.20				1					
		라-4	진관동 390	45.40	45.40				1	라-4	진관동 390	45.40	45.40				1					
		라-5	진관동 390	24.20	24.20				1	라-5	진관동 390	24.20	24.20				1					
		라-6	진관동 388	38.00	38.00				1	라-6	진관동 388	38.00	38.00				1					
소 계				26.00	26.00				2	라-7	진관동 387-3	26.00	26.00				2					

구 분		기 정 (탑골지구)										변 경 (탑골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다면적 (㎡)	연면적 (㎡)							바다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라-8	라-8	진관동 388-5	29.70	29.70					-	라-8	진관동 388-5	29.70	29.70					-			
		라-9	진관동 산61	72.50	72.50					1	라-9	진관동 산61	72.50	72.50					1			
		라-10	진관동 산61	12.50	12.50					-	라-10	진관동 산61	12.50	12.50					-			
	소 계			49.83	49.83					5			49.83	49.83					5			
		마	-	49.83	49.83					5	마	-	49.83	49.83					5			
		마-1	진관동 388-5	19.35	19.35					2	마-1	진관동 388-5	19.35	19.35					2			
		마-2	진관동 388-5	14.57	14.57					1	마-2	진관동 388-5	14.57	14.57					1			
채력단련장	마-3	진관동 388-5	10.30	10.30					1	마-3	진관동 388-5	10.30	10.30					1				
	마-4	진관동 388-5	5.61	5.61					1	마-4	진관동 388-5	5.61	5.61					1				
	소 계			1,551.60	1,551.60	1	1	177.66	177.66	7			1,551.60	1,551.60	1	1	177.66	177.66	7			
교양시설	식물원 (자연학습장)	바	진관동 390	1,264.60	1,264.60					7	바	진관동 390	1,264.60	1,264.60					7			
		사	진관동 산63-4	287.00	287.00		1	177.66	177.66	-	사	진관동 산63-4	287.00	287.00		1	177.66	177.66	-			
	소 계			227.20	227.20					-			227.20	227.20					-			
편익시설	주차장	아	-	227.20	227.20					-	아	-	227.20	227.20					-			
		아-1	진관동 387	98.60	98.60					-	아-1	진관동 387	98.60	98.60					-			
		아-2	진관동 387-3	59.10	59.10					-	아-2	진관동 387-3	59.10	59.10					-			
		아-3	진관동 388	69.50	69.50					-	아-3	진관동 388	69.50	69.50					-			
관리시설	소 계			150.80	150.80	1	1	150.80	150.80	-			150.80	150.80	1	1	150.80	150.80	-			

구분		기정 (탑골지구)										변경 (탑골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	연면적 (㎡)								비대면적 (㎡)	연면적 (㎡)				
녹지 및 기타	관리사무소	1	진관동 387	150.80	150.80		1	150.80	150.80	-	1	진관동 387	150.80	150.80	150.80	1	150.80	150.80	-			
	소계			14,533.57						10			14,533.57						10			
	녹지			14,533.57						10			14,533.57						10			

1-3. 서오릉 근린공원 탐골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261.30	3,626.64				
변경					1,261.30	3,626.64				
당초	소로	소 계			360.98	1,901.33				
변경					360.98	1,901.33				
당초		3류	3-1	6.0	20.69	126.39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1	
변경		3류	3-1	6.0	20.69	126.39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1	
당초		3류	3-2	4.0-7.8	257.64	1,372.5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류	3-2	4.0-7.8	257.64	1,372.5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류	3-3	4.0-14.0	21.65	102.64	진입로	소로 3-2	공원경계	
변경		3류	3-3	4.0-14.0	21.65	102.64	진입로	소로 3-2	공원경계	
당초		3류	3-3	3.8-7.0	61.00	299.7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21	
변경		3류	3-3	3.8-7.0	61.00	299.7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21	
당초	산책로	소 계			900.32	1725.31				
변경					900.32	1725.31				
당초			1	1.2-2.0	112.74	226.1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1	1.2-2.0	112.74	226.1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	1.0	31.38	32.4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변경			2	1.0	31.38	32.4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당초			3	1.5	40.30	60.88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5	
변경			3	1.5	40.30	60.88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5	
당초			4	1.5	12.51	18.83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5	
변경			4	1.5	12.51	18.83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5	
당초			5	2.5	100.52	251.54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0	
변경			5	2.5	100.52	251.54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0	
당초			6	2.0	17.66	51.14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10	
변경			6	2.0	17.66	51.14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10	
당초			7	3.0	10.50	35.27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0	
변경			7	3.0	10.50	35.27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0	
당초			8	1.5-4.0	19.51	32.89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변경			8	1.5-4.0	19.51	32.89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당초			9	1.5	26.22	45.58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9	1.5	26.22	45.58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당초			10	2.5	102.59	257.13	산책로	산책로 12	소로 3-2	
변경			10	2.5	102.59	257.13	산책로	산책로 12	소로 3-2	
당초			11	1.5-4.0	26.22	68.33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변경			11	1.5-4.0	26.22	68.33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당초			12	2.0	121.65	243.70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0	
변경			12	2.0	121.65	243.70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0	
당초			13	2.0-4.0	5.23	11.65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12	
변경			13	2.0-4.0	5.23	11.65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12	
당초			14	1.5-9.5	15.33	33.71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변경			14	1.5-9.5	15.33	33.71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당초			15	1.2	76.23	95.61	연결로	주차장 아-3	소로 3-2	
변경			15	1.2	76.23	95.61	연결로	주차장 아-3	소로 3-2	
당초			16	1.7	6.94	11.87	산책로	소로 3-2	녹지대	
변경			16	1.7	6.94	11.87	산책로	소로 3-2	녹지대	
당초			17	1.0-3.5	9.78	11.41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9	
변경			17	1.0-3.5	9.78	11.41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9	
당초			18	1.2	47.00	97.72	진입로	녹지대	산책로 16	
변경			18	1.2	47.00	97.72	진입로	녹지대	산책로 16	
당초			19	1.2	30.97	37.15	진입로	녹지대	산책로 16	
변경			19	1.2	30.97	37.15	진입로	녹지대	산책로 16	
당초			20	1.0	23.20	25.21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1	
변경			20	1.0	23.20	25.21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1	
당초			21	1.2	63.84	77.11	연결로	소로 3-4	휴게소 라-10	
변경			21	1.2	63.84	77.11	연결로	소로 3-4	휴게소 라-10	

2-1. 서오릉 근린공원 방아다리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방아다리지구)					변 경 (방아다리지구)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2,521.20	1,179.28	1.00	22.80	4	12,521.20	1,179.28	1.00	22.80	22.80	4	
기반시설	소 계	1,060.59	1,060.59		-	1,060.59	1,060.59				-	
	도로	1,060.59	1,060.59		-	1,060.59	10,60.59				-	
	광장	0	0			-	0	0			-	
휴양시설	53.64	53.64			2	53.64	53.64				2	
운동시설	42.25	42.25			2	42.25	42.25				2	
편의시설	22.80	22.80	1	22.8	-	22.80	22.80	1	22.8	22.8	-	
녹지 및 기타	11,341.92				-	11,341.92					-	

2-2. 서오릉 근린공원 방아다리지구 시설조서

구분		기 정 (방아다리지구)							변 경 (방아다리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계				12,521.20	1,179.28				4				12,521.20	1,179.28				4	
기반시설		소계		1,060.59	1,060.59				-				1,060.59	1,060.59				-	
		도로		1,060.59	1,060.59				-				1,060.59	1,060.59				-	
		광장		-	-				-				-	-				-	

구분			기정 (병아다리지구)										변경 (병아다리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시설	소계				53.64	53.64					2				53.64	53.64					2		
	휴게소	가			53.64	53.64					2	가			53.64	53.64					2		
		가-1	진관동 382-2	36.00						1	가-1	진관동 382-2	36.00	36.00							1		
		가-2	진관동 384-1	17.64						1	가-2	진관동 384-1	17.64	17.64							1		
운동시설	소계				42.25	42.25					2				42.25	42.25					2		
	체력단련장	나	진관동 382-2	42.25	42.25					2	나	진관동 382-2	42.25	42.25							2		
편익시설	소계				22.80	22.80		1	22.8	22.8	-				22.80	22.80		1	22.8	22.8	-		
	화장실	1	진관동 382-1	22.80	22.80		1	22.8	22.8	-	1	진관동 382-1	22.80	22.80			1	22.8	22.8	-			
녹지 및 기타	소계				11,341.92						-				11,341.92						-		
	녹지				11,341.92										11,341.92								

2-3. 서오릉 근린공원 방아다리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09.7	1,060.59				
변경					509.7	1,060.59				
당초	소로	소계			80.2	405.69	진입로	공원경계	화장실 1	
변경					80.2	405.69	진입로	공원경계	화장실 1	
당초		3류	3-1	2.5-4.0	65.2	291.68	진입로	공원경계	화장실 1	
변경		3류	3-1	2.5-4.0	65.2	291.68	진입로	공원경계	화장실 1	
당초		3류	3-2	7	15.0	114.01	진입로	소로 3-1	공원경계	
변경		3류	3-2	7	15.0	114.01	진입로	소로 3-1	공원경계	
당초	산책로	소 계			429.5	654.9				
변경					429.5	654.9				
당초			1	2	185	332.0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변경			1	2	185	332.0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초			2	1.2	25.9	31.69	연결로	산책로 1	체력단련장 나	
변경			2	1.2	25.9	31.69	연결로	산책로 1	체력단련장 나	
당초			3	1.2-1.5	65	89.9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변경			3	1.2-1.5	65	89.9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4	1.2	7.8	9.95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가-1	
변경			4	1.2	7.8	9.95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가-1	
당초			5	1.2	29.8	36.2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10	
변경			5	1.2	29.8	36.2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10	
당초			6	1.5	29.5	45.0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변경			6	1.5	29.5	45.0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초			7	1.5	10.6	17.52	연결로	산책로 6	산책로 6	
변경			7	1.5	10.6	17.52	연결로	산책로 6	산책로 6	
당초			8	1.0	13.4	14.3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8	1.0	13.4	14.3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1	
당초			9	1.0	17.2	18.07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1	
변경			9	1.0	17.2	18.07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1	
당초			10	1.2	37.6	48.13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가-2	
변경			10	1.2	37.6	48.13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가-2	
당초			11	1.2	7.7	11.94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가-2	
변경			11	1.2	7.7	11.94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가-2	

3-1.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3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갈현3지구)					변 경 (갈현3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통)	비대면적 (㎡)	연면적 (㎡)				동수 (통)	비대면적 (㎡)			연면적 (㎡)
합 계	278.00					-	278.00					-	
녹지 및 기타	소 계	278.00				-	278.00					-	

3-2.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3지구 시설조서

구 분		기 정 (갈현3지구)										변 경 (갈현3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	연면적 (㎡)							비대면적 (㎡)	연면적 (㎡)			
합 계				278.00						-			278.00							
		소 계			278.00					-			278.00							
녹지 및 기타		녹지		278.00									278.00							

3-3.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3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해당사항 없음									
변경										

4-1.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2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갈현2지구)					변 경 (갈현2지구)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다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다면적 (㎡)			연면적 (㎡)
합 계	11,050.60	479.60				6	11,050.60	479.60				6	
	소 계	479.60	479.60			4	479.60	479.60				4	
		도 로	245.60	245.60			-	245.60	245.60				-
기반시설	광 장	234.00	234.00			4	234.00	234.00				4	
	녹지 및 기타	10,571.00	-			2	10,571.00	-				2	

4-2.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2지구 시설조서

구분		기 정 (갈현2지구)								변 경 (갈현2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 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 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 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 물 (기)		
합 계				11,050.60	479.60					6				11,050.60	479.60					6	
소 계				479.60	479.60					4				479.60	479.60					4	
도 로				245.6	245.6					-				245.6	245.6					-	
광 장		가	갈현동 산49-22	234.00	234.00					4	가	갈현동 산49-22	234.00	234.00						4	
소 계				10,571.00	0.00					2				10,571.00	0.00					2	
특 지				10,571.00	0.00					2				10,571.00	0.00					2	

4-3.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2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38.00	245.60				
변경					138.00	245.60				
당초	산책로	소 계			138.00	245.60				
변경					138.00	245.60				
당초			1	1.2	38.00	45.6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1	1.2	38.00	45.6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	2.0	100.00	200.00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	
변경			2	2.0	100.00	200.00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	

5-1.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1지구 총괄표

구 분	기정(갈현1지구)						변경(갈현1지구)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3,233.00	5,701.89				10	13,233.00	4,900.72	2	49.1	49.1	38	
기반시설	소 계	1,657.28				9	1,714.15	1,714.15				-	
	도 로	639.72	639.72				1,046.71	1,046.71					
	광 장	1,017.56	1,017.56			9	667.44	667.44				-	
조경시설	889.98	889.98				-	0	0					
휴양시설	1,740.91	1,740.91				1	206.62	206.62				11	
유흥시설	-	-				-	181.52	181.52				3	
운동시설	1,413.72	1,413.72				-	2,006.53	2,006.53				16	
편익시설	-	-				-	130.98	130.98	1	32.3	32.3	8	
관리시설	-	-				-	660.92	660.92	1	16.8	16.8	-	
복지 및 기타	7,531.11					-	8,332.28					-	

5-2.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1지구 시설조서

구 분		기 정 (갈현1지구)										변 경 (갈현1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3,233.00	5,701.89					10			13,233.00	4,900.72		2	49.1	49.1	38			
소 계				1,657.28	1,657.28					9			1,714.15	1,714.15					-			
도 로				639.72	639.72							갈현동 228-61, 228-100, 산 92-4	1,046.71	1,046.71								
기반시설		가		1,017.56	1,017.56					9	가		667.44	667.44					-			
			광 장	가-1	갈현동 228-61	428.70	428.70				1	가-1	갈현동 228-61, 산 92-4	336.34	336.34							
				가-2	갈현동 228-100	588.86	588.86				8	가-2	갈현동 228-61	331.1	331.1							
소 계				889.98	889.98					-			0	0								
조경시설		나	갈현동 228-61	37.88	37.88																	
			조화원	다	갈현동 228-61	852.10	852.10															
				소 계		1740.91	1740.91				1				206.62	206.62					11	
휴양시설		휴게데크	라	갈현동 228-16	92.10	92.10				1												
		휴게소	마	갈현동 228-100	1,648.81	1,648.81																
		황토길										나	갈현동 228-61, 228-100	116.35	116.35							
		파고라										①	갈현동 228-61	47.12	47.12					2		
		등의자										②	갈현동 228-61, 228-100	43.15	43.15					9		

구 분		기 정 (갈현1지구)							변 경 (갈현1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유형시설	소 계			-	-					-		181.52	181.52						3
	어린이놀이터										다	갈현동 228-61	181.52	181.52					3
운동시설	소 계			1,413.72	1,413.72					-		2,006.53	2,006.53						16
											라		262.2	262.2					16
											라-1	갈현동 228-61	183.21	183.21					11
	체력단련장										라-2	갈현동 228-61, 228-100	78.99	78.99					5
편익시설	테니스장	바	갈현동 228-100	1,413.72	1,413.72						마	갈현동 228-100	1,744.33	1,744.33					
	소 계			-	-					-		130.98	130.98		1	32.3	32.3	8	
	화장실										1	갈현동 228-61	37.5	37.5	R/C	1	32.3	32.3	
	선수대기실										③	갈현동 228-100	91.39	91.39				6	
	세족장										④	갈현동 228-61	0.91	0.91				1	
관리시설	출문지킴이기										⑤	갈현동 228-100	1.18	1.18				1	
	소 계			-	-					-		660.92	660.92		1	16.8	16.8	-	
	관리사무소										2	갈현동 228-61	18.9	18.9	R/C	1	16.8	16.8	
관리시설	배수시설										⑥	갈현동 228-61, 228-100, 산 92-4	426.5	4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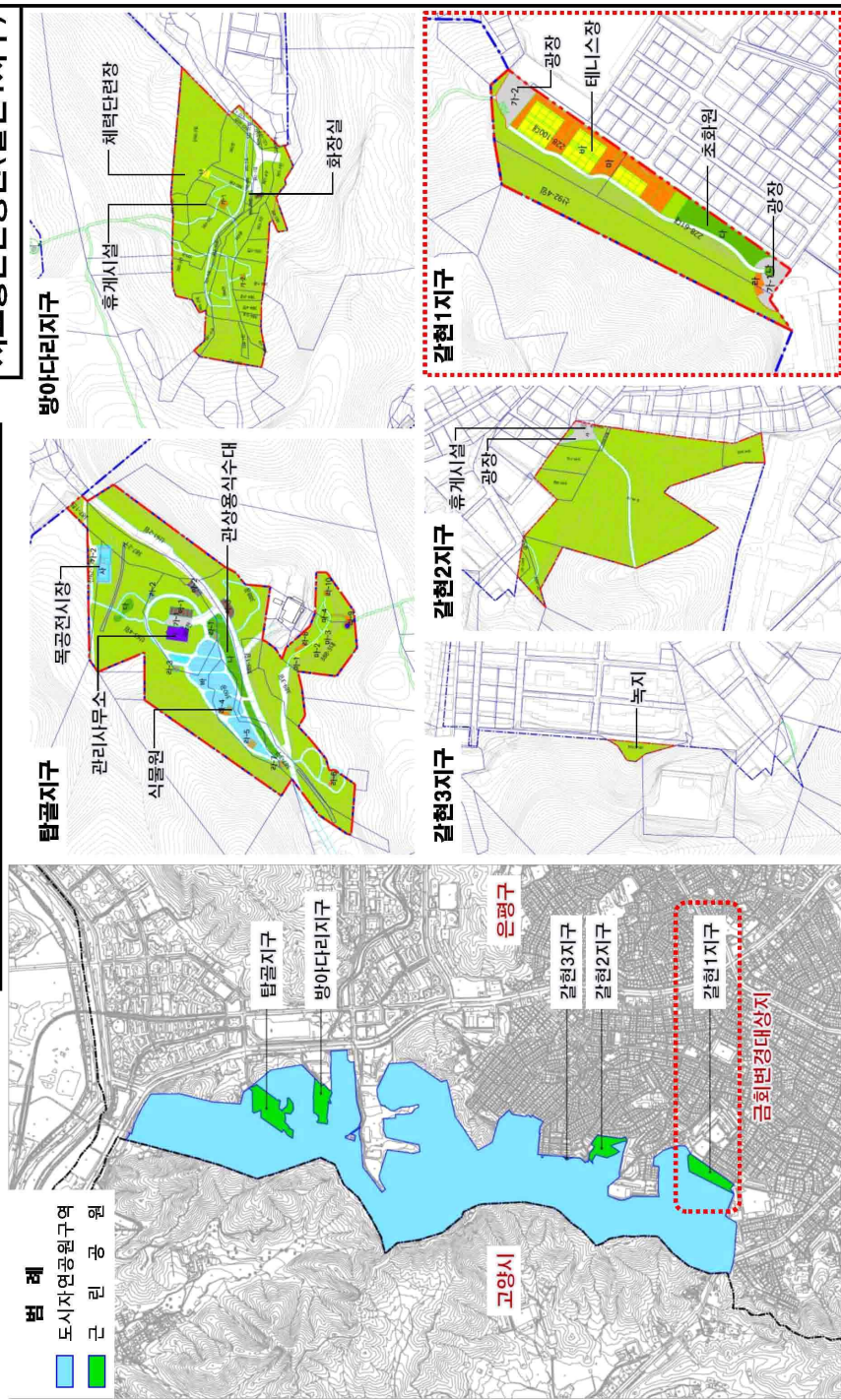
구 분		기 정 (갈현1지구)										변 경 (갈현1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영역 및 헬스 클럽이	영역 및 헬스										⑦	갈현동 228-61, 228-100	213.23	213.23							
	클럽이										⑧	갈현동228-100	2.29	2.29							
복지 및 기타	소 계			7,531.11						-			8,332.28						-		
	복지			7,531.11									8,332.28								

5-3.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1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15.83	639.72				
변경					564.8	1,046.71				
당초	산책로	소 계			215.83	639.72				
변경					564.8	1,046.71				
당초			1	2.8	212.3	631.45	진입로	잔디밭 다	광장 가-2	
변경			1	1.8	210.8	591.85	진입로	광장 가-2	흙먼지떨이기	
당초			2	2.0~2.7	3.53	8.27	산책로	공원 경계	배드민턴 바	
변경			2	1.5	106.7	199.13	산책로	체력단련장 라-1	체력단련장 라-2	
당초			3	-	-	-	-	-	-	
변경			3	1.2	4.6	5.4	산책로	흙먼지떨이기	기존산책로	
당초			4	-	-	-	-	-	-	
변경			4	0.7~1.5	242.7	250.33	산책로	광장 가-1	기존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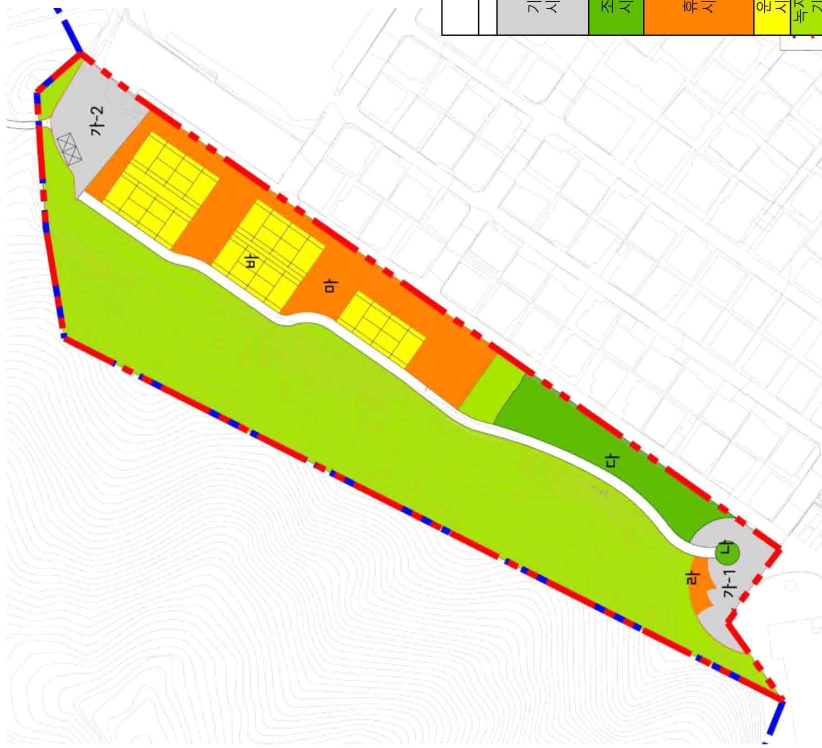
위치도(지구별)

서오릉근린공원(갈현1지구)



조성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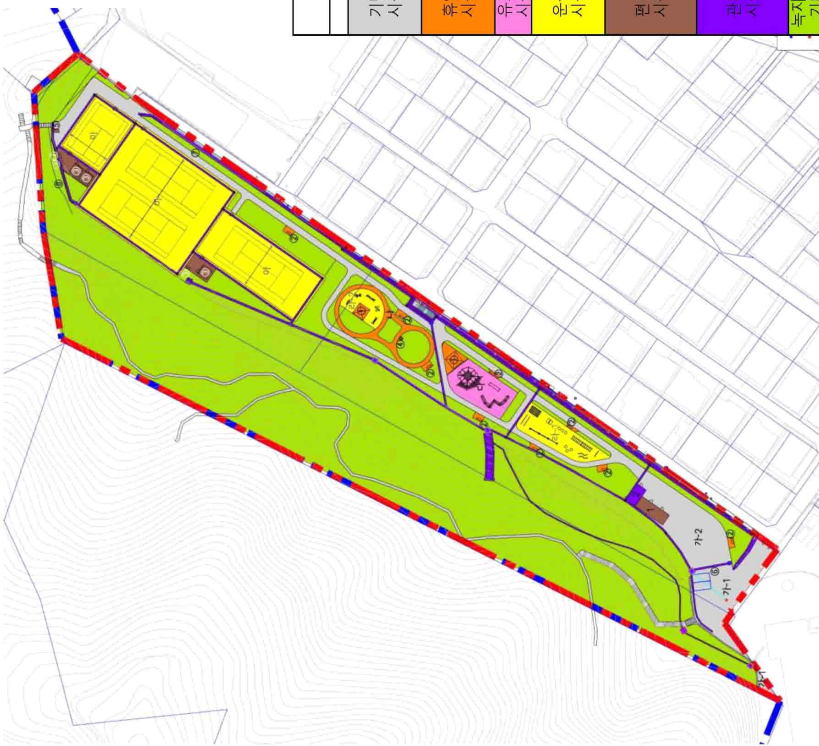
서오릉근린공원(갈현1지구)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물 (기)	비고
기반 시설	합계	13,233.00	13,233.00	-	-	-	-	10
	소계	1,657.28	1,657.28	-	-	-	-	-
	도로	639.72	639.72	-	-	-	-	-
	광장	1,017.56	1,017.56	-	-	-	-	9
조경 시설	가-1	428.70	428.70	-	-	-	-	1
	가-2	588.86	588.86	-	-	-	-	8
	소계	889.98	889.98	-	-	-	-	-
	잔디밭	37.88	37.88	-	-	-	-	-
휴양 시설	다	852.10	852.10	-	-	-	-	-
	소계	1,740.91	1,740.91	-	-	-	-	-
	라-1	1,740.91	1,740.91	-	-	-	-	1
	라-2	92.10	92.10	-	-	-	-	1
운동 시설	파고라	1,648.81	1,648.81	-	-	-	-	-
	①	-	-	-	-	-	-	-
	②	-	-	-	-	-	-	-
	평의자	-	-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1,413.72	1,413.72	-	-	-	-	-
	테니스장	1,413.72	1,413.72	-	-	-	-	-
	소계	7,531.11	7,531.11	-	-	-	-	-
	녹지	7,531.11	7,531.11	-	-	-	-	-

조성계획도(변경)

서오릉근린공원(길현1지구)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㉔)	비고
					바닥면적	면적		
기반 시설	합계	13,233.0	4,900.72	-	49.10	49.10	38	-
	소계	1,714.15	1,714.15	-	-	-	-	-
	도로	1,046.71	1,046.71	-	-	-	-	-
휴양 시설	광장	가-1	336.34	-	-	-	-	-
	가-2	331.10	331.10	-	-	-	-	-
	소계	206.62	206.62	-	-	-	11	-
유리 시설	화톳길	나	116.35	-	-	-	-	-
	파고대	①	47.12	-	-	-	-	-
	등유지	②	43.15	-	-	-	2	-
운동 시설	소계	181.52	181.52	-	-	-	3	-
	어린이놀이터	다	181.52	-	-	-	3	-
	소계	2,006.53	2,006.53	-	-	-	16	-
편의 시설	체력단련장	라-1	183.21	-	-	-	-	-
	라-2	78.99	78.99	-	-	-	-	-
	소계	1,744.33	1,744.33	-	-	-	5	-
관리 시설	소계	1,309.8	1,309.8	-	-	-	-	-
	화장실	1	37.50	-	-	-	-	-
	신수대기실	③	91.39	-	-	-	-	-
관리 시설	세탁장	④	0.91	-	-	-	-	-
	휴먼지텔이기	⑤	1.18	-	-	-	-	-
	소계	660.92	660.92	-	-	-	-	-
관리 시설	관리사무소	2	18.90	-	-	-	-	-
	배수시설	⑥	426.50	-	-	-	-	-
	옹벽 및 웰스	⑦	213.23	-	-	-	-	-
녹지 기타	휴먼이	⑧	2.29	-	-	-	-	-
	소계	8,332.28	8,332.28	-	-	-	-	-
	녹지	8,332.28	8,332.28	-	-	-	-	-

◆ 서대문구공고 제2023-13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대문구고시 제2023-114호(2023.9.14.)로 결정된 교통시설(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최초) 작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 02-3140-80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교통시설(도로)
- 사업명칭 :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다. 사업규모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폭원(m)					
소로	2	9	국지도로	88	봉원동 45-1	신촌동 1-37	일반도로
소로	3	6	국지도로	164	신촌동 1-52	봉원동 41-6	일반도로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바.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02-3140-8020)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위치도 및 현황

○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봉원동 45-1 ~ 신촌동 1-37 구간)



위치도 및 현황

○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신촌동 1-52 ~ 봉원동 41-6 구간)



토 지 조 서

○사업명(구간) : 신촌동 근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봉원동 45-1 ~ 신촌동 1-37 구간)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폐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	봉원동	45-1	공	421	125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2	봉원동	40-21	대	1426	4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신3	정0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10		가처분	
								정0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9-21		가처분	
								정0철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33동1801호		가처분	
								정0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2		가처분	
3	봉원동	40-19	공	113	9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신3					
4	봉원동	40-17	공	15	13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신3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용	
5	신촌동	1-192	천		182	18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6	신촌동	1-115	공	30	17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7	신촌동	1-38	공	799	213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8	신촌동	1-1	공	218	112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9	신촌동	1-85	도	102	4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0	신촌동	1-142	도	231	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1	신촌동	1-37	공	508	152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사업명(구간) : 신촌동 근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신촌동 1-52 ~ 봉원동 41-6 구간)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	봉원동	41-7	전	84	8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3					미등기
2	봉원동	41-6	전	263	23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96-2					
3	봉원동	39-19	도	1	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4	봉원동	39-18	도	44	1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5	봉원동	39-14	도	133	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6	봉원동	39-20	도	68	4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7	봉원동	산2-15	임	90	82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3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용	
8	봉원동	40-15	전	211	68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3					
9	봉원동	산2-16	임	328	176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3					
10	봉원동	38-5	도	66	6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봉원동	산2-9	임	258	76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3					
12	봉원동	산2-8	임	1032	58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3					
13	봉원동	산2-23	공	22	17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3					
14	신촌동	1-52	공	1939	11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5	신촌동	1-142	도	231	188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6	신촌동	1-37	공	508	143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7	신촌동	1-85	도	102	18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8	신촌동	1-38	공	799	15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 구로구공고 제2023-2007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1653호(2023.9.7)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6차 구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0.20)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6, E-mail : kang9936201@guro.go.kr)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2	35~54 (45)	주간선 도로	4,750 (1,602)	문래동광장 (동측구역계)	오류동광장 (서측구역계)	일반 도로	건고64호 (78.3.29)	경인로
변경	광로	3	2	35~54 (45)	주간선 도로	4,750 (1,602)	문래동광장 (동측구역계)	오류동광장 (서측구역계)	일반 도로	건고64호 (78.3.29)	일부구간 폭원변경 ※ 결정도 참조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39	8~11	국지 도로	83 (83)	구로동 600-57	구로동 589-12	일반 도로	-	금회신설

※ 폭원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변경조서에서 표기한 도로 외 기타 도로 변경사항 없음

■ 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2	광로 3-2	- 도로폭원 변경 - 일부구간 폭원변경	대상지 북측 경인로변 차도, 식수대 및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한 광로 3-2 일부 구간 확폭(5~6m)
-	소로 1-39	- 도로 신설 - 폭원 8~11m - 연장 83m	기결정되어 있던 대상지 주변 소로 1-34 및 1-35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실효(서울시고시 제2020-268호) 및 광로 3-2가 변경고시(구로구고시 제2023-112호)에 따라 대상지 남측 도로 신설을 통해 경인로를 통한 진출입을 도모하기 위해 폭원 8~11m로 도로 신설

(2) 철도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최소·최대개발규모(미적용)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변경	
가구	A1, A2, A3, A4, A5 B1, B2, B3, B4, B5, B6, B7, B8, B9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D1, D2, D3, D4, D5, D6 E1, E2, E3, E4	A1, A2, A3, A4, A5 B1, B2, B3, B4, B5, B6, B7, B8, B9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D1, D2, D3, D4, D5, D6 E1, E2, E3, E4	- 간선가로를 기준으로 5개 지역으로 구분 - C5가구 도로 신설에 따른 가구선 변경 ※ 결정도 참조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C5	1		589-12대, 589-13대, 596-2도, 600-12대 600-14대, 600-57대, 600-59대, 600-60대 600-61대, 600-73대, 602-5대, 602-6주	4,518.6	획지선지정	-
변경		1	가	589-12대, 589-13대, 596-2도, 600-60대, 600-73대, 602-5대, 602-6주	3,435.5	획지선지정	-
			나	600-14대, 600-59대, 600-61대	1,066.0	획지선지정	-

※ 변경조서에서 표기한 획지 외 기타 획지 변경사항 없음

(3)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획지간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 : 변경없음

다.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변경

(1)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폭 20m 이상)	경인로변	3m	3~11m	광로 3-2 변경(구로구고시 제2023-112호) 반영
		십자로변	3m	3m	-
	이면도로변		1~2m	1~2m	-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		2~3m	2~3m	보차혼용통로로 활용
	대형필지		6~8m	6~8m	가로공원, 수림대로 활용
	개발원로 된 도로변(아파트 단지 등)		1~3m	1~3m	

※ 개발원로 된 도로변(아파트 단지 등)에서 동일 가구내 상이한 건축한계선 폭원 일부 조정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변경
 (1) 차량 출입불허구간 : 변경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적용대상
기정	전체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전체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 결정도 참조
	C5-1 획지		

－ 차량 출입불허구간 결정(변경) 사유

구분	적용대상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전체구역	• 차량출입불허구간	• C5-1 획지의 획지계획에 따른 차량 출입불허구간 일부 위치 조정
	C5-1 획지		

- (2) 공동 주차출입구 : 변경없음

- 다.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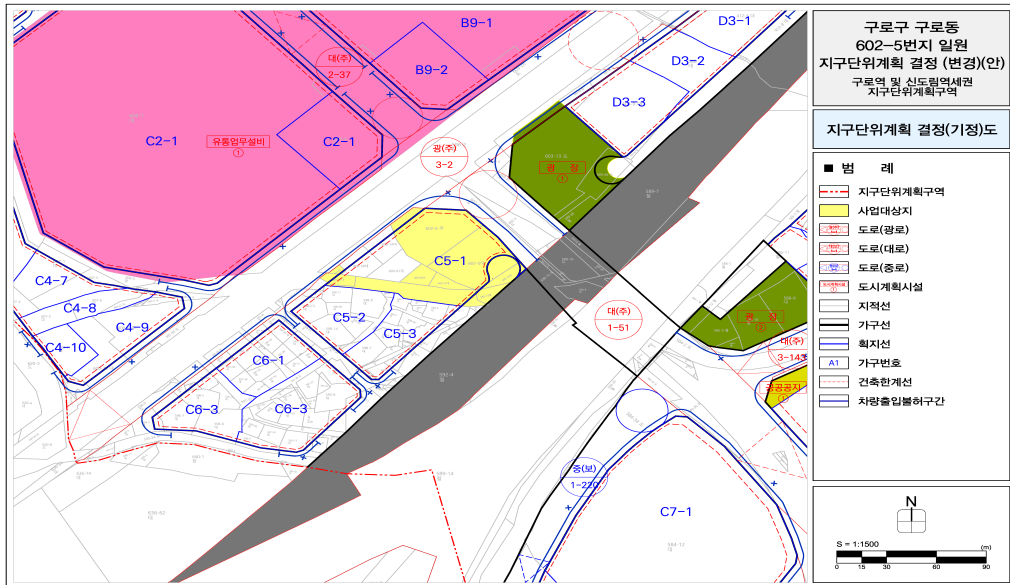
4.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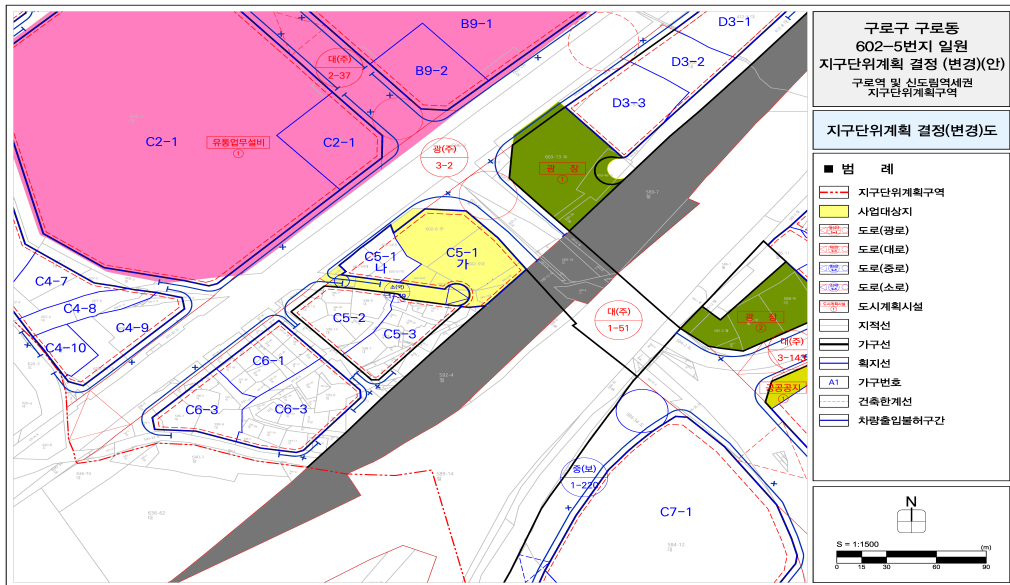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⑤ 지구단위계획 결정(중합)

■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다. 관계도서 및 계획설명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23-172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23-104호(2023.10.26.)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 2627-2172)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금 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천구 독산동 890-1 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3. 사업면적 : 477.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4. 12. 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불입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불입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2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독산동 890-1	대지	112.6	112.6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 ***동 ***호(호계동)	위*운	1/4				
2					강동구 양재대로95길 ***-(성내동)	남*수	1/4				
3					서대문구 수색로 102, ***동***호(북가좌동)	박*수	1/4				
4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31-11, ***호	정*호	1/4				
5	독산동 890-40	대지	121.5	121.5	관악구 대학14길 65-8, ***호(신림동)	조*경	1/4				
6					동대문구 천호대로45길 *-***(용두동)	박*근	1/4				
7					강남구 삼성로69길 20, ***호(대치동)	임*혜	1/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8					서대문구 수색로 102, ***동***호(북가좌동)	박*수	1/4				
9					동작구 시당로16가길 12-12, ***호(시당동)	박*진	1/4				
10					강남구 강남대로 321, ***호(서초동)	최*연	1/4				
11	독산동 890-41	대지	121.5	121.5	서초구 마방로4길 16-12, ***호(양재동)	음*미	1/4	종로구 세종대로 ***	*****주식회사	근저당권	
12					금천구 문성로 24-1, ***호(독산동)	김*영	1/4	종로구 을지로 **	****은행	근저당권	
13					경성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8길**	허* 김*순	1/4	관악구 남부순환로****-**	이*웅	근저당권	
14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36, ***동 ***호(용두동)	안*자	1/4				
15	독산동 890-42	대지	121.5	121.5	금천구 문성로 26, ***호(독산동)	조*진	1/4	서초구 서초대로74길**	*****주식회사	근저당권	
16					관악구 행운2길 15-**, ***호(남천동)	김*정	1/4	인양시 동안구 동안로 101, ***동 ***호(하계동)	위*식	근저당권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사업의 명칭 :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독산동 890-1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육개	220.8	주택	인양시 동안구 동안로 ***, ***동***호(호계동)	위*운				
2						강동구 양재대로95길 ***(성내동)	남*수				
3						서대문구 수색로 102, ***동***호(북가좌동)	박*수				
4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31-11, ***호	정*호				
5	독산동 890-40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육개	239.36	주택	관악구 대학14길 65-8, ***호(신림동)	조*경				
6						동대문구 천호대로45길 ***(응동동)	박*근				
7						강남구 삼성로69길 20, ***호(대치동)	임*혜				
8						서대문구 수색로 102, ***동***호(북가좌동)	박*수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9						동작구 사당로167길 12-12, ***호(사당동)	박*진				
10						강남구 강남대로 321, ***호(서초동)	최*연				
11	독산동 890-41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육개	239.36	주택	서초구 미방로4길 16-12, ***호(양재동)	음*미	종로구 세종대로 ***	*****주식회 사	근저당권	
12						금천구 문성로 24-1, ***호(독산동)	김*영	중구 을지로 **	****은행	근저당권	
13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8길**	허 * 김*순	관악구 남부순환로****-**	이*웅	근저당권	
14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36, ***동 ***호(용두동)	안*자				
15	독산동 890-4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육개	239.36	주택	금천구 문성로 26, ***호(독산동)	조*진	서초구 서초대로74길**	***** 주식회사	근저당권	
16						관악구 행운2길 15-**, ***호(병천동)	김*정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01, ***동 ***호(호계동)	위*식	근저당권	

◆ 동작구공고 제2023-17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열람 공시송달 공고

1. 동작구고시 제2020-81호(2020.06.18.) 및 동작구고시 제2020-92호(2020.06.18.)로 실시 계획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22-201호(2022.12.19.) 및 동작구고시 제2022-210호(2022.12.1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2. 고시한 내용의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에 따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및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동 작 구 청 장

□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반송사유
1	이*순	서울 중구 예관동 122-*	수취인불명

□ 공시송달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열람공고

가.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사항 반영 및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3동 151 ~ 176-5	960	6	7,877	사당3동 151	사당3동 176-5
변경	사당3동 141-28 ~ 176-50	960	6	7,877	사당3동 141-28	사당3동 176-50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동 173-3 ~ 170	106	6	1,113	사당동 173-3	사당동 170
변경	사당3동 173-28 ~ 1159	106	6	1,113	사당3동 173-28	사당3동 1159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4.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173-9	대	40	36	이*순	서울 중구 예관동 122-*				
	변경	동작구 사당동	173-9	대	40	40	이*순	서울 중구 예관동 122-*				
2	기정	동작구 사당동	170-2	답	438	431	고*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903, ***동 ****호(오포우림아파트)				
							고*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3길 20, *동 ***호(신월동, 제현연립)				
							고*례	경기도 광주시 경춘대로1422번길 41, ***동 ****호(쌍영동, 쌍영현대아파트)				
							고*석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원로9, ***동 ***호(신관동, 현대아파트)				
							고*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421, ***동 ****호(야탑동, 탑마을)				
							고*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				
							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당로17길 52, *동 ***호(사당동, 대림아파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장*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273, ***동 ***호				
							고*미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46, 호성해링턴 ***동 ***호				
							고*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79길 17-2, ***호				
							고*복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53, ***동 ***호				
							고*하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96, ***동 ***호				
							고*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273, ***동 ***호				
							고*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로 131번길 20, ***동 ****호(동백동, 백현마을주공아파트)				
							고*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3길 20, *동 ***호(신월동, 제현연립)				
	변경	동작구 사당동	170-2	답	438	438	고*례	경기도 광주시 경춘대로 1422번길 41, ***동 ****호(쌍령동, 쌍령현대아파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고*석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원로9, ***동 ***호(신관동, 현대아파트)				
							고*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421, ***동 ****호(야탑동, 탑마을)				
							고*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 (운중동)				
							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당로17길 52, *동 ***호(서당동, 데림아파트)				
							장*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273, ***동 ***호 (장기동, 정송마을 모아미래도빌가)				
							고*미	경기도 이천시 백운중로 46, ***동 ***호 (학익동,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고*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9길 17-2, ***호 (도봉동, 동일맨션)				
							고*복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안로153, ****동 ****호 (다산동,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고*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290번길 2, ***동 ****호 (남양주월산서원으로부영(단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3	기정	동작구 서당동	170-2	답	438	16	고*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73, ***동 ***호 (창기동, 청송마을 모아미래도엘가)				
							고*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903, ***동 ****호(오포우림아파트)				
							고*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3길 20, *동 ***호(신월동, 재현연립)				
							고*례	경기도 광주시 경춘대로1422번길 41, ***동 ****호(쌍영동, 쌍영현대아파트)				
							고*석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9, ***동 ***호(신관동, 현대아파트)				
							고*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421, ***동 ****호(야탑동, 탑마을)				
							고*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				
							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당로17길 52, *동 ***호(서당동 데림아파트)				
							장*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73, ***동 ***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고*미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46, 호성해링턴 ***동 ***호				
							고*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9길 17-2, ***호				
							고*복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53, ***동 ***호				
							고*하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96, ***동 ***호				
							고*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73, ***동 ***호				
							고*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131번길 20, ***동 ****호(동백동, 백현대일주공아파트)				
							고*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3길 20, *동 ***호(신월동, 제원연립)				
	변경 동작구 사당동	170-2	답	438	438		고*래	경기도 광주시 경춘대로1422번길 41, ***동 ****호(쌍령동, 쌍령현대아파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고*석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로, ***동 ***호(신관동, 현대아파트)				
							고*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421, ***동 ****호(아침동, 탐마을)				
							고*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 (운중동)				
							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52, *동 ***호(사당동 대림아파트)				
							장*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273, ***동 ***호 (장기동, 청송마을 모아래도엘가)				
							고*미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46, ***동 ***호 (학의동, 의왕배우주택(플래이스))				
							고*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9길 17-2, ***호 (도봉동, 동일맨션)				
							고*복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53, ***동 ***호 (다산동, 다산자이 아이비플래이스)				
							고*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20번길 2, ***동 ***호 (남양주월산사랑로부영(단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고*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73, ***동 ***호 (장기동, 정송마을 모아미래도월가)				

◆ 관악구공고 제2023-1858호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361호(2022.2.2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023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0.1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3. 11. 2. ~ 11. 16.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79-6364)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동 706-22번지 일대	75,535	-	75,535	서고시 제1997-11호 ('97. 1. 31)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 고시/공고 →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115	서울시계 내 한강 (한강철교 인근)	선박 2척 (354㎡)	한강철교 C선 정밀안전 점검 중 선박운항	2023.10.30. ~ 2023.11.02.	2023.10.2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라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흥안대로 427번길 38, 1503호(성지스타워드)	서울시계 내 한강 (가양대교 인근)	선박 2척 (354㎡)	대장-홍대 민간투자사업관련 지반조사 중 선박운항	' 23.11.01. ~ ' 23.11.30.	' 23.10.2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해양스포츠포럼 맹 윈드서핑연합회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04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04일대	육상 1,048.0㎡	무동력 수상레포츠 활동을 위한 클럽하우스 및 수상계류장의 설치	2023.10.24.~ 2023.10.23.	2023. 10.25.
			수상 277.75㎡			
			수상(간접) 39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우림씨앤아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8, 502(신갈동, 이레타운)	서울시계 내 한강 (강동대교 인근)	선박 2척 (366㎡)	강동대교 보수공사 중 선박운항	2023.09.20. ~ 2023.11.20.	2023.10.2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3-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해양정보기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4, 1310(대림테크노타운 12차)	서울시계 내 한강 (행주대교 인근)	고무보트 1척 (6.8㎡)	송유관 관리를 위한 외관조사 중 선박운항	' 23.11.01. ~ ' 23.11.02.	' 23.10.24.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3-7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1. 02 ~ 2023. 11. 15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3. 11. 16 ~ 2023. 11. 29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390	580501-*****	권*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고양파*****)이륜차	2023-09-09 12:03	50000	55334	여의도한강공원 천상익대하부주변(경기 고양파*****)이륜차	전라북도완주군금매읍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434	940214-*****	강***식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9누*****)이동차	2023-09-17 16:31	50000	34554	난지한강공원내 하늘다리 하부도로	대전광역시동구충로39번길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442	610613-*****	명*일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5다*****)이동차	2023-09-17 19:38	50000	08104	난지한강공원내 회전교차로(거울분수)	서울특별시양천구독운동로4길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464	790328-*****	신*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대문자*****)이륜차	2023-09-08 20:31	50000	03622	망원한강공원내 GS1호점 주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초1길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471	930126-*****	강*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영등포*****)이륜차	2023-09-11 18:59	50000	04004	망원한강공원내 슬로프 진출입로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12길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483	810811-*****	왕*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대문자*****)이륜차	2023-09-19 08:11	50000	04014	망원한강공원내 테니스장 주변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13길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41	890607-*****	오*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영등포*****)이륜차	2023-09-11 16:47	50000	04926	독심한강공원 김근자랑출입소 주변	서울특별시광진구기고랑로26길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43	680606-*****	조*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진하*****)이륜차	2023-09-14 02:58	50000	61942	독심한강공원 청담대교 주변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209번길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44	800920-*****	김*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영등포*****)이륜차	2023-09-14 22:57	50000	02141	독심한강공원 제2배달근 주변	서울특별시중랑구검재로15길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50	110111-*****	(주)***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서터*****)이륜차	2023-09-18 00:13	50000	07685	독심한강공원 김근자랑출입소 주변	서울특별시강서구오정산로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66	380409-*****	김*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8조****)자동차	2023-09-23 16:07	50000	02533	독서한강공원 근로차량출입소 주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기정로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68	860913-*****	전*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이륜차	2023-09-23 16:06	50000	05073	독서한강공원 근로차량출입소 주변	서울특별시광진구아산로34길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72	610924-*****	이*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송산차****)이륜차	2023-09-13 23:15	50000	04415	이촌한강공원내 한남나들목 입구(서울송산차****)이 륜차	서울특별시용산구정문로45길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75	820918-*****	김*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조5**** 자동차	2023-09-19 02:24	50000	15880	이촌한강공원내 1주차장 간헐기계 보관소 출입구 앞 (21조5**** 자동차	경기도군포시송부로29아반길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86	940704-*****	이**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출입행위(295도7**** 자동차	2023-09-24 18:54	50000	05841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출입구 앞 (295도7**** 자동차	서울특별시송파구충민로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88	911101-*****	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출입행위(서울관악하****)이륜차	2023-09-24 16:59	50000	08844	이촌한강공원내 이촌 인내센터 주변(서울관악하****도배 지)	서울특별시관악구문성로38길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89	690814-*****	고*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출입행위(25누**** 자동차	2023-09-24 16:26	50000	24227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출입구 앞 (25누**** 자동차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우두중리 길40번길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3891	721207-*****	S**D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출입행위(서울송산차****)이륜차	2023-09-24 11:15	50000	04412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진출입로(서울송산차****)이륜차	서울특별시용산구우사단로10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위반과태료	003901	811125-*****	이*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로4차****)이륜차	2023-09-22 20:59	50000	08835	독점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주변	서울특별시관악구서림1길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위반과태료	003906	910323-*****	박*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1주*****)자동차	2023-09-22 20:03	50000	12170	독점한강공원 김포저항물집소 주변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위반과태료	003907	830822-*****	김*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80서6*****)문고신고	2023-09-24 16:01	50000	08773	이촌한강공원내 옥수역 하부 풋살장 부근 (280서6*****)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54길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위반과태료	003911	840209-*****	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로4차****)이륜차	2023-09-22 19:57	50000	02846	독점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주변	서울특별시성북구모문로38길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위반과태료	003917	760503-*****	박*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0여*****)자동차	2023-09-22 20:14	50000	22762	독점한강공원 제2축구장 주변	인천광역시서구청라케널로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위반과태료	003923	910624-*****	이*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로4차****)이륜차	2023-09-22 19:59	50000	05054	독점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주변	서울특별시관진 구이차신로44가길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위반과태료	003937	810925-*****	정*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로4차****)이륜차	2023-09-24 17:27	50000	05381	독점한강공원 제2축구장 주변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168길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위반과태료	003944	950608-*****	손*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70주*****)자동차	2023-09-28 02:57	50000	13266	독점한강공원 독점나들목 주변	경기도성남시수지구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위반과태료	003964	640418-*****	신*철	지정된 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인천81바*****)자동차	2023-09-10 20:26	50000	21335	정실한강공원 점별대교인근(인천81바*****) **자동차	인천광역시부평구갈매서로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위반과태료	003967	110111-*****	에***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0자****)자동차	2023-09-10 20:33	50000	05838	잠실한강공원 잠실대교인근(380자****) 자동차	서울특별시송파구송정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송정로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위반과태료	003975	761014-*****	전*영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61로****)자동차	2023-09-09 03:41	50000	05610	잠실한강공원 잠실대교인근(61로****))자동차	서울특별시송파구저촌호수로18 길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위반과태료	003978	851016-*****	이*민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아*****)이륜차	2023-09-08 20:22	50000	06342	잠실한강공원 4호매점 인근(서울강남아*****)이 륜차	서울특별시강남구양재대로49길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위반과태료	003981	871227-*****	정*현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부천나*****)이륜차	2023-09-09 10:55	50000	14567	잠원한강공원 내 신사나들목주변(경기부천 나*****)이륜차	경기도부천시원미로155번길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위반과태료	003985	110111-*****	김**크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19다*****)자동차	2023-09-15 10:32	50000	13118	잠원한강공원 내 7주차장 모나크광장주변(819다*****) *자동차	경기도성남시수정구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위반과태료	003987	720627-*****	오*섭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0자*****)자동차	2023-09-15 13:23	50000	07625	잠원한강공원 내 9주차장 모나크광장주변(80자*****))자동차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대로7가 길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위반과태료	003988	970310-*****	심*규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가*****)이륜차	2023-09-15 22:50	50000	06116	잠원한강공원 내 다목적광장 주변모도(서울강남가*****))이륜차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21길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위반과태료	004008	881102-*****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나*****)이륜차	2023-09-21 19:52	50000	07048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 주변	서울특별시동작구양재로25다길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위반과태료	004018	800101-*****	지*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다*****)이륜차	2023-09-22 16:22	50000	06680	반포한강공원내 예빛점(*****) 주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16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021	640629-*****	조*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등대문가****)이륜차	2023-09-23 16:23	50000	11941	반포한강공원내 세빛섬 주변	경기도구리시원수택로82번길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022	891014-*****	오*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사초차****)이륜차	2023-09-23 18:56	50000	18264	반포한강공원내 서울버스정류장 도로 주변	경기도화성시남양읍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028	630227-*****	정*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4다****)자동차	2023-09-23 18:20	50000	10242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주변	경기도고양시일사구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031	220111-*****	주*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9하****)자동차	2023-09-23 18:18	50000	16703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주변	경기도수원시영통구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033	830814-*****	김*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고****)자동차	2023-09-23 17:14	50000	07558	반포한강공원내 반포안내세타 주변	서울특별시강서구교향대로75길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034	890614-*****	천*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8다****)자동차	2023-09-23 17:08	50000	02818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주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목감로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043	790901-*****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아****)자동차	2023-09-24 18:28	50000	15622	반포한강공원내 문수사무실 주변	경기도안산시상록구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048	690822-*****	서*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시흥바****)이륜차	2023-09-24 19:39	50000	14940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영인도 주변	경기도시흥시매곡우회로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049	990801-*****	김*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7보****)자동차	2023-09-24 19:43	50000	17364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영인도 도로 주변	경기도이천시서희로82번길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051	930501-*****	최*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8오****)자동차	2023-09-24 19:49	50000	13448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영인도 도로 주변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과 금액	구 번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테코	004057	931023-*****	이*승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이륜차	2023-09-24 19:31	50000	06065	반포한강공원내 문수사문물영도 보행로 주변	서울특별시강남구서릉로182길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테코	004058	680203-*****	배*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8모*****)자동차	2023-09-24 16:21	50000	01637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뒤 도로 주변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119가 길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테코	004060	641103-*****	김*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9라*****)자동차	2023-09-24 16:09	50000	02535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빌구 주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대성리로59 길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테코	004067	790106-*****	서*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마*****)자동차	2023-09-24 16:18	50000	02828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뒤 주변	서울특별시서북구북악산로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테코	004073	620913-*****	강*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3누*****)자동차	2023-09-24 16:21	50000	06730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뒤 주변	서울특별시서초구가림대로41길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테코	004081	750524-*****	이*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6루*****)자동차	2023-09-24 16:04	50000	07032	반포한강공원내 반포안네센터 나들목 주변	서울특별시동작구양영로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테코	004085	711130-*****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인원동다*****)이륜차	2023-09-25 16:12	50000	22504	반포한강공원내 세빛섬입구 주변	인천광역시동구화도길로186번 길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테코	004086	001212-*****	T***G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0다*****)자동차	2023-09-26 14:20	50000	02177	반포한강공원내 반포조경면허시험장 주변	서울특별시종로구용마선로114 길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테코	004089	971016-*****	천*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이륜차	2023-09-27 22:47	50000	04746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테코	004090	990402-*****	M***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대문*****)이륜차	2023-09-27 22:52	50000	06226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37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4091	900528-*****	오*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상카*****)이론차	2023-09-27 19:22	50000	02129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41 주변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109길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4107	810301-*****	최*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남영주나*****)이론차	2023-09-28 21:29	50000	12005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옆 도로 주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4110	940528-*****	D**R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상카*****)이론차	2023-09-28 16:26	50000	04394	반포한강공원내 담보수변구대1 보행광장 주변	서울특별시용산구장문로17길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4112	881227-*****	변*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대문하*****)이론차	2023-09-28 20:24	50000	02625	반포한강공원내 초세마루 주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대성리로68 길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4114	900607-*****	차*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정남차*****)이론차	2023-09-28 21:53	50000	04344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 주변	서울특별시용산구해나루로13가 길
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4119	980129-*****	김*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상카*****)이론차	2023-09-28 20:19	50000	04316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 주변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81길
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4121	731218-*****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0자*****)자동차	2023-09-29 18:47	50000	15800	반포한강공원내 전기식 주변	경기도군포시곡관로103번안길
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4123	950314-*****	이*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00자*****)자동차	2023-09-29 18:50	50000	01773	반포한강공원내 전기식 주변	서울특별시도원구삼발로
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4124	740925-*****	김*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0서*****)자동차	2023-09-29 18:49	50000	14081	반포한강공원내 전기식 주변	경기도안양시동인구
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004136	020427-*****	이*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0*****)자동차	2023-09-29 21:13	50000	22636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출구 주변	인천광역시서구검단로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태료	004143	830228-*****	백*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누설*****)이론차	2023-09-29 18:10	50000	18392	반포한강공원내 반포인내센터 주변	경기도화성시병점중앙로
6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태료	004149	890125-*****	박*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변*****)이론차	2023-10-01 16:41	50000	06072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공원1 주변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47길
6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태료	004150	771003-*****	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7라*****)이론차	2023-10-01 16:59	50000	47519	반포한강공원내 반포인내센터 나들목 주변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7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태료	004151	700615-*****	양*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6수*****)이론차	2023-10-01 17:02	50000	18034	반포한강공원내 반포인내센터 주변	경기도평택시소사로
7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태료	004152	781123-*****	박*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모*****)이론차	2023-10-01 16:58	50000	06999	반포한강공원내 반포인내센터 나들목 주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292길
7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태료	004154	740817-*****	심*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2라*****)이론차	2023-10-01 19:06	50000	12905	반포한강공원내 무지개문수 사무실 주변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
7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태료	004161	900605-*****	남*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5누*****)이론차	2023-10-01 19:02	50000	51428	반포한강공원내 무지개문수 사무실 주변	경성남도창원시영남구
7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태료	004163	630710-*****	이*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62로*****)이론차	2023-10-01 19:00	50000	16961	반포한강공원내 무지개문수 사무실 주변	경기도용인시기흥구
7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태료	004166	730308-*****	관*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62우*****)이론차	2023-10-01 18:54	50000	01618	반포한강공원내 GS인근 진출로 도로변 주변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27길
7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관리반과태료	004171	730509-*****	김*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74고*****)이론차	2023-10-01 18:39	50000	15575	반포한강공원내 GS인근 도로 주변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7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로	004172	110111-*****	최**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8호*****)자동차	2023-10-01 18:38	50000	21081	반포한강공원내 GS인근 도로 주변	인천광역시계양구두림리로
7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로	004179	610405-*****	최*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7가*****)자동차	2023-10-01 18:10	50000	03108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하부 주변	서울특별시중로구지봉로12길
7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로	004180	790717-*****	박*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시조차*****)이륜차	2023-10-01 14:21	50000	07048	반포한강공원내 담방울점1 주변	서울특별시동작구영등포로25나길
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로	004181	920205-*****	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시조차*****)이륜차	2023-10-01 09:16	50000	16708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교각 노행로 주변	경기도수원시영통구
8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로	004182	880805-*****	이*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시조차*****)이륜차	2023-10-01 19:32	50000	06108	반포한강공원내 담방울점1 주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16길
8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로	004184	010223-*****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시조차*****)이륜차	2023-10-02 20:26	50000	14786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영등포로 주변	경기도부천시영등포로
8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로	004186	850421-*****	문*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시조차*****)이륜차	2023-10-02 20:28	50000	14922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영등포로 주변	경기도시흥시은행로
8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로	004187	950201-*****	박*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도*****)자동차	2023-10-02 20:21	50000	14711	반포한강공원내 제2판의점 뒤 도로 주변	경기도부천시삼곡로영등포로
8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로	004191	920809-*****	고*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6도*****)자동차	2023-10-02 18:48	50000	07011	반포한강공원내 제2판의점 뒤 도로 주변	서울특별시동작구시당로20나길
8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공원관리반과테로	004192	980325-*****	박*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우*****)자동차	2023-10-02 18:50	50000	02709	반포한강공원내 제2판의점 뒤 도로 주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송로14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8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193	220111-*****	주*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호*****)자동차	2023-10-02 18:55	50000	16703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뒤 도로 주변	경기도수원시영통구
8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195	930912-*****	천*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8나*****)자동차	2023-10-02 18:58	50000	03661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뒤 도로 주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좌로
8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203	711009-*****	추*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라*****)이륜차	2023-10-02 18:23	50000	57923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 40 주변	전라남도순천시거곡2길
9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207	680810-*****	송*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마*****)자동차	2023-10-02 13:20	50000	11315	반포한강공원내 서래나루 입구 주변	경기도동두천시영화로
9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219	830131-*****	산*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0보*****)자동차	2023-10-02 16:48	50000	12158	반포한강공원내 리버주차장 진입로 주변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9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220	751215-*****	김*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주*****)자동차	2023-10-02 16:48	50000	08649	반포한강공원내 리버주차장 진입로 주변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67길
9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223	610814-*****	문*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0우*****)자동차	2023-10-02 16:43	50000	06525	반포한강공원내 리버주차장 진입로 주변	서울특별시서초구내부터로15길
9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224	690227-*****	최*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5가*****)자동차	2023-10-02 16:39	50000	35383	반포한강공원내 리버주차장 진입로 주변	대전광역시서구구룡산북로
9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229	890222-*****	이*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9고*****)자동차	2023-10-03 18:43	50000	02075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진입로 주변	서울특별시중랑구봉화사로
9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꽃이영관권위반과태료	004231	650129-*****	임*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다*****)이륜차	2023-10-03 20:47	50000	05404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 주변	서울특별시강동구공설로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9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관리반과태료	004234	971113-*****	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정북가*****)이름차	2023-10-03 20:48	50000	03789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 주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의로5가 길
9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관리반과태료	004237	671222-*****	이*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의정북사*****)이름차	2023-10-03 22:58	50000	11468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 주변	경기도양주시우정로7길
9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관리반과태료	004238	940115-*****	김*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정북가*****)이름차	2023-10-03 22:59	50000	02812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 주변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107길
10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관리반과태료	004239	901219-*****	이*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정북가*****)이름차	2023-10-03 23:00	50000	02812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 주변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107길
10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관리반과태료	004241	681220-*****	김*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오산아*****)이름차	2023-10-03 22:23	50000	18113	반포한강공원내 반포대교 교각 주변	경기도오산시내대미로
10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관리반과태료	004246	720301-*****	손*기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라*****)이름차	2023-09-24 14:51	50000	10251	난지한강공원내 안내센터앞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10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관리반과태료	004254	000915-*****	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마포타*****)이름차	2023-09-24 22:45	50000	21968	망원한강공원내 GS이점 주변	인천광역시연수구원인제로
10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관리반과태료	004258	820628-*****	김*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대문다*****)이름차	2023-09-27 16:52	50000	04111	망원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옆 횡단보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서강대길
10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관리반과태료	004262	910302-*****	인*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마포타*****)이름차	2023-09-27 22:17	50000	04002	망원한강공원내 슬로포 진입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자대리로
10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옹관관리반과태료	004265	791220-*****	신*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영등포*****)이름차	2023-09-28 21:03	50000	03670	망원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주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자대리로20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우편 번호	위반장소	납세자기본주소
10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 옹관권위반과태료	004267	890828-*****	오*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포도타***이)주차	2023-09-28 22:35	50000	17887	망원한강공원내 옹구8주차면	경기도평택시매곡신4길
10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 옹관권위반과태료	004274	780412-*****	손*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웅산자****이)주차	2023-09-30 16:45	50000	03957	망원한강공원내 망원나들목 회전교차로 주차면	서울특별시마포구양원로1길
10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 옹관권위반과태료	004276	771004-*****	신*은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0부****)자동차	2023-10-02 14:21	50000	03652	난지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폐쇄진입로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37길
1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 옹관권위반과태료	004277	690131-*****	이*배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오****)자동차	2023-10-02 14:59	50000	03730	난지한강공원내 제1주차장주차면 도행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일로
1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 옹관권위반과태료	004278	941102-*****	이*규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96마****)자동차	2023-10-02 15:01	50000	12249	난지한강공원내 인내센터주차면 3길	경기도남양주시다산중앙로82번 길
1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 옹관권위반과태료	004285	870220-*****	오*현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6누****)자동차	2023-10-02 15:14	50000	07538	난지한강공원내 인내센터앞 도로변	서울특별시강서구양원로75길
1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 옹관권위반과태료	004291	761024-*****	장*연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1루****)자동차	2023-10-02 15:27	50000	06602	난지한강공원내 하늘공원연결브라지 하부 주차면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65길
1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홍이 옹관권위반과태료	004297	110111-*****	최**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4구****)자동차	2023-10-04 18:45	50000	05543	반포한강공원내 세빛섬 주차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3-74호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행정체제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3. 공시송달 대상

세목명	과세년월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금액	사유
내수면어업법위반 과태료	2023-9	00001	신*문	전라북도 김제시 여수해*길 9-**	500,000원	400,000원	이사불명

4. 공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15. (14일간)
5. 자진납부기간 : 2023.11.16.~ 11.30.(15일간)
5. 수령방법 :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에서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고지서 수령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92)으로 문의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3-75호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행정체제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66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3. 공시송달 대상

세목명	과세년월	통지 번호	성명	주소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금액	사유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023-9	00002	이*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길 19- 6**호	1,000,000원	800,000원	폐문부재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023-9	00003	이*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 4**동 9**호	1,000,000원	800,000원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15. (14일간)
5. 자진납부기간 : 2023. 11. 16. ~ 11. 30. (15일간)
5. 수령방법 :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에서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고지서 수령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93)으로 문의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이제이텍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33번길 10, 석정빌딩(구미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2-71번지
 - 면 적 : 4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GTX-B노선 지반(시추)조사
 - 내 역 : 시추조사 2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23.9.25.~2023.10.2.
(변경) 2023.10.25.~2023.11.2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34호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부간선도로 3공구 노원교 진출램프 설치공사
2. 점용자(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3. 점용(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노원교 진출램프교 설치
 - 개 요 : 노원교 진출램프교 L= 308m, B= 5.25m, 노원교 확장 L= 115m, B= 7.95m
4. 점용(공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50-36번지 일원
 - 면 적 : 2.916㎡(일시 525㎡)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2.7.4.~2028.12.31. (인가일~2023.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36호

하천점용허가(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270-1번지 외 2필지(63-1, 279-3)
- 면 적 : 3,902.56㎡(일시2,600.70㎡, 영구1,301.8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변 철새보금자리 및 생태쉼터 조성사업
- 내 역 : 관찰데크 1개소, 버드나무쉼터 1개소, 목교 2개소, 통나무의자 5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 생태안내판 1개소, 방향안내판 3개소, 야자매트A 208.5m, 야자매트B 296m, 징검다리 6개소, 생태습지 2식, 자연형계류 306m, 물넘이 5개소

5. 점용기간 : 2023.10.30. ~ 2028.10.29.

6. 공사기간 : 2023.10.30. ~ 2024.01.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3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지오비전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525호(포일동, 에이스청계타워)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7
 - 면 적 : (일시) 2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제천·불광천 유지용수 수질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 내 역 : 일시 굴착 1공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3.10.31.~2023.11.30.(점용기간 동일)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